

부 록

I. 영국 BBC 칙허장 (Royal Charter, 2006)

II.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과 BBC 간 협정

(An Agreement Between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III. 독일 방송재정 관련 법률

1. 제10차 <방송재정국가협약>(전문)
2. 제11차 <방송재정국가협약>(개정안)
3. 제12차 <방송재정국가협약>(개정안)
4. 제11차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중 방송재정에 관한 규정
5. 제12차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중 방송재정에 관한 규정

IV.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s) 의 공적 의무 조항

1. 프랑스 공영방송채널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조항
(Les obligations applicables aux chaînes du groupe France Télévisions)
2. 공영방송채널과 민영방송채널에 적용되는 규제의 비교
(Comparaison des réglementations applicables aux chaînes publiques et privées)
3.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Télévisions) 의 목표와 수단 계약서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de France Télévisions)

I. 영국 BBC 칙허장 (Royal Charter, 2006)

2006년 7월 19일

버킹엄 궁정에서

(중략)

1926년 12월 20일, 조지 5세가 BBC에 첫 칙허장을 부여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BBC에 칙허장을 부여해왔는데 1996년 5월 1일에 마지막으로 부여했다('1996년 칙허장').

(중략)

법인과 목적

1. BBC 법인

- (1) BBC는 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존속한다.
- (2) BBC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BBC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BBC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 (3) BBC의 법인적 성격과 권한에 관한 추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규정들은 제47조에 포함되어 있다.

2. 칙허장의 조건

- (1) 본 칙허장은 대부분의 실제적인 목적들을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

러나 일반적인 진술은 (2)항에 따라 해독되어야 한다.

- (2) 기술적으로, 본 칙허장은 부여된 날(칙허장 제65조 다음에 명기된 날짜 참조)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그러나 1996년 칙허장에 의거하여 실시중인 법적 조치와 기타 사항들을 조속히 본 칙허장에 의거한 것으로 하기 위해 과도조항(Schedule)에 따라 본 칙허장의 효력은 조정된다(과도기간과 그 후의 시간과 관련하여, 과도조항에 부여된 의미 안에서).
- (3) 제53조에 따라 본 칙허장은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4) 1996년 칙허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본 칙허장의 과도조항에도 따라야 한다.
- (5) 본 조항에서 ‘1996년 칙허장’은 BBC의 존속을 위해 1996년 5월 1일에 발효한 왕실 칙허장을 말한다.

3. BBC의 공적 성격과 목적

- (1) BBC는 공익에 봉사한다.
- (2) BBC의 주요 목적은 공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 (3) 덧붙여, BBC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유지, 설립, 또는 취득할 수 있다(BBC는 그 공적 목표와 연관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자회사를 유지, 설립, 또는 취득할 수 있다- 제47조 (3)항 및 (4)항 참조).

4. 공적 목표

BBC의 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유지한다.
- (b) 교육과 학습을 장려한다.
- (c) 창의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복돋운다.
- (d) 영국연합과 영국의 국가, 지역, 공동체를 대표한다.

- (e) 영국을 세계로 이끌고 또한 세계를 영국으로 이끈다.
- (f)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공중이 새로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 BBC는 공적 목표(정보, 교육, 오락을 제공하는 사명)를 달성하는 방법

(1) BBC의 주요 활동은 정보, 교육, 오락 부문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 공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된다.

- (a)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온라인 서비스
- (b) 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또는 이전에 BBC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 중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경우

(2) BBC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공적 목표를 이루는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은 BBC의 주요 활동들과 비교하여 주변적이거나 종속적, 또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주변적이거나 종속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들은 주요 활동들과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각각의 활동은 주된 활동과 함께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3) 본 칙허장에 기술된 범위 안에서 BBC가 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기본협정(제49조 참조)에 상술되어 있다.

6. BBC의 독립

(1) BBC는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이 공급되는 시간과 방식 등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독립되어 있다.

(2) (1)항은 본 칙허장, 기본협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규정을 따른다.

구 성

7. 서 설

BBC에는 BBC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 둘은 각각 BBC 안에서 중요한, 그러나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요약하자면, 트러스트의 주요 역할은 BBC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전략적 방침을 설정하고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별히 수신료 납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트러스트가 설정한 우선순위대로 BBC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트러스트를 제외한 BBC의 모든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들과 기본협정에 기술되어 있다.

8.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별개로 활동한다

제1조 (2)항에 기술한 대로, BBC라는 법인은 BBC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 둘 모두의 중요성과, 각각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지위와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BBC의 제반 직무는 본 칙허장과 기본협정에 명시된 규정들을 따라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 둘 중 어느 한 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트러스트의 구성원과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코 동일체처럼 함께 행동해서는 안된다.

9.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관계

- (1) 트러스트는 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BBC 안에서 주권자(sov​er​eign body)이다. 이것은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트러스트가 담당할 직무가 있는 경우에 트러스트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트러스트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법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위원회가 행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집행위원회가 트러스트의 승인, 감독, 점검 등을 요하는 활동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런 직무의 수행에 있어 트러스트의 결정은 BBC 안에서 최종적이다(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Ofcom과 같은 외부기관의 규

정도 따라야 하는 활동도 있다).

(3) 그렇지만, 트러스트가 집행위원회의 직무를 담당해서도, 담당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10. BBC의 회장

BBC 트러스트의 위원장은 BBC의 회장으로도 알려질 수 있다. 제8조의 견지에서, BBC 회장은 명예직이다. 왜냐하면 BBC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트러스트의 구성원 또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결코 동일체로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지침과 모범사례(best practice)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각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b) 좋은 기업 지배(good corporate governance)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 그러나 다음 경우에 한한다.
 - (i) 그렇게 하는 것이 (a)항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
 - (ii) 그런 원칙들이 그들 각각의 직무들과 관련하여, 특히 칙허장에 의해 존속하는 BBC안에서 적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BC 트러스트

12. 트러스트의 법적 성격

BBC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란 말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즉 공익의 보호자로서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구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이 말을 법적인 의미로 쓴 것은 아니며, 따라서 트러스트의 구성원들을 자산의 수탁자로 간주하려 한다거나, 그들을 신탁 또는 수탁자와 관련된 법규에 종속되게 하려는 의도도 없다.

트러스트의 구성

13. 트러스트의 구성

- (1) 트러스트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평위원 몇몇으로 구성한다.
- (2) 평위원의 수는, 추밀원령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인으로 한다(제14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을 포함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를 예상하여 추밀원령에 이보다 적은 수로 정하지 않는다.
- (3) 트러스트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평위원들은 추밀원령에 따라 임명된다. 임명을 위한 평위원 선정에 있어 제14조의 지역대표 지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위원장이 공석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으로서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4. 지역 대표 트러스트 위원

- (1) 트러스트의 평위원 4인은 각각 (a) 잉글랜드 위원, (b) 스코틀랜드 위원, (c) 웨일스 위원, (d) 북아일랜드 위원으로 임명된다.
- (2) 위와 같은 호칭은 추밀원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호칭은 당사자가 트러스트의 평위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또는 평위원으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언제라도 부여될 수 있다. 이 호칭의 효력은 새로운 사람이 지명되어 교체되는 경우 또는 지명된 사람이 트러스트의 위원직을 그만둘 때까지 유효하다.
- (3) 본 칙허장에 의거하여 임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a)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민의 문화, 특성, 관심사에 대해 정통할 것
 - (b) 지역의 여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

15. 임기

- (1) 트러스트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평위원을 임명하는 추밀원령에는 그 임기가

명시된다. 5년보다 긴 기간을 임기로 설정하지 않는다.

- (2)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평위원은 언제라도 추밀원령에 의해 재임될 수 있다. 추가되는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는다. 재임명의 임기는 종전 임기가 만료되는 날과는 다른 날부터 시작된다.

16. 직무의 종료

트러스트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평위원에 상관없이)은 다음의 경우 그 직무를 종료한다.

- (a) 임기의 만료(제15조 참조)
- (b) 서면으로 문화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경우
- (c) 추밀원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
- (d) (i) 파산한 경우
(ii) 재산을 몰수당한 경우
(iii) 채권자를 위해 담보 신탁 증서를 준 경우, 또는
(iv) 채권자와 합의 또는 조정을 한 경우
- (e)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래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 (i) 1983년 정신건강법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2003년(스코틀랜드)정신건강법(간호/치료)에 따라 병원에 수용되는 경우
 - (ii) (영국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부터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수용 명령을 받거나, 재산 또는 업무 처리를 위해 관리인이나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령을 받는 경우
- (f) 만약-
 - (i) 트러스트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 회의에 연속 3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 (ii) 트러스트가 해임하기로 정한 경우

17. 위원의 보수

트러스트의 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BBC에서 보수를 받는다.

18. 위원의 연금, 수당, 퇴직금

BBC는 트러스트의 위원들에게 문화부 장관이 정한 대로 연금, 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운영

19. 트러스트의 회의

- (1) 트러스트는 그 직무 수행과 사무 처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 (2) 트러스트는 캐스팅 보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회의의 소집, 통지, 시간, 장소, 정족수, 운용, 연기 등에 관한 의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3) 의사 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회의장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화상회의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여는 회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20. 트러스트의 위원회

- (1) 트러스트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의 수, 직무, 구성 등은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지만 트러스트의 위원을 포함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다.
- (3) 트러스트는 결정을 비롯한 일부 직무를 위와 같은 위원회에 트러스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1. 규칙

- (1) 트러스트는 아래 사항의 처리를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 (a) 그 직무와 사무
 - (b) BBC의 직무와 사무
- (2) 트러스트의 한 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트러스트의

회의들 중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3) 제30조나 제31조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집행위원회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또는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4) 규칙은 트러스트의 회의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 (5) 제19조 (2)항에 언급된 의사규정과 제25조에 언급된 규약은 본 조항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된다.

트러스트의 역할

22. 수신료와 공익의 수호자

트러스트는 BBC에서 수신료 수입의 관리자이며 공익의 보호자다. 트러스트는 본 칙허장의 조항들에 따라 아래 사항들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a) BBC의 수신료 수입과 여타 재원에 대한 관리
- (b) BBC 안에서 공익 보호, 각별히 수신료 납부자의 이익 옹호
- (c) 공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

23. 일반적인 임무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트러스트는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각별히 트러스트는

- (a) 수신료 납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 (b) BBC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 (c) 수신료 납부자의 의견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평가하고
- (d) 공적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 (e) BBC의 활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고
- (f) BBC가 개방성과 투명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24. 트러스트의 직무

- (1)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본 칙허장과 기본협정에 의해 마련된 틀 안에서 BBC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침 설정
 - (b) 영국내 및 해외에서의 BBC 서비스와 활동에 관한 고위(high-level) 전략과 예산의 승인
 - (c) BBC의 서비스와 활동을 총괄하는 집행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 집행위원회가 그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함
- (2) 특별히,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한다.
- (a) 수년에 걸쳐 달성할 목표 과제의 설정, 고위(high-level) 예산 배정을 비롯한 전략의 승인
 - (b) 공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행 지표의 설정
 - (c) BBC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면허의 부여 및 면허 요건의 준수여부 감시
 - (d) BBC 서비스의 내용물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침의 승인
 - (e) (a)항에 기술된 전략 및 목표 실현, 또는 BBC의 전체적인 재정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적인 전략적 제안 또는 재정적 제안에 대한 승인
 - (f) 트러스트에 부여된 규제적 직무의 수행, BBC가 관련 규정의 요건 및 일반 법률을 준수하는데 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함
 - (g) BBC의 불만처리 틀 설정(이 틀은 적합한 경우에 트러스트가 최종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h) 적절한 경우, 트러스트의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BBC의 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 (i) BBC 활동의 특정 분야에 대해 지불 가치(value for money) 조사 의뢰
 - (j) 집행위원회가 BBC 경영상의 주요 위험에 대해 역점을 두고 다루도록 함
 - (k)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성명의 채택, 집행위원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 (l) 트러스트가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제안과, 현행 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 여타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을 평가하는 틀에 대한 승인
 - (m) 수신료 징수를 위한 제도가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균형 잡히도록 함
- (3)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유닛(Trust Unit)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역할을 한다(제42조 및 제43조 참조).
- (4) 덧붙여, 트러스트는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의해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25. 규약- 규약의 일반적 역할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규약을 채택하고 공표한다.

- (a) 트러스트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틀의 세부(본 칙허장과 기본협정의 모든 요건과 일치하는)를 정하는 규약, 이것은 그 직무의 실제 적용에 관한 것일 수 있고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트러스트에 보다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
- (b)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규약,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 각각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한 규약(칙허장이나 기본협정에 의해 책임의 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

26. 수신료 납부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약

- (1) 규약은 (제23조 (C)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가 수신료 납부자의 의견을 세심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일반적 임무를 이행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 (a) 트러스트가 적극적으로 수신료 납부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 (b) 트러스트가 위와 같이 방법을 정하도록 적절한 세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본 조항을 따라 규약을 채택하기에 앞서 공적 협의를 해야 한다.

27. 개방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약

- (1) 규약은 (제23조 (f)항에 의거하여 BBC가 개방성과 투명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트러스트의 일반적 임무 이행의 방법적 측면에서) 트러스트가 회의록의 주요 항목, 중요한 결정(집행위원회가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의 이유와 주요 고려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보장하는, 또 보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는 세부조항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
- (2) 본 조항은 트러스트 또는 BBC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들과는 별개의 의무사항들을 부과하는데 그것들은 본 칙허장이나 기본협정, 또는 탄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규정들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이들 의무사항은, 규약들이 제23조 (f)항에 의거한 트러스트의 일반적 임무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28. 집행위원회의 구성

- (1) 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2) (3)항의 요건에 따라, 실행 가능한 한, 위원의 총수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각의 수는 집행위원회가 정하되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실행 가능한 한,
 - (a) 최소한 4인의 비상임위원을 항상 두어야 한다.
 - (b) 비상임위원의 총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 총수의 절반 미만이며 3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 (4) (2)항과 (3)항에서 ‘실행 가능한 한’이라고 한 것은 때때로 위원이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지만 후속 임명이 있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조속히 후속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 위원회의 구성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9.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방법

- (1)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트러스트에 의해 임명된다.
- (2) 트러스트는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상임 또는 비상임을 명시한다.
- (3) 비상임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비상임 위원들 중에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비

상임 위원이 아닌 자를 비상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는 임명과 동시에 비상임 위원이 된다.

(4) 사장(Director General)은 상임 위원장으로서만 임명된다.

30.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방법

(1) 사장은 항시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2)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추천위원회(제35조 참조)의 추천을 받은 자만을 임명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지 않는 사장을 임명할 때는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4)항과 (5)항에 기술된 바를 충족할 때에만 추천할 수 있다.

(4)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a)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b)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다른 상임위원 1인

(c)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 2인

(5)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추천을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즉각 트러스트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비상임인 경우에 추천위원회가 본 조항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추천위원회의 다수를 점해야 한다는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집행위원회가 한다.

(7) 본 조항의 취지상 인사 추천 및 임명 동의는 단지 피임명자의 됴됨이만이 아니라 (제33조의 요건에 따라) 그 임기도 관계한다.

31.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임명 방법

- (1)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추천위원회(제35조 참조)가 추천하고 트러스트가 동의한 자만을 임명할 수 있다.
- (2) 추천위원회는 (3)항에 기술된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다.
- (3)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이 다수여야 하고 비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인 경우, 그는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다른 상임위원들을 포함할 것인지는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 (4)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것을 직접 트러스트로 보내고 집행위원회는 그 공과의 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추천이 트러스트에 의해 승인되면 집행위원회는 임명 절차를 밟는다.
- (5) 본 조항의 취지상 인사 추천 및 임명 동의는 단지 피임명자의 됴됨이만이 아니라 그 임기도 관계한다.

32.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근무 조건

- (1)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 조건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한다.
- (2) (1)항의 '직책'은 위원장의 직책뿐만 아니라
 - (a) 비상임위원장인 경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위원장 임용시 이미 비상임위원 여부와 무관하게)
 - (b) 상임위원장인 경우, 사장의 직책도 포함된다.

33. 집행위원회의 여타 위원들의 근무 조건

- (1) 위원장이 아닌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임명 조건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한다. 본 조항에서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라고 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장이라고 할 때는 위원장을 겸하지 않는 사장을 지칭한다.

- (2) 상기 조건은 해임을 본 조항의 아래 요건들에 부합되도록 규정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위원의 동의 없이 조기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 (3) 조기 해임의 제안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4) 조기 해임의 제안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그것이 사장이 아닌 상임위원에 관한 것인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그 임명을 해지한다.
- (5) 조기 해임의 제안이 비상임위원이나 사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집행위원회와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위원회는 그 임명을 해지한다.
- (6) 집행위원회가 (4)항 또는 (5)항에 의거하여 조기 해임의 제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트러스트에 해임 허가를 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위원장이, BBC를 대표하여, 그 임명을 해지한다.
- (7) 보수위원회(The Remuneration Committee, 제35조 참조)는 트러스트가 승인한 바에 따라 상임위원의 보수를 정한다. 상임위원의 임명 조건은 이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8) 본 조항의 취지상 (임기가 만료되어서건, 명시된 퇴직 연령에 도달해서건 혹은 다른 이유로) 임기 만료일 이전에 해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임하는 것이라면 조기 해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운영

34. 집행위원회의 회의

- (1) 집행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과 사무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연다.
- (2) 집행위원회는 캐스팅 보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회의의 소집, 통지, 시간, 장소, 정족수, 운용, 연기 등에 관한 의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3) 의사 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회의장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화상회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여는 회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35. 집행위원회의 위원회

-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수, 구성 등은 집행위원회의 소관사항이고, 본 조항의 아래 항목들을 따른다.
- (3) 최고 수준의 법인 관리에 상응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항시 설치한다.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만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4) 추천위원회는 제30조와 제31조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본 조항들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 (5) 보수위원회는 제33조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만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6) 집행위원회의 모든 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6. 집행위원회에 의한 위임

- 집행위원회는 결정을 비롯한 일부 직무를
- (a) 제3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 (b) 집행위원회의 개별 위원
 - (c) 여타 직원들
- 에 위임할 수 있다.

37. 규칙

- (1) 집행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과 사무 처리를 위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규칙은 집행위원회의 회의에서만 제정한다.
- (3) 제34조 (2)항에 언급된 의사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된다.
- (4) 본 조항에 의거하여 규칙은 21조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제정된 규칙을 따른다.

집행위원회의 역할

38. 집행위원회의 기능

- (1) 집행위원회는 BBC의 집행 기관이고 다음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 (a) 목표와, 서비스 면허가 정한 틀, 여타 전략 등에 따라 설정된 우선순위에 맞게 BBC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 (b) BBC의 보도물과 창작물의 방침
 - (c) (트러스트 유닛을 제외한) BBC의 운용
 - (d) 트러스트와 BBC 트러스트 유닛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BBC에 대한 불만의 처리를 포함하여) BBC에 부과된 모든 법적, 제도적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함
 - (e) 트러스트에 의해 집행위원회에 부과된 요건들(예를 들면, 규약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트러스트의 정책문서)을 준수하도록 함
 - (f)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을 트러스트에 제의
 - (g) BBC와 자회사의 경영진 임명과 그에 대한 책임
 - (h) (트러스트 및 BBC 트러스트 유닛의 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외한) BBC의 운영 및 재정 사무
 - (i) 트러스트에 그 자체의 성과 및 BBC와 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 (2) 덧붙여, 집행위원회는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의해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3) 이 직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제9조에 기술된 바대로 트러스트의

지배를 받는다.

수용자평의회(Audience Councils)

39. 수용자평의회

- (1) 수신료 납부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트러스트의 업무와 연계되도록 수용자평의회를 둔다. 평의회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 및 이익 단체를 비롯한, 영국 안의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 (2) 평의회는, 영국 곳곳에서, BBC가 그 공적 목표를 잘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신료 납부자들의 평가를 트러스트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이해를 활용해야 한다.
- (3) 14조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의 지역 위원들이 대표하는 네 지역에 평의회를 하나씩 둔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트러스트 위원이 각 평의회 의 위원장이 된다.
- (4) 덧붙여, 공적 목표의 성취에 있어 BBC가 수용자에게 잘 봉사하고 있는지 가능하기 위해 다른 평의회 의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 (5) 네 평의회 의 위원은 영국의 다양성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원되어야 하고,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 (6) 평의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지역 기반의 공동체 및 이익 단체를 포함하여 수신료 납부자들과 연대한다.
 - (b) 기본협정에 따라 공공가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모든 제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c) 기본협정의 요건에 따라 트러스트가 발부하는 서비스 면허에 대한 평가로서 해당 서비스 면허의 내용 및 해당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d) 공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BBC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e) 매년 4개 지역에서의 BBC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트러스트에 제출하고 중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 (f) 매년 관련 지역의 연차보고서를 출판하여, BBC가 해당 지역에서 수신료 납부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한다.
- (7) 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충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8) 트러스트는, 규약의 틀 안에서, 수용자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조직

40. 사장

- (1) BBC에 사장 1인을 둔다.
- (2) 사장은 BBC의 최고경영자이다. 사장은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제29조 참조).
- (3) 사장은 BBC의 대표 편집인으로 BBC의 보도물 및 창작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4) 사장 궐위시, 또한 트러스트가 집행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사장은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임면된다.
- (5) 다른 경우, 사장은 제30조에 따라 임명되고 33조에 따라 재직, 해임된다.

41. BBC 직원

- (1) BBC는 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해 직원을 임명한다.
- (2) 4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임명과 근무의 조건은 집행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3) 본 조항은 사장 및 집행위원회의 여타 상임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사장과 상임위원의 경우는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참조).

42. 트러스트 직원

- (1)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또는 트러스트의 위원)를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해 트러스트 유닛의 책임자 및 직원을 임용한다.
- (2) 직원은 트러스트에 의해 임용된다. 직원의 임용 조건은 이 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다.
- (3)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유닛의 책임자와/또는 다른 직원에게 제43조 (2)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43. BBC 트러스트 유닛

- (1) 제42조에 의거하여 임용된 BBC 직원은 BBC의 조직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된 BBC 트러스트 유닛에 소속된다.
- (2) 트러스트 유닛은 트러스트의 관리 하에 있다. 트러스트 유닛의 소재 및 여타 필요 사항은 트러스트가 정하며, 트러스트는 BBC의 나머지 부서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을 트러스트 유닛과 관련하여 행한다.
- (3) 트러스트 유닛에 소속된 BBC 직원은 집행위원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집행위원회를 위하여 활동하지도 않는다.
- (4) BBC 직원은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간 합의된 바에 따라서만 트러스트 유닛과 BBC의 나머지 부서간에 이동할 수 있다.

44. BBC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1)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각각
 - (a) BBC 직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직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 (b) (2)항에 언급한 종류의 적절한 제도를 신설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서

로부터의 의견 수렴

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이 제도는

(a) BBC 직원의 근로조건 협상에 의한 정리

(b)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BBC와 직원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i) 직원의 건강, 안정, 복지

(ii) 동등한 기회와 교육(기본협정에 제시된 사항들에 따르는 구체적인 책무를 줄이지 않고)

(iii) BBC의 서비스 운용에서의 효율성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 제도는 본 칙허장과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각별히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직무들과, 본 칙허장에 기술된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관계의 일반적인 특성과 조화되어야 한다.

보고서와 회계

45. 연차보고서와 회계보고

(1) BBC와 관련하여 본 조항의 다음 요건들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와 회계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2) 회계보고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부분 1은 트러스트가, 부분 2는 집행위원회가 준비한다.

(3) 부분 2에는 적어도 BBC와 관련하여 운영 및 재정 평가(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 규칙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평가, 회계 보고를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과 (4)

항, 그리고 (5)항에 따라, 부분 2의 내용은 집행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4) 부분 2를 준비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적용할 만한 규약들과, 부분 2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의 협의 후 트러스트에 의해 부여된 방침을 따라야 한다.
- (5) 부분 2를 준비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BBC와의 협의 후 문화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에 의해 주어진 방침을 따라야 한다.
 - (a) BBC의 재정, 경영, 업무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는 할 정보
 - (b) 회계 보고에 포함되는 정보
- (6) 부분 2가 준비되고 (적절한) 회계 감사를 마치면, 집행위원회는 이것을 트러스트에 제출해야 한다.
- (7) 트러스트는 부분 2를 참작하여, 부분 1에 그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세하게 부분 2에 관한 평가를 준비한다.
- (8) 부분 1에는 적어도 위의 평가와,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 유닛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 2의 회계 보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 유닛의 지출에 관한 회계 감사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과 (9)항에 따라, 부분 1의 내용은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다.
- (9) 부분 1을 준비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트러스트의 재정, 경영, 업무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할 정보와 관련하여 트러스트와의 협의 후 문화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에 의해 주어진 방침을 따라야 한다.
- (10) 트러스트는 이 연차보고서와 회계 보고를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안에 문화부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문화부장관은 그것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BBC는 연차보고서와 회계 보고를 출판해야 한다.
- (11). 본 조항에서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말은 트러스트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 적격의 감사에 의해 회계 감사를 받고 공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격 감사’는 영국에서 설립되고, 1989년 회사법 제32조 (4)항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공인회계사 기구의 회원을 의미한다.

‘부분 1’은 연차보고서와 회계 보고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한다.

‘부분 2’는 연차보고서와 회계 보고의 두 번째 부분을 말한다.

‘회계 보고’는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맞게 준비된 회계 보고를 의미하고 BBC의 수입과 지출 계정,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분석 등을 포함한다:

46. 회계 조사

- (1) BBC는 요구가 있는 경우 적절한 시간에
 - (a) (2)항에 언급된 사람들이 BBC의 회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b) BBC의 재정적 거래와 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예측, 평가, 조정명세서, 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여기서 그 사람들은 문화부장관, 외무부장관, 그리고 본 조항의 취지상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의해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통칙

47. BBC의 법인적 성격과 권한

- (1) BBC는 존속한다. 바꿔 말하면 BBC는, 특정인이 BBC를 퇴직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성의 변화에 관계없이, 법인으로서 계속 존재한다.
- (2) BBC는 사인(社印)을 갖는다. BBC는 그 사인을 변경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 (3) BBC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법인에 속한 사항을 처리할 수 법적 자격을 갖는다. 덧붙여, BBC는 자연인의 법적 자격도 갖는다.
- (4) 그러나 BBC는 이들 일반적 권한을 3조부터 5조까지 상술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한다. 이들 권한의 어느 것이든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함께, 본 칙허장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제52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하는 법률에 따라 그와 같은 권한의 행사는 유효하다: 예를 들면, BBC가 맺은 계약은, BBC가 존속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유효하고 BBC에

대해 실행력이 있다.

- (5) 상황에 따라서, BBC의 권한은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또는 그 지배 하에 행사된다. 본 칙허장 또는 법적 제도에 의해 제정된 일정한 규정에 따라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실행가능한 경우, 그 각각의 지배 하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각각의 기능의 목적을 위하여, 그 기능에 부수하는 또는 도움이 되는 목적을 포함하여, BBC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8. 후보 칙허장과 법안

BBC는, 트러스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존속을 위해 이다음 칙허장이나 후보 칙허장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고, 법안이 영국 의회나 스코틀랜드 의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49.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 (1) ‘기본협정’은 BBC 칙허장의 목적들을 위해 만든 기본협정이라는 의미의 진술을 담고 있는 BBC와 문화부장관 간의 협정이다.
- (2) 본 칙허장이 부여된다는 예상 하에, BBC는 문화부장관과 2006년 6월 30일자의 기본협정을 맺었다. 이다음 기본협정은 본 칙허장의 유효기간 동안에 만들어질 것이다(그리고 현재의 기본협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이다).
- (3) 기본협정은 원칙상 본 칙허장이 역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또는 그렇지 않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BBC에 의무를 부과한다. 기본협정은, 예를 들어, 세세한 요건을 정한다. 예를 들면, 24조 (2)항은 2006년 6월 30일에 맺은 협정의 제79항에 상술한 일반적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협정은 본 칙허장과 일관되어야 하며 모순될 경우에는 칙허장이 우세하다. 이에 2006년 6월 30일에 만든 기본협정 ((2)항에 언급된)의 내용은 본 칙허장의 취지와 조화된다고 선언한다.
- (4) BBC는 기본협정을, 그것이 유효한 한, 따라야 한다.
- (5) BBC가 문화부장관과 기본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트러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50. 해외활동의 허가

BBC는

- (a) 외국 정부로부터 또는 외국의 어떤 곳으로부터 면허, 허가, 권리, 특전을 얻기 전에
 - (b)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어떤 곳과 협정을 맺기 전에
-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 결의 및 의사절차의 효력

- (1) (2)항에 언급된 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것만으로 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족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 (2) 그 기관은 트러스트, 집행위원회,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추천위원회는 관련 조항들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구성된 경우에만 30조 또는 31조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2. 칙허장과 기본협정의 준수

- (1) BBC는 칙허장과 기본협정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다른 문서에서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 (2) BBC가 본 조항의 (1)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과/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구제책을 찾을 자격이 있다.
- (3) BBC에 대한 불만처리는 중요하다. (트러스트에 항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BBC의 불만처리 체제는 BBC가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또 개선책이 BBC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사항과 상응하고 관련되게 마련되도록 하는 적절하면서도 균형잡힌, 또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코자 한다.
- (4) 때때로 불만은 Ofcom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과 행정기관에 제기되기도 한다.

- (5) 법원은 공법 통상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심사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6) 본 조항은, 관련이 있는 한, 이용 가능한 어떤 개선책도 배제하지 않지만 본 칙허장의 의미는 개선책이 적절하고 제기된 문제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53. 취소 및 종료

- (1) BBC는, 만약 트러스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a) 국왕의 허가를 받아, 또 국왕이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으로 본 칙허장을 포기한다.
 - (b) BBC의 사무를 끝내거나 문화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 (2) BBC가 자발적으로 해산 또는 강제적으로 해체될 경우에 그에 앞서 BBC의 재산과 자산은
 - (a) BBC의 부채 청산과 채무 상황에 쓴다.
 - (b) (a)항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지침대로 처분된다.
- (3) 본 칙허장이 만료되는 2016년 12월 31일에, 만약 국왕이 본 칙허장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 그리고 국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친서를 통해 BBC의 존속을 선언하고 인가하지 않는다면, BBC는 끝난다.
- (4) 본 조항은 적용가능한 법규 및 법적 제도에 따른다.

54. 승인 및 지침

- (1) 본 칙허장에 의거하여 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나 일이 있을 는 경우에
 - (a) 승인은 서면으로 주어져야 한다.
 - (b) 승인은 무조건으로 또는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주어질 수 있다.
 - (c) 승인은 폐지 또는 변경될 수 있다(본래의 승인 부여시 (a)항, (b)항을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항과 (b)항을 적용한다).
- (2) 본 칙허장에 의거하여, 정부 장관은 BBC에 지침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 (a) 그 지침은 서면으로 주어져야 한다.

- (b) 권한에는 지침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권한도 포함된다(관련 권한에 적용가능한 조건이나 제한에 따른다).

해석

55. 서론

본 칙허장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문체로 입안될 수 있도록, 아래 설명된 해석의 여러 가지 원칙 또는 규칙에 의지했다. 본 칙허장의 독해에 있어 이들 원칙과 규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문맥상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59조 (2)항의 원칙은 제13조 (1)항이 두 명의 위원장을 동시에 근무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56. 알파벳 순서에 따른 용어들의 간략한 정의

- 본 칙허장에서
- ‘BBC’는 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를 의미한다.
- ‘사장’은 제40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BBC의 사장을 의미한다.
- ‘집행위원회’는 제7조에 의해 설립된 BBC의 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 ‘외무부장관’은 영국연방의 외무부장관을 의미한다.
- ‘기본협정’은 제49조에 의해 정의된다.
- ‘기능’은 권한과 임무를 포함한다.
- ‘수신료’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65절에 의거한 규정으로 인해 개인이 지불할 의무를 지는 금액(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위해 지불하는 할 금액)을 의미한다.
- ‘수신료 납부자’는 제57조에 의해 정의된다.
- ‘수신료 수입’은, BBC의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BBC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재원을 충당한다는, 기본협정에 따라 문화부장관에 의해 때때로 BBC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Ofcom’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s)를 의미한다.
- ‘규약’은 21조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정을 의미한다.
- ‘공적 목표’는 제4조에 상술된 목표를 의미한다.

‘문화부장관’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을 의미한다.

‘직원(staff)’은 임원, 직원, 서비스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트러스트’는 제7조에 의해 설립된 BBC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BBC 트러스트 유닛’은 제43조에 기술된 트러스트 유닛을 의미한다.

‘영국’은, 본 칙허장의 취지에서만,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북아일랜드(Nothern Ireland),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맨 섬(Isle of Man)으로 이루어진 영국연합왕국을 의미한다.

57. ‘수신료 납부자’의 의미

본 칙허장에서, ‘수신료 납부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의 364항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TV 면허의 소지자뿐만 아니라 (문맥상 상식적인 선에서) 영국에서 BBC의 어떤 서비스라도 보거나 듣거나 이용하는, 또는 장래에 그리하거나 그리하기를 원하는 자도 포함한다.

58. 추밀원령에 대한 언급

추밀원령에 의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추밀원에 자문하여 행동하는 국왕에 의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다.

59. 성(gender)과 수(number)

(1)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성을 포함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단수로 쓰인 단어들은 복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51조 (1)항에서 ‘한 사람의 결원(a vacancy)’이라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이 결원인 경우(several vacancies)도 포함한다.

60. 권한 및 의무의 연속성

본 칙허장이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필요한 때마다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제13조 (2)항에 따라 트러스트의 평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6에서 다른 숫자로 ‘단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 권한은 6에서 8로 늘리고, 그 다음에 10으로, 그 다음에 5로 줄이고, 다시 6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9로 늘리는 등 필요할 때만다 행사될 수 있다.

61. 상이한 사례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만들 권한

본 칙허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원칙적으로 상이한 사례에 대해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7조에 의해 부여된 트러스트 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의 보수를 여타 위원들의 보수보다 높게 정할 수 있게 행사될 수 있다.

62. 관련 시기에 대한 언급

- (1) 어떤 직책의 보유자에 대한 언급은 본 칙허장이 부여된 날보다는 관련된 시기에 그 직책을 가진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7조에 의해 문화부장관에게 부여된 결정권은 그 누구든 그 당시 문화부장관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행사될 수 있다.
- (2) 마찬가지로,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관련된 시기에 그에 관한 언급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1조 (b)항의 좋은 기업 지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에 대한 언급은, 2010년에는, 본 칙허장이 부여된 때에 좋은 기업지배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라기보다 2010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63. 법률에 대한 언급

- (1) 특정한 법률 제정에 대한 언급은 때때로 수정되거나 다시 제정되는 법률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 (2) 맨 섬 또는 채널 제도과 관련된 법에 대한 언급은 맨 섬 또는 채널 제도까지 적용되는 법에 대한 언급이다.

64. 표 제

표제는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표제와 관련된 명문화된 본문의 정확한 해석의 신뢰할 만한 지침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용하기 위해, 표제는 종종 지나치게 간략화되거나 실제 내용의 일부 측면만 선택적으로 나타낸다.

65. 일반적 선언

본 칙허장은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왕에 의한 권리 부여가 국왕에게는 유익하고 국민들에게는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추정은 맞지 않다.

여왕 폐하의 즉위 55년 ___월 ___일에 웨스트민스터에서 폐하의 칙서가 내려졌음을 증명한다.

이를 여왕 폐하의 옥새로 보증함.

일 정: 과도조항(Schedule: transitional provisions)

서 론

1. (1) 본 일정에서-

‘과도기간’은 본 칙허장이 부여된 날(65조 다음의 공식적인 문장에 적힌 날짜)의 다음날부터 시작되고 200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1996년 협정’은 문화부장관과 BBC 간에 1996년 1월 25일에 체결된(그리고 나중에 수정된) 협정으로 BBC와 그 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칙허장’은 1996년 5월 1일에 시행된 BBC의 존속을 위한 왕실 칙허장이다.

(2) 본 일정의 조항에서 어떤 사항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것은 과도기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기간 본 칙허장의 효력에 관한 일반 조항

2. (1) 본 일정에서 과도기간 동안 (어느 한도까지 또는 어떤 목적으로) 특별히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한 (2)항에 언급된 본 칙허장의 조항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2) 그 조항은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BBC의 서비스 제공에 집행위원회가 책

임을 지도록 하는), 제24~27조, 제29조 (1)~(3)항, 제30조 (2)~(7)항, 제31~33조, 제35 조 (4)항 및 (5)항, 제38조 (1)항 및 (2)항, 제39조, 제40조 (4)항 및 (5)항, 제41조, 제44~48조, 제53조이다.

- (3) 본 칙허장의 여타 조항들은 과도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적용가능한 경우) 본 일정의 다음 조항들을 따른다.

과도기간 동안의 관리 제도에 관한 일반 조항

3. (1) 과도기간 동안-

- (a)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본 일정에 포함되거나 마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 (b) 경영위원들(governors)은 1996년 칙허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 하되 본 일정에 포함된 관련 규정을 따른다.
 - (c)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영위원은 BBC의 구성원이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정에 의거하여 과도기간 동안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BBC를 위하여, 또 BBC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과도기간에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권한

4. (1) 과도기간 동안,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각각 본 칙허장이나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과도기간이 끝날 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마땅 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 (2) 본 칙허장이나 기본협정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그 반대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에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본 조항은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가 단지 준비를 위한 것(공중의 자문(public consultation)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상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본 일정의 조항이 과도기간에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에 특정한 기능을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본 조항의 효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집행위원회 임명

5. (1) 과도기간이 시작된 다음 트러스트는 가능한 한 조속히
 - (a) BBC의 사장 1인을 임명해야 한다.
 - (b) 부사장(Deputy Director General) 1인을 임명해야 하며 그는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3) 집행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적절한 초기 인원을 정하고(4인이나 5인) 그만큼 임명한다.
- (2) (1)항에 의거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사장을 임명하거나 비상임위원들 중 한 사람을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해야 한다.
- (3) 제29조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32조는 그 근무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30조 또는 31조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임명되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사장을 포함하여)의 임명 방법에 관하여, 제33조는 그 근무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초기 임명위원회(Initial Appoints Committee)

6. (1) 제5조에 언급된 사람들을 임명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임명위원회’(IAC)를 구성해야 한다.
- (2) 다음의 사람들(만)이 IAC의 위원이 된다.
 - (a) 사장
 - (b) 부사장
 - (c) 트러스트에 의해 선정된 집행위원회의 비상임위원 2인
- (3) IAC는 (2)항대로 구성된 경우에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4) 사장은 IAC의 위원장이 되며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사장은 임명 또는 여타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즉각 트러스트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

7. (1) IAC는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 (a) (2)항에 따라,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고, 집행위원회 초기 상임위원의 적정 인원을 정해야 한다.
 - (b) 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임명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2) (1)(a)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집행위원회 초기 상임위원의 수는, 제5조 (1)(c)항

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정해진 초기 비상임위원의 수와 함께 집행위원회 초기 구성(즉, 위원회 위원의 총수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각의 수)이 제28조 (3)항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그 수가 되어야 한다.

- (3) 집행위원회의 초기 구성은 제28조 (2)항의 취지상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인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 (4) 제30조는 본 항에 의거하여 임명되는 집행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방법에 관하여, 제33조는 그 근무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목표 설정

- 8. 제24조 (2)(a)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트러스트에 대해 공적목표의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비스 면허

- 9. (1) 트러스트는, 가능한 한 조속히, BBC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면허를 발부해야 하는데(제24조 (2)(c)항에 의거하여, 그러나 다음의 내용을 따라) 그 서비스는 트러스트가 보기에
 - (a) BBC가 2007년 1월 1일 이후 제공할, 또는 제공할 것 같은 서비스
 - (b) 서비스 면허에 의해 포함되는 서비스(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협정의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서비스 면허는 기본협정의 조항과 일치되어야 하며 (3)항 및 (4)항을 따라야 한다.
- (3)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서비스 면허에는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주요 특성, 기타 중요한 특징들이 정의되는데, 특별히
 - (a) 1996년 칙허장 또는 1996년 협정에 의거하여 문화부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서비스의 제공 조건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b) 해당 서비스의 현저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4)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서비스 면허는 트러스트에 의해 실시되는 공중자문(public consultation) 없이 발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

- 10. 제24조 (2)(k)항은 아래 11조에 의거하여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트러스트에 기본

협정의 조항과 다른 공정거래 정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규칙, 지침 등을 정하는 권한의 초기 행사

11. (1) 기본협정은 1996년 칙허장 또는 1996년 협정에 따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갖는 규칙 또는 제도가 본 칙허장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효력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다.
 - (2) 기본협정은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가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따른 목적(예를 들면, 전략의 수립, 규약 또는 지침의 입안, 요건의 부과, 사안의 승인)을 이루기 위하여
 - (a) 1996년 칙허장 또는 1996년 협정의 취지상 과도기간 동안 유효한
 - (b) 과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효하도록 BBC의 경영위원들이 합의한 규칙 또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규칙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능을 처음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 수 있다.
 - (3) (2)항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은-
 - (a) 본 칙허장 또는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규칙과 제도가 충분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트러스트 또는 집행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규칙이나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수 있다.
 - (b) 이전에 공중의 자문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기능의 경우에, 그런 자문 없이 처음에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할 수 있다.
 - (c) 과도기간 동안 또는 그후에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d) 본 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조항에 따라 효력을 갖는 규칙이나 제도가 과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그 조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또는 결정된 시기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다.

트러스트 유닛

12. 트러스트는 과도기간 동안 제24조 (3)항과 제42~44조에 의거하여 트러스트 유닛 및 그 직원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수용자평의회

13. (1) 수용자평의회의 초기 구성은, 제39조 (3)항에 기술된 각 평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정한다.
- (2) 2007년 1월 1일에-
- (a) 지역자문평의회(Regional Advisory Council)의 현 위원장은 모두 잉글랜드 수용자평의회의 위원이 된다.
 - (b) 북아일랜드 방송평의회(Broadcasting Council)의 현 위원은 북아일랜드 수용자평의회의 위원이 된다.
 - (c) 스코틀랜드 방송평의회의 현 위원은 스코틀랜드 수용자평의회의 위원이 된다.
 - (d) 웨일스 방송평의회의 현 위원은 웨일스 수용자평의회의 위원이 된다.
- (3) 본 조항에서-
- (a) ‘현 위원장’은, 지역자문평의회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직전에 해당 평의회의 위원장인 자를 의미한다.
 - (b) ‘현 위원’은, 지역 방송평의회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직전에 해당 평의회의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인 자를 의미한다.
- 그러나 상기 표현은 2006년 12월 31일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4) 지역 방송평의회의 위원으로 또는 지역자문평의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용자평의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원래 임기의 잔여기간만 재직한다. 그러나 본 조항이 과도기간 후 제39조 (7)항 또는 (8)항에 따른 규약에 이와 반대되는 조항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1996년 칙허장에 따른 보고서 및 회계보고

14. (1) 각 지역방송평의회의는 1996년 칙허장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칙허장 제12조 (8)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에 또는 그전에 끝나는 1년의 연차보고서를 BBC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 (2) 이를 위해, 1996년 칙허장의 제12조 (6), (7), (9), (11)항은 2006년 12월 31일 후에도 계속 유효하지만, 그 날짜 후에 지역방송평의회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제12조 (8)항에 의거한 기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1) BBC는 1996년 칙허장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칙허장 제18조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에 또는 그전에 끝나는 1년의 연차보고서, 수입과 지출 보고서, 대차대조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8조 (2)항을 따라) BBC와 문화부 장관은 모든 점에서 제18조 (1)~(3)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이를 위해, 2006년 12월 31일 후의 시간과 관련하여, 1996년 칙허장 제18조 (3)항의 경영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트러스트의 위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만처리

16. (1) 본 조항은

- (a) 과도기간 처음 또는 그전에 BBC에 대해 제기되었지만 과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BBC에 의해 최종적으로 재정(裁定)되지 않은 불만
 (b) 2007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또는 그후에 BBC에 제기된 불만

에 적용한다.

(2) 과도기간이 끝난 후에, 본 조항을 적용하는 불만은

- (a)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가 불만처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한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 (b) 불만스런 문제가 발생한 때 적용한 명문화된 규정들을 참조하여 재정된다.

(3) (1)(a)항에 속하는 불만의 경우,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는 당시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처리 또는 재정하기 위해 언제든지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BBC(BBC의 경영위원, 간부, 직원을 포함하여)가 다루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a)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불만처리 절차의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이

- (a) 공평하고, 현실적이고, 적절하며

- (b)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경우이다.

(4) 본 조항의 어떤 것도 BBC에게 불만을 들어주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불만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BBC에 의해 적절하게 또 최종적으로 재정된 것을 재생하는 것이다. 특정한 일과 관련하여 불만이 제기하는 이슈는 동일인이 이전에 그 일과 관련하여 표시한 불만으로 제기된 이슈와 실질적으로 같다.

II.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과 BBC 간 협정

(An Agreement Between Her Majesty's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06년 7월

(중략)

배 경

- (1) BBC는 1926년 12월 20일 왕실 칙허장을 부여받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법인으로서의 BBC 존속을 위해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칙허장이 부여되었다. 이들 칙허장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현 칙허장(the Existing Charter)”)은 1996년 5월 1일에 부여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현 칙허장 기간(the current Charter period)”) 동안 BBC의 존속을 규정하고 있다.
- (2) 문화부 장관은 여왕께 2016년 12월 31일에 만기가 되는 그다음의 기간 BBC의 존속을 위해 그다음 칙허장(“새 칙허장(the New Charter)”)을 신청 중인데, 이것은 현 칙허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 칙허장에서 새 칙허장으로 이행(移行)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3) 현 칙허장은 문화부 장관과 BBC가 1996년 1월 25일에 체결한(그리고 2000년 7월 3일 및 2003년 12월 4일에 체결한 협정에 의해 개정된) 협정(“현 협정(the Existing Agreement)”)에 의해 보완된다.
- (4) 기타 사항들 중에, (2003년에 개정된) 현 협정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198항에 의거하여,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s)에 일정한 규제 기능과, 관련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5) 새 칙허장은 기본협정의 개념에 관한 조항들, 특별히 49조를 포함하고 있다.
- (6) 현 협정이 폐기되고, 198항의 취지를 살리는 조항을 비롯하여 새 칙허장의 조항들

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항을 정할, 그리고 새 칙허장의 취지를 살리는 기본협정이 될, 새 협정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 증서는 문화부장관과 BBC가 서로 아래와 같이 합의함을 증명한다.

서 론

1. 본 협정의 해석

본 협정을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이 뒷부분에 정리되어 있다.

2. BBC 칙허장의 목표를 위한 ‘기본협정’으로서의 지위

본 협정은 BBC 칙허장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기본협정이다. 본 협정의 의의는 칙허장에 설명되어 있다(제49조 참조).

3. 본 협정의 개시 (및 기존 협정의 폐기)

(1) 본 협정은 대부분의 실제적인 목적들을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술은 (2)항에 따라 해독되어야 한다.

(2) 기술적인 조건에서, 본 협정은 칙허장이 부여된 날(칙허장 제65조 다음 문장에 명시된 날짜)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그러나 1996년 칙허장에 따라 실시중인 구조상의 조치 및 기타 제도가 조속히 새 칙허장에 따른 것이 되도록 일정1(Schedule 1)은 본 협정의 효력을 수정한다(그 일정이 정한 과도기간 및 그 후 시간과 관련하여).

(3) 일정 2에 오른 협정은 2006년 12월 31일에 폐기되나 일정 1 및 칙허장 일정의 규정에 따른다.

(4) 본 조항에서

‘1996년 협정’은 1996년 1월 25일에 문화부 장관과 BBC 간에 체결된(그리고 그 후 개정된), BBC 및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1996년 칙허장’은 BBC의 존속을 위해 1996년 5월 1일부터 발효한 왕실 칙허장을 의미한다.

4. BBC의 독립

본 협정의 양 당사자는 칙허장 제6조에 기술된 BBC의 독립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BBC는 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장래에 행동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지게 되었다.

BBC의 공적 목표

5. 목표의 과제

- (1) 칙허장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설정되는 목표 과제는 본 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2) 공적 목표 여섯 가지는 그 각각의 과제를 둔다.
- (3) 각 과제는
 - (a) 우선사항을 정하며,
 - (b) 칙허장 제5조에 따라 BBC가 그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그 우선 사항에 대비(對比)하여 BBC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한다.
- (4) 트러스트는 목표 과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공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5) 목표 과제가 채택되면 트러스트는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하며, 수정할 수도 있다. 수정을 하려면, 수정으로 인한 변화가 적합할지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의 틀 안에서 정한 우선사항에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시민권과 시민사회의 유지

- (1) 시민권과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목표 과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BBC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시사 분석 등을 통해 세상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그렇게 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의회 및 분권화 구조¹⁾를 비롯한)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진작할 필요와, BBC가 상원 및 하원의 의사를 매일 공정하게 방송할 필요성
 - (b) 미디어 활용능력을 진작할 필요성
 - (c)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 유지의 중요성

7. 교육과 학습의 진작

교육과 학습을 진작하기 위한 목표 과제를 개발하고 점검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BBC가 확실히

- (a) 이용가능하며, 정규 학습이나 비정규 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전 영역에 걸친 주제 및 주요 문제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고
- (b)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와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8. 창의성 및 문화적 우수성 자극

(1) 창의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자극하기 위한 목표 과제를 개발하고 점검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BBC가 확실히

- (a) 독특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의 창의적 우수성을 통해 영국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 (b) 창의성을 기르고 재능을 육성하며
- (c) 문화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게 해야 한다.

(2) 그렇게 하는데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 (a) BBC가 촬영전략을 세울 필요성
- (b)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적절한 스포츠 보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영국에는 영국전체를 대표하는 의회(Parliament of United Kingdom)가 있으며 지방분권(devolution)에 따라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역에 각각 스코틀랜드 의회(Scottish Parliament), 웨일스 의회(National Assembly for Wales), 북아일랜드 의회(Northern Ireland Assembly)가 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의 의회(English Parliament)의 구성할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역

9. 영국연방과 국가²⁾, 지역, 공동체를 대표함

- (1) 영국연방과 국가,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목표 과제를 개발하고 점검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BBC가 확실하게
- (a)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강화하며, 수시로 수용자 모두를 묶어 공동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 (b) 영국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의 삶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통해 다른 문화 및 대안적 시각에 대한 인식을 진작하게 해야 한다.
- (2) 그렇게 하는데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 (a) 다른 종교적 신앙과 신념을 반영하는 일의 중요성
 - (b) 소수민족의 언어를 적절히 제공하는 일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10. 영국을 세계로 세계를 영국으로 이끔

영국을 세계로, 세계를 영국으로 이끄는 목표 과제를 개발하고 점검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BBC가 확실히

- (a)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을 통해 영국 안의 사람들이 영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문화와 시각을 인식하고 주요한 국제문제를 알게 되며
- (b) 해외 수용자들에게 고급의 국제뉴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BBC의 영국 내에서의 공공서비스

11. 영국 내 공공서비스 목록과 기술

- (1) 본 협정이 체결된 날, BBC는 영국 내에서의 공공서비스로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 (2) 영국 전역의 수용자들을 위한 텔레비전 서비스로서
- (a) BBC One: 혼합장르 채널로, 주류 수용자를 위해 광범위한 범주의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Ceefax³⁾와 함께 제공.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지역 특성

2)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4개 국가(nation)가 모인 연합왕국이다.

3) BBC에 의해 개발된 TV 텍스트 서비스로 197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었고 스포츠, 국제 및 지역 뉴스, 날씨, 텔레비전 편성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을 고려한 각각의 버전을 제공하며 잉글랜드에도 지역마다 약간씩 편성을 달리한 버전을 제공함.

- (b) BBC Two: 사실적 프로그램, 코미디, 드라마에 주안점을 둔 혼합장르 채널로, 주류 수용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Ceefax와 함께 제공.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버전을 제공하고 잉글랜드에도 지역마다 약간씩 편성을 달리한 버전을 제공함.
 - (c) BBC Three: 주로 젊은 성인층을 시청대상으로 삼는 혼합장르 채널
 - (d) BBC Four: 여타 BBC 채널의 주류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 (e) CBeebies: 미취학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 (f) The CBBC Channel: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혼합장르 채널
 - (g) BBC News 24: 뉴스, 분석, 정보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4시간 채널
 - (h) BBC Parliament: 주로 영국 의회 및 지역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를 실황 중계하며, 그 밖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채널
 - (i) BBCi: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독립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 인터랙티브 서비스
- (3) 영국 전역의 수용자를 위한 라디오 서비스
- (a) Radio 1: 담화 프로그램과 함께 최상의 새로운 음악을 다루는, 젊은 수용자를 겨냥한 팝뮤직 서비스
 - (b) 1Xtra: 젊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현대 흑인음악 서비스로 신작 및 공연에 주안점을 두며 담화 프로그램과 함께 편성함
 - (c) Radio 2: 뉴스, 시사, 사실적 프로그램을 비롯한 담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범주의 록, 팝뮤직, 포크, 블루스, 소울, 레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d) Radio 3: 클래식 음악을 주로 다루면서 라이브와 특별히 녹음된 음악에 중점을 두며 재즈, 세계음악, 드라마, 담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 (e) Radio 4: 뉴스, 시사, 사실적 프로그램, 드라마, 낭독, 코미디를 포함하는 담화 기반의 서비스
 - (f) BBC Radio Five Live and Sports Extra: 뉴스와 스포츠를 24시간 다루는 서비스로 스포츠 경기를 추가적으로 중계하기 위해 방송 시간을 연장하기도 함.
 - (g) BBC 6 Music: 현재 주류가 아닌 팝뮤직을 그 배경에 관한 담화와 함께 소개하는 서비스
 - (h) BBC 7: BBC 아카이브의 자료를 활용하여 코미디, 드라마, 낭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담화 기반의 서비스

- (i) BBC Asian Network: 아시아계 영국인들을 써서 영어와 아시아 나라의 말로 아시아계 영국인들에게 토론, 뉴스, 음악, 스포츠, 오락,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4) 영국의 특정 지역에 있는 수용자를 위한 라디오 서비스
 - (a) BBC Radio Scotland: 음악과 담화 프로그램을 혼합 편성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서비스
 - (b) BBC Radio nan Gaidheall: 스코틀랜드에서 게일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서비스
 - (c) BBC Radio Wales: 음악과 영어로 진행되는 담화 프로그램을 혼합 편성하는, 웨일스 전역에서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서비스
 - (d) BBC Radio Cymru: 웨일스 전역에서 수신할 수 있는, 웨일스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서비스
 - (e) BBC Radio Ulster와 BBC Radio Foyle: BBC Radio Ulster는 음악과 담화 프로그램을 혼합 편성하는 라디오 서비스로 BBC Radio Foyle이 서부지역에서 방송하는 시간만 제외하고 북아일랜드 전역을 커버한다.
 - (f) 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에서 음악과 담화 프로그램을 혼합 편성하는 지역 라디오⁴⁾
- (5) 온라인서비스로서
 - (a) bbc.co.uk. : BBC의 공적 목표와 관련된 내용 전부를 포함하는, 범위가 넓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 (b) BBC jam: 5세부터 16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의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 (6) 트러스트는 영국 내에서의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16~20조 및 23~33조의 요건을 따라 새로운 서비스의 설치, 기존 서비스의 폐지 또는 기존 서비스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2. BBC의 영국 내 공공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 (1) BBC는 시청자와 청취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그들을 내용에 포함하는 BBC의 공공서비스에,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중파, 위성, 케이블, (무선 또는 유선의) 광대역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

4) 2007년 3월 현재, 잉글랜드의 BBC 지역 라디오방송국은 총 40개이다.

송, 스트리밍, 온디맨드 방식이 포함된다.

- (2) 상기 방법들에 변화가 생기면 관련 서비스 면허를 수정하거나 공공가치 테스트 (Public Value Test, 16~20조 및 23~33조 참조)를 할 수 있다.
- (3) 영국의 특정 지역에서의 시청자, 청취자, 이용자들을 위해 또는 그들에게 도달하고자 마련된 서비스의 경우에 BBC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이익이 있는 경우, 보다 많은 시청자, 청취자,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 (4) 이런 일반적인 의무들에 더하여, BBC는 34~36조에 기술된 의무들을 진다.

13. 영국 내 공공서비스와 관련 콘텐츠의 무료 이용

- (1) BBC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누구에게도 다음 사항의 수신을 이유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 (a) 영국 내 공공서비스
 - (b) 프로그램 또는 공공서비스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제공된 도움(내레이션이사 대사 자막, 노래나 소리에 대한 설명 자막과 같은)
 - (c) 프로그램의 홍보나 안내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에 포함된 내용
 - (d)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항목에 부수하는 여타의 서비스
- (2) (1)항의 취지상,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공서비스 수신에 대한 요금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 (3) (1)항을 BBC가 어떤 사람의 명백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4. 영국 내 공공서비스 콘텐츠의 특성

- (1)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고급이고, 매력적이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 (2) 영국 내 공공서비스 방송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은 적어도 위에 제시한 특성들

중 하나는 나타내야 한다. 방송외의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내용의 각 항목은 적어도 위에 제시한 특성들 중 하나는 나타내야 한다.

15.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의 목표

영국 내에서 공공서비스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264(4)항에 기술된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의 목표와 그 목표가 동법 제264(6)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영국 내 공공서비스 면허

16. 영국 내 공공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면허

제17~20항은 칙허장 제24조(2)(c)항에 따라 트러스트에 의해 발부된 서비스 면허가 영국 내 공공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7. 서비스 면허의 내용

- (1) 서비스 면허는 서비스의 범위와 목적, 목표, 주요 예산, 여타 중요 특징들을 규정하며, 수신료 납부자들과 그 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면허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들을 기술해야 한다.
- (2) 각각의 면허는 해당 서비스가 공적 목표들 및 그와 관련된 우선사항들을 진척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는 트러스트가 측정하는 성과의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지표에는 어떻게든 수신료 납부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3) 서비스 면허에 기술된 서비스의 주요 특성들 가운데 어느 것에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가치 테스트(제25(3)항 참조)를 받아야 한다. 트러스트는 각 면허에 서비스의 주요 특성을 정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18. 서비스 면허가 필요한 활동

- (1) 서비스 면허를 발부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트러스트는 한 장의 서비스 면허에 BBC의 어떤 활동들을 포함할지뿐만 아니라, BBC의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지도 정해야 한다(특히, 여타의 활동들을 함께 포함하는 한 장의 포괄 면허보다는 활동들마다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 (2) 상기 결정에 있어, 트러스트는 세 가지의 고려사항을 참작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증명할 필요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세 고려사항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결정력이 있지는 않다. 때때로 상이한 고려사항들이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는데, 트러스트는 그 사항들을 비교 고량하여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 (3) 첫 번째 고려사항은 콘텐츠의 선택이나 발주, 편성, 배급 등을 포함하는 활동들을 한 장의 서비스 면허에 망라하는 것이 적당하리라는 추정이다.
- (4) 두 번째 고려사항은 수신료 납부자를 위하여 이롭고 투명하며 이치에 닿는 결정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특별히, 수신료 납부자들이 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한 서비스 면허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상이한 서비스 면허들의 영역은 그들 서비스에 대해 수신료 납부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
- (5) 세 번째 고려사항은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 관해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결정, 또한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결정이 갖는 잠재적인 이익이다.

19. 서비스 면허에 대한 공적 자문

서비스 면허를 발부하기 전에, 트러스트는 공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0. 서비스 면허의 점검

- (1) 서비스 면허는 트러스트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5년에 한번은 점검되어야 한다. 본 요건에 따라 트러스트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트러스트는 의도하는 점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앞서 정한 점검 프로그램에 너무 엄매일 필요는 없다. 트러스트는 공익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점검에 착수한다.
 - (a) 트러스트가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한 약속의 결과
 - (b) 목표 과제의 현저한 변화로 말미암은 영향
 - (c) 서비스가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바뀔 필요가 있도록 만드는 테크놀로지 또는 수용자 행태 같은 외적 요인의 변화
 - (d) 공공가치와 시장 영향 간의 균형점을 현저하게 이동시키는 시장 환경의 변화
- (3) 서비스 면허를 점검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공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4) 점검 결과, 서비스 면허를 개정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거나 서비스 폐지가 필요하다든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 트러스트는 집행위원회에 그런 문제를 전해야 한다.
- (5) 문제의 해결은 트러스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한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6) 이 조항은 트러스트가 해당 서비스의 특정 측면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것이 해당 서비스의 일정한 개정에 이르게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을 금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또한 집행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트러스트에 서비스 면허의 개정이나 폐지를 제안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트러스트가 서비스 면허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있어 (1)항에 기술한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로그램 정책 성명

21. 프로그램 정책 성명

- (1) 집행위원회는, 1년마다,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 정책 성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트러스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준비되는 프로그램 정책 성명은
 - (a) 각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가 어떻게 다음 한 해 동안 공공서비스 과제 완수에 기여할지, BBC의 제안을 상술하는 성명을 포함해야 하며,
 - (b) 적절한 방식으로, 여타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가 어떻게 다음 한 해 동안 공공서비스 과제 완수에 기여할지, BBC의 제안을 상술해야 한다.

- (3) 본 조항에 의거한 프로그램 정책 성명과 관련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는 각각
- (a)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266조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 정책 성명의 준비에 관하여 Ofcom이 제시하는 지침과
 - (b)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264조 및 제358조에 의거하여 Ofcom에 의해 이전에 발행된 보고서(텔레비전 서비스의 공공서비스 과제 이행에 관한 Ofcom의 보고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Ofcom에 의해 만들어진 연간 보고서를)를 고려하되,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견지에서, 성명을 준비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BBC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그와 같은 지침과 보고서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4) 본 조항에 의거하여 준비되고 승인받아야 모든 프로그램 정책 성명은
- (a) 승인을 받는 후 조속히 BBC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며
 - (b) 트러스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 (5) 트러스트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준비되는 각각의 프로그램 정책 성명에 포함되는 제안을 BBC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칙허장 제45조에 따라 BBC에 의해 제출되는 연차보고서에 프로그램 정책 성명과 관련하여 포함된 제안을 BBC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 성과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6) 상기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정책 성명이 칙허장 제45조에 따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제출일 전에 끝나는 기간과 관련된다면 그 성명은 그 기간의 연차보고서와 연계된다.
- (7) 본 조항의 취지상
 ‘네트워크 서비스’는 영국 전역의 수용자를 위해 마련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서비스를 의미하며, BBC는
- (a) 단일 서비스이지만 지역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 (b) (2)(b)항에 언급한 여타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도 지역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공공서비스 과제’는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에 적용되는 한 칙허장 및 본 협정에 의거한 BBC의 편성의무를 의미한다.

22. 비서비스 활동

- (1) 본 조항은 ‘비서비스 활동(non-service activities)’에 적용되는데, 비서비스활동이란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 협정에 표시된 많은 공식적인 요건의 범위 밖에 있는 BBC의 활동(서비스 면허의 체제, 공공가치 테스트 및 시장 충격 평가에 관한 세부 요건과 같은)을 말한다.
- (2) 비서비스 활동들이 지닌 성격과 잠재적 중요성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서비스 활동들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트러스트는 비서비스 활동이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가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3) 트러스트는 비서비스 활동에 실시되는 서비스가 트러스트가 보기에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서비스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 오기 전에, 비록 공공가치 테스트를 엄밀하게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게 보일지라도(트러스트는 공공가치 테스트가 때때로 비서비스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공익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실증적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 (4) 본 조항은
 - (a) 제101조의 ‘상업서비스’의 정의에 속하거나
 - (b) 주로 영국 외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한 비서비스 활동에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 내 서비스의 변경

23. 서론

- (1) 칙허장의 유효기간 동안에, BBC는 테크놀로지, 문화, 시장 상황, 공중의 기대와 견해 등의 변화에 응하기 위해 영국 내 공공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2) 그러나 변경을 위한 제안은 완전하고 면밀한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사는 공공가치 테스트가 될 것이다. 아래 제24~31조는 공공가치 테스트를 설명하고, 제 33조는 문화부장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24. 공공가치 테스트(The Public Value Test)

- (1) 공공가치 테스트는 공공가치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 (2) 제25조는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제26~31조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5.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1) 공공가치 테스트는 영국 내 공공서비스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신규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에 앞서 실시되어야 한다.
 - (2) 변경을 위한 제안이 이 중요함의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트러스트의 소관 사항이다. 그 판단에 있어, 트러스트는 다음 사항들((3)항과 (4)항에 설명한 추정도)을 고려해야 한다.
 - (a) 영향- 서비스의 변화가 그 이용자와 여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
 - (b) 서비스의 변화가 가져오는 재정적 영향
 - (c) 신기함- 변화가 아직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 분야에 BBC를 포함시키는 정도
 - (d) 지속 기간- 활동이 지속되는 기간
 - (3) 트러스트는 새로운 서비스 면허를 필요로 하거나 기존 서비스 면허에 기술된 주요 특성에 수정이 필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추정해야 한다. 이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트러스트는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때에는 트러스트가 그런 추정을 벗어난 것을 정당화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면허를 발부한다는 것은 그 면허에 기술된 특성에 생긴 특정한 변화가, 당시 기대했던 바와 반대로,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상황의 변화에 만족할 수도 있다.
 - (4) 본 조항에 의거한 판단을 하기 전에, 트러스트는 그 판단과 관련하여 참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고려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고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때때로 제안된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여 트러스트는 제안된 변화 그 자체의 성격 너머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것이 상당한 변화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안된 변화가 덜

분명한 다른 경우에, 트러스트는 공공가치 테스트의 실시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상반된 주장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26. 공공가치 테스트의 실시 방법

- (1) 공공가치 테스트 실시에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 (2) 첫 번째 요소는 공공가치 평가이다(제28조 참조).
- (3) 두 번째 요소는 시장영향 평가이다(제30조 참조).
- (4) 트러스트는 공공가치 평가 및 시장영향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고 제안된 변경과 관련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5) 평가의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 (6) 트러스트는 (4)항에 의거하여 도출한 잠정적인 결론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안된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 특별히, 트러스트가 제안된 변경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려면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가치에 정당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27. 공공가치 테스트의 시한

- (1) 공공가치 테스트는 트러스트가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완결되어야 한다.
- (2) 상황에 따라서, 트러스트는 그 재량으로 좀 더 긴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28. 공공가치 평가

- (1) 공공가치 평가의 목적은 제안된 변화의 공공가치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 (2) 일반적인 조건에서, 공공가치 평가는 다음 요인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 (a) 수신료 납부자가 한 개인으로서 제안된 변화에 두는 가치

- (b) 제안된 변화가 (칙허장 제5조에 유의하면서) BBC의 공적 목표와, 목표 과제에서 정한 우선사항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가치
 - (c) 제안된 변화 및 그 비용의 지불 가치(제안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재정적 결과를 포함하여)
- (3) 제안된 변화의 성격에 따라 잠재적인 공공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처음에
- (a) 관련될 수 있는 공공가치의 여러 측면과
 - (b) 그런 측면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항상 공적 협의를 포함하여)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4) 이런 맥락에서, ‘공공가치’의 개념은 해당 서비스나 활동이 BBC가 수행하는 서비스나 활동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가치, 그리고 적용가능한 제한규정(예를 들면, 칙허장 제 5조 (2)항)을 BBC가 지키도록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29. 공동운영단(Joint Steering Group)

- (1) 시장영향평가에 관련하여, 트러스트와 Ofcom은 공동운영단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 (2) 트러스트와 Ofcom은 두 기관 간에 신분 및 참여의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운영단의 운용과 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해야 한다.
- (a) 운영단은 트러스트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각각 위촉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무소속 위원 약간명을 포함할 수 있다.
 - (b) 트러스트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양측은 운영단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 (c) 따라서,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트러스트 또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교대로 임명한 위원장의 지휘 아래 공동운영단이 시장영향평가를 감독한다.
 - (d) 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갖지 않는다.
- (3) (2)항에 따라, 운영단의 세부적인 구성은 트러스트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다.
- (4) 공공가치 테스트가 적용되는 경우, 트러스트는 운영단에 시장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통지해야 한다. 운영단은 시장영향평가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조건에는 제30조에 의거하여 정한 연구방법의 세부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5) 운영단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권고를 참작하여 평가를 위한 잠재적 관련 시장(the potential relevant market)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운영단에 의해 확인된 잠재적인 시장이 여럿일 경우에 시장영향평가는,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각각의 잠재적인 시장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 (6) 운영단은 시장영향평가가 공공가치 테스트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또한 적절한 일정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7) 트러스트와 Ofcom은 시장영향평가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게 공동작업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8) 만일,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단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또는 그 결과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결 문제는 트러스트의 위원장과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지고 양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를 해결한다(본 조항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2)(c)항과 (5)항에 언급된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30. 시장영향평가

- (1) 공공가치 테스트가 적용되는 경우에, Ofcom은 시장영향평가를 규정할 책임이 있다.
- (2) Ofcom은 시장영향평가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BBC로부터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에 의뢰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 (3) 시장영향평가는 트러스트와 Ofcom이 합의한 연구방법과 일치하게 규정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방법은
 - (a) 시장영향평가가 예상되는 변화와 그것의 잠재적인 시장영향에 적절하게 규모와 범위를 갖춰야 하고
 - (b) 시장영향평가가 제29조 (4)항에 의거하여 정한 조건과 일치하게 시행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 (c) 공동운영단이, 공적 자문 후에, 특정한 평가를 위해 이용하기 적합한 단순화된

연구법을 정한다.

- (4) 합의된 연구방법은 제29조에 의거하여 합의된 조건 및 관련 시장에 따라 정해진 매개변수(parameter)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5) 본 조항에 의거하여 Ofcom이 수행한 업무와, 의뢰받은 시장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 3의 기관이 한 작업은 공동운영단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중요성 여부는 Ofcom이 판단한다.

31. 시장영향평가의 시한

- (1) 시장영향평가는 공동운영단이 평가의 조건을 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 (2) 상황에 따라서, 트러스트는 그 재량으로 좀 더 긴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32. 신규 서비스 등의 추진

- (1) 본 조항은 영국 내 공공서비스에 잠정적 변경 또는 제안된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 (2) (3)항은 집행위원회가
 - (a) 트러스트의 승인을 요구하는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 (b) 제안을 개발하는 것과 연계된, 또는 제안에 대한 트러스트의 평가를 알릴 목적으로 적절한 실험을 착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그런 상황에서, (4)항 및 (5)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다음 한 경우에 해당할 때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 (a) 집행위원회가 트러스트에 승인을 신청한 후, 또는
 - (b) 트러스트가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한 후
- (4) 트러스트가 공공가치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집행위원회는 트러스트의 승인 하에 실험을 위해 채택되고 공표된 규약의 조건을 따라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5) 규약은

- (a) 칙허장 및 본 협정의 보다 일반적인 조항의 효력에 의하여 영국 내 공공서비스에 잠정적인 또는 제안된 변경을 추진(트러스트의 승인이 필요함)하는 세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b) (i) 그런 규약 또는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승인된 실험, 그리고
(ii) (4)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실험이 주어진 승인의 진정한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규모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요건을 정해야 한다.

(6) 본 조항에서, ‘실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수정하고, 또는 수정하지 않은 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착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신규 서비스와 관련된 문화부장관의 역할

(1)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제안은 문화부장관에 의한 절차상의 거부권에 종속한다.

(2) BBC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트러스트는

- (a) 문화부장관에게 제안을 통지해야 하고
- (b) 문화부장관이 절차상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통보받아야 한다.

(3) 문화부장관이 거부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는 제안의 현실적인 실태에 관여하지 않고 트러스트가 칙허장과 본 협정의 요건을 따라 적절한 과정을 밟아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결정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만을 고려한다.

(4) 본 조항의 취지상, ‘신규 서비스의 도입’은 트러스트가 기존 면허의 개정보다는 신규 서비스 면허에 의해 허가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전환

34. BBC와 디지털전환

(1) 본 조항 및 후속 조항들은 영국 내에서의 텔레비전 서비스를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본 협정에서는 ‘디지털전환’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BBC에 의무를 부과한다.

- (2) 이들 조항의 취지상, BBC의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는
- (a) BBC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11조 (2)항의 목록에 포함된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 (b) BBC가 제공하며, 영국 전역의 수용자를 위해 마련되거나(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에 약간 차이가 두거나 두지 않는) 주로 영국 내 특정 지역의 수용자를 위해 마련된 여타의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한다.
- (3) 이들 조항의 취지상, BBC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아날로그 형태로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는(같은 기간에 디지털 형태로 방송되는 것과 관계없이) BBC의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이다.
- (4) BBC는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a) 디지털 형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35조에 정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 (b) 제36조에 정한대로 디지털전환 일자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를 아날로그 지상파로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5) 본 조항과 제35조, 그리고 제36조에서, ‘디지털전환 일자’는
- (a)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맨 섬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31일, 또는 문화부 장관이 BBC에 대한 명령에서 정한 다른 날을 의미하고
 - (b) 채널 제도(또는 그 중의 한 섬)와 관련하여 문화부 장관이 정한 날을 의미한다.

35. 디지털전환과 BBC의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

- (1) 본 협정의 유효기간에, BBC는 디지털전환 일자까지 영국의 가구에서 지상파를 통해(즉, TV 안테나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를 아날로그 형태로 수신할 수 있는 만큼 지상파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도 BBC의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1)항의 취지상, 어떤 가구가 BBC의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가구가 해당서비스를 보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다.

- (3) BBC는 (1)항에 기술된 내용이 문화부장관이 승인한 커버리지 계획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커버리지 계획은
 - (a) 특별히, BBC가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를 아날로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대신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일정과, 영국의 각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순서와 날짜를 명기해야 하고,
 - (b)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위해 사용할 송신기의 소재, 출력, 송출 유형과 주파수 대역을 명기할 수 있고,
 - (c) BBC가 지상파를 통해 주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의 지리적 위치 또는 그런 곳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으며,
 - (d) 아날로그 지상파로 계속 제공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4) 문화부장관은 커버리지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Ofcom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문화부장관은 (4)항에 의거하여 승인한 커버리지 계획을 명령을 통해 BBC가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에 앞서 BBC 및 Ofcom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6. 디지털전환 일자까지의 아날로그 방송

- (1) BBC는 만약
 - (a) 제35조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커버리지 계획에 규정되어 있거나
 - (b) BBC 및 Ofcom의 의견청취 후 문화부장관이 명령을 내린 경우에 아날로그 지상파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 (2) 그러나 문화부장관은
 - (a) 디지털전환 일자이후의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거나
 - (b) 커버리지 계획의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인 경우에 (1)(b)항에 의거하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 (3) 커버리지 계획 또는 (1)(b)항에 의거한 명령은
 - (a) BBC로 하여금 아날로그 형태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계속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 (b)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다룰 수 있다.

- (4) 어떤 아날로그 텔레비전 서비스가 아날로그 지상파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아날로그 버전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 (a) 디지털 버전에 포함된 것과 동일해야 하고
 - (b) 디지털 버전이 방송되는 시간과 같은 때에 방송되어야 한다.

37. 디지털 전환을 위한 BBC의 협조 의무

- (1) BBC는 아래 기관들과 함께 모든 측면에서, 성실하게 디지털 전환의 실행을 위해 합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a) 공영방송사와 1996년 방송법 제1부에 의거하여 텔레비전 멀티플렉스 서비스 면허를 소지한 자
 - (b) 디지털 전환의 기획과 실행에 관련된 영국의 정부 부처
 - (c) ('Digital UK'로도 알려진) SwichCo Limited
 - (d)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문화부장관이 BBC에 통지한 사람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BBC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본 협정에 포함하는 것이 (1)항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38.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의 제공

- (1) BBC는 국내 공공텔레비전 서비스를 아날로그 형태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 (a) 디지털 전환의 성격과 결과(국내 공공텔레비전 서비스를 계속 수신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을 포함하여), 추진의 이유, 추진 일정을 알리고
 - (b) BBC가 그들이 시청하고 있는 국내 공공텔레비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에서 아날로그 형태로 방송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그 예정일('지역의 전환일')을 적어도 2년 전에 알리며
 - (c) 지역 전환일까지의 9개월 동안 디지털 전환 이후의 수신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집행위원회 또는 트러스트가 보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 검토, 수정해야 한다.

39. 대상을 선정하여 돕는 계획

- (1) BBC는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디지털전환 이후 국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를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문화부장관과 합의한 계획(본 협정의 체결 후에 또는 체결을 예상하고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을 따라야 한다. 본 조항에서 ‘일정한’은 그 계획에서 조건으로 정한대로라는 의미이다.
- (2)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은 그 속에 포함된 수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수정될 수 있다.
- (3) 본 조항의 취지를 위해 BBC가 하는 일은
 - (a) 서비스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고
 - (b) 본 협정의 취지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으며
 - (c) 2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0. SwitchCo Limited에 대한 재정 출연

BBC는 SwitchCo Limited를 설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즉각 출연해야 한다.

41. 연차 진척보고서

트러스트는 본 협정의 제24조부터 제40조까지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BBC가 이룬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대역

42. 트러스트의 일반 임무

- (1) BBC 또는 그 계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트러스트의 임무이다.

(2) 문화부장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 (a) 영국의 공공서비스방송을 위하여, 또는
- (b) 영국의 국제적 의무를 따라서

BBC의 통제 하에 있는 텔레비전 멀티플렉스 서비스(1996년 방송법 제1부에서의 의미 안에서)의 일부 주파수를 공공서비스 방송사에게 양도하도록 BBC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준수사항

43. 내용물 기준

(1) 트러스트는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내용물이 적절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정한 지침을 승인해야 한다.

(2) 아래 기술된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이 (1)항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44.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1) BBC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생산물에서 그것이 정확하고 불편부당하게 다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2)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리즈 프로그램은 총괄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영국 내 공공서비스는 시사문제나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BBC,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밝히는 방송과 온라인서비스 이외에 다른 생산물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4) (3)항은

- (a) 상·하원의 의사(議事),
- (b)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또는 북아일랜드 의회의 의사, 또는
- (c) 지방 당국의 의사, 둘 이상의 지방 당국이 구성한 위원회를 다루는 생산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트러스트는

- (a) (1)~(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규약을 입안하고 때때로 검토해야 하며
 - (b) 그 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6) 규약의 세부 규정들은 특별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8항에 언급한) ‘관련 생산물’에 대한 정의 가운데 (b)항에 속하는 주요 사항들 및 총괄적으로 간주되는 관련 생산물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 BBC가 유지해야 할 불편부당성
 - (b) (2)항의 취지에서 시리즈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정할 필요성
- (7) 그 규정들은, 덧붙여, 트러스트가 아래 사항들에 대해 적정하다고 보는 범위를 나타내야 하며,
- (a)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온당한 불편부당성의 기준
 - (b) 상세한 서술을 담은 프로그램에서 온당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 (c)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서비스의 일부로서 포함되고 그것이 (1)항의 취지상 그 서비스 전체적으로 온당한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 및 앞서 그 서비스에 포함되었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간
 - (d) 시리즈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 (i)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그 시리즈를 이루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하고, 또는
 - (ii)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시리즈 전체적으로 온당한 불편부당성을 달성하는, 또는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별히, 온당한 불편부당성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 (8) 본 조항의 취지상 - ‘관련 생산물’은
- (a) 보도물, 또는
 - (b) 공공정책, 정치적 논의, 산업적 논의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영국 내 공공 서비스의 생산물을 의미하고,
- ‘프로그램’은, (7)(c)항과 (d)항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생산물의 아이템을 포함하며, ‘시리즈 프로그램’은, (7)(d)항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생산물의 아이템을 포함한다.

45. 공정성 규범

(1) BBC는

- (a)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또
- (b) 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정성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정성 규범’은 1996년 방송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현재 실시중인 규약을 의미한다.

46. 프로그램 규범 기준

(1) BBC는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프로그램 규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관련 프로그램 규범 기준’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319조에 의거하여 설정된 기준을 의미하는데-

- (a) 동 조항의 (2)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들을 정하고 있다.
 - (i) (a)항(18세 미만인 청소년의 보호)
 - (ii) (b)항(범죄 또는 무질서를 고무할 수 있는 내용의 제거)
 - (iii) (e)항(종교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책임성)
 - (iv) (f)항(저속하고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공중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의 적용)
 - (v) (l)항(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법 사용의 억제, 또는 시청자 및 청취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거나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이용하는 기법 사용의 억제)
- (b) 이 기준은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47.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1) 트러스트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다음의 요건들을

- (a) BBC One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전체적으로 간격을 두고 뉴스 프로그램이 방송되도록
- (b) 매년, BBC One에 뉴스 프로그램이 트러스트가 적절하다고 보는 시간만큼 편성 하도록
- (c) BBC One의 뉴스 프로그램이 트러스트가 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시청시간 대와 여타 시간에 분산 편성되도록

- (d) 매년, BBC One과 BBC Two를 통틀어 시사 프로그램이 트러스트가 적절하다고 보는 시간만큼 편성되도록
 - (e) BBC One과 BBC Two를 통틀어 시사 프로그램이 트러스트가 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시청시간대와 여타 시간에 분산 편성되도록 집행위원회에 부과해야 한다.
- (2) (1)항에 의거한 요건을 부과하기 전에, 트러스트는 그 요건의 안에 관한 Ofcom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참작해야 한다.
- (3) (4)항 및 (5)항에 따라, 트러스트는, 먼저 Ofcom의 동의를 받지 않고,
- (a) BBC One에 연간 편성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시간
 - (b) BBC One의 주시청시간대에 연간 편성되는 뉴스 프로그램의 시간
 - (c) BBC One과 BBC Two를 통틀어 연간 편성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시간
 - (d) BBC One과 BBC Two를 통틀어 주시청시간대에 연간 편성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시간
- 각각이 2002년 해당 범주의 편성 시간보다 적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 (4) (3)항의 (a)~(d)항에 기술된 각 범주의 2002년 편성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에 합의해야 하고 이 숫자는 (5)항에 따라 (3)항의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
- (5) 본 조항의 취지상 ‘년’의 합의된 의미는 2002년 한해이므로, 이보다 짧거나 긴 해인 경우에 (4)항에 의거하여 합의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6) 본 조항의 취지상-
- ‘합의된’은 92조에 따라 합의된 것을 의미하고,
 - ‘시사’의 의미는 합의되어야 하고,
 - ‘뉴스’의 의미는 합의되어야 하고,
 - ‘주시청시간대’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의 주시청시간대라고 합의된, 또는 합의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 ‘년’의 의미는 합의되어야 한다.

48. 정당정치 방송

- (1) BBC는,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정당정치 방송과 선거캠페인 방송을 포함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 (a)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정당정치 방송과 선거 캠페인 방송을 포함해야 할지, 그리고
 - (b) 정당정치 방송과 선거캠페인 방송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원칙과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 (3) 트러스트는, 특히 2000년 정당·선거·국민투표법 제37조 및 제127조에 의해 허용되는 한(등록된 정당과 관선 조직만이 정당 정치 프로그램 또는 국민투표 캠페인 프로그램을 만들 자격이 있음),
 - (a) 정당정치 프로그램이 대변하는 정당, 그리고
 - (b) 정당정치 프로그램과 선거캠페인 프로그램의 길이와 방송 빈도를 정해야 한다.
- (4) 본 조항에서, ‘선거캠페인 프로그램’은 2000년 정당·선거·국민투표법 제 127조에 기술된 의미를 갖는다.

49. 오리지널 제작물의 편성 쿼터

- (1)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의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BBC는
 - (a) 매년 해당 서비스의 전체 프로그램 방송시간에서 오리지널 제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볼 만큼 편성되도록, 그리고
 - (b)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볼 만큼 오리지널 제작물이 주시청시간대와 여타 시간에 분산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 합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 (2) 상기 (1)항의 취지상, 양 당사자에 의해 정해지는 비율은
 - (a) 서비스별로, 해당 서비스가 높은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적절하다고 양 당사자가 보는 비율이고
 - (b) (1)(b)항의 취지상, 주시청시간대에 적용하는 비율과 여타 시간에 적용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이다.

(3)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a)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기재가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 (b) 어떤 프로그램이 (a)항에 언급된 상세히 기재한 프로그램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Ofcom이 마련하고 공표한, 또 개정한 지침을 참작해야 한다.

(4) 본 조항은 ‘합의’, ‘양 당사자’,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92조에 따라 해석되고, 효력을 가져야 한다.

(5) 본 조항의 취지상-

‘오리지널 제작물’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 전체적으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 278조 (6)항(허가를 받는 공공서비스 채널에 적용되는 오리지널 제작물의 편성 쿼터)에 의거한 명령에 상술된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 (a) 그와 같은 명령이 상이한 경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한다면 어떤 경우가 본 조항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 (b) 그와 같은 명령이 본 조항의 취지상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을 만든다면 취지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합의해야 한다.

‘주시청시간대’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의 주 시청시간으로 합의된, 또는 주시청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년’의 의미는 합의되어야 한다.

50. 국가 및 지역을 위한 편성

(1) 트러스트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건을 집행위원회에 부과해야 한다.

- (a) 관련서비스(Relevant Services)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적절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서(BBC One의 경우에 지역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 편성되도록
- (b)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는 지역 프로그램이 높은 품질을 갖도록
- (c)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는 지역 프로그램이 적절한 비율로 제작되도록
- (d) BBC One의 지역 뉴스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 동안, 특별히 주시청시간대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편성되도록
- (e) (i)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는
 - (ii) BBC One에 포함되는 지역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 (i)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ii) 주시청시간대 바로 앞이나 다음에 방송되는 지역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간 편성되도록

- (2) (1)항에 의거한 요건을 부과하기에 앞서, 트러스트는 해당 요건과 관련된 제안에 대한 Ofcom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제안에 대한 Ofcom의 평가를 참작해야 한다.
- (3) (4)항 및 (5)항에 따라, 트러스트는, 먼저 Ofcom의 동의를 받지 않고,
 (a) 관련 서비스에 연간 편성되는 지역 프로그램의 시간
 (b) 지역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관련 서비스에 편성되는 비율
 (c) BBC One에 연간 편성되는 지역 뉴스프로그램의 시간
 (d) (1)(e)항에 언급된 편성 시간
 각각이 2002년 해당 범주의 편성 시간보다 적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
- (4) (3)항의 (a)~(d)항에 기술된 각 범주의 2002년 편성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에 합의해야 하고 이 숫자는 (5)항에 따라 (3)항의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
- (5) 본 조항의 취지상 ‘년’의 합의된 의미는 2002년 한해이므로, 이보다 짧거나 긴 해인 경우에 (4)항에 의거하여 합의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 (6) 본 조항의 취지상, 지역 프로그램은
 (a) 다음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i) 북아일랜드
 (ii) 스코틀랜드
 (iii) 웨일스
 (iv) 텔레비전 서비스의 내용이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잉글랜드의 각 지역
 (b)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차이를 낳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7) 본 조항의 취지상-
 ‘합의’는 제92조와 일치하는 합의를 의미하고
 ‘특정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든, 함께, 관련서비스(Relevant Service)를 이루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주시청시간대’는, 해당 서비스의 주시청시간대라고 합의된, 또는 합의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지역 프로그램’은, BBC One 또는 관련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적 관심사를 다루는 BBC One 또는 관련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지역 뉴스프로그램’도 이와 상응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관련서비스’는 BBC One과 BBC Two 각각 또는 둘 모두를 의미하고,

‘년’의 의미는 합의되어야 한다.

51. 국가 및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1) BBC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한다.

- (a) 영국의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 가운데 M25 지역 밖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양당사자가 보기에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 (b) 25 지역 밖에서 제작되는 영국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양 당사자가 보기에 적당한 범주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 (c) BBC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비용 중 적절한 비율의 제작비가 M25 지역 밖의 여러 제작센터에서 쓰이도록
- (d) 상기 제작센터들에서 양 당사자가 보기에 적절한 범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2) 해당 프로그램이나 그에 대한 제작비가 일정한 비율을 이루지 못하면 본 조항의 취지상 양 당사자는 그 비율을 적정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3) 본 조항은 ‘합의’, ‘양 당사자’,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92조에 따라 해석되고, 효력을 가져야 한다.

(4) 본 조항의 취지상-

‘제작비’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i) 그 프로그램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나 소요 경비, 또는
 - (ii) 그 프로그램의 제작발주, 취득 또는 방송권 획득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 ‘M25 지역’은 런던의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경계로 안쪽의 대(大)런던(Greater London) 지역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공공텔레비전서비스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a) 북아일랜드,

- (b) 스코틀랜드,
- (c) 웨일스,
- (d) 잉글랜드의 각 지역의 어느 한 지역에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52. 외주제작 쿼터

- (1) BBC는 매년 BBC One에 포함되는 적격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 가운데 관련 비율만큼을 다양하고 폭넓은 외주제작에 할당해야 한다.
- (2) BBC는 매년 BBC Two에 포함되는 적격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 가운데 관련 비율만큼을 다양하고 폭넓은 외주제작에 할당해야 한다.
- (3) BBC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Ofcom이 내리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a) (1)항 및 (2)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다음 해 또는 다음 몇 년으로 이월하는 것
 - (b) 그로 인해 다음해 또는 다음 몇 년간 적용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
- (4) 관련 법정 의무에 더하여 (1)항 및 (2)항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커뮤니케이션법 일정 12의 1(8)항에 의거하여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5) 본 조항의 취지상-
 - ‘법’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의미하고,
 - ‘적격 프로그램’은, BBC One 또는 BBC Two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법의 일정12 제1항에 언급된 BBC One 또는 BBC Two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고,
 - ‘폭’은,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양식과 취득비용의 측면에서 외주제작의 폭을 의미하고,
 - ‘적절한 비율’은 커뮤니케이션법의 일정12 제1항에 기술된 비율을 의미하고,
 - ‘적절한 법정 의무’는 커뮤니케이션법의 일정12 제1항 (1)항 또는 (4)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의미하고,
 - ‘년’의 의미는 제92조에 따라 함의되어야 한다.

53. 외주제작을 위해 유보하는 프로그램

- (1) BBC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의 제1항에 의거한 의무(외주제작 쿼터)를 BBC가 매년 준수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 (2) 경쟁과정(아래 기술된 WOCC를 거치거나 다른 방식으로)을 거치지 않아 외주제작으로 인정되지 않을 프로그램은 본 조항이 부과한 요건을 채우는데 포함될 수 없다.
- (3) BBC는 (1)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을 위해 유보할 수 있다.

54. 창의적 경쟁의 창(WOCC)

- (1) BBC는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다음의 한 형태로 제작되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a) 외주제작 프로그램
 - (b) 창의적 경쟁의 창(WOCC)을 통한 프로그램
- (2) BBC가
 - (a) 자체 제작 설비와 외부 프로듀서(독립제작사 프로듀서이든 아니든), 공정하고 투명한 바탕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권리에 대해 입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고
 - (b) 그런 입찰을 공정하고 투명한 바탕에서 평가했다면 누가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WOCC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 (3) 기회가 부여된 당시 프로그램의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예를 들면, 그 기회가 프로그램의 특정 양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관계있고 어떤 양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할지 결정하는데 있어 입찰자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경우) (2)(a)항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4) 본 조항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폭’은 프로그램의 양식과 취득비용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폭을 의미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하여,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의 제1항(외주제작 쿼

터)의 취지에서 해당 서비스의 ‘적격’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전체 방송시간’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를 통틀어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된 전체 시간을 의미한다.

55. 비(非) 전국용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경쟁 기회

트러스트는 제54조의 의미 안에서(제54조 (4)항 참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BBC 프로듀서와 외부 프로듀서간 적절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56. 자체 제작을 위해 유보하는 프로그램

(1) BBC는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50%를 BBC가 자체의 제작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1)항에서, ‘폭’과 ‘전체 방송시간’은 제54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57.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운영을 점검할 의무

(1) 트러스트는, 적어도 2년마다,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운영을 점검해야 한다.

(2) 점검에 있어, 트러스트는 BBC가 상기 조항들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BBC가 상기 조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수정할 바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트러스트는

(a) WOCC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적절히 폭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b) WOCC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에 입찰한 외부 프로듀서의 지리적 소재와 규모가 경쟁과 정의 공정성과 투명함을 시사 하는지 고찰해야 한다.

58.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1) 트러스트는

(a) (i) 영국 내 공공서비스인 라디오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ii) 영국 내 공공서비스인 온라인서비스의 일부로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적절한 비율이 BBC와 무관한 프로듀서가 만든 프로그램 또는 자료를

구성하도록

- (b)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그와 같은 프로그램과 자료가 트러스트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폭과 다양성을 갖추도록 트러스트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요건을 집행위원회에 부과해야 한다.
- (2) (1)항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자료의 적절한 비율을 정하고, 또 프로그램의 적절한 폭과 다양성을 정하는데 있어서 트러스트는
- (a) 온라인서비스에 포함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에 있어 적당한 경쟁을 독려하고
 - (b) BBC가 그런 프로그램과 자료를 대규모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바람직함(BBC 온라인서비스의 청취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을 고려해야 한다.
- (3) 본 조항에서 ‘폭’은 프로그램 또는 자료의 양식 및 취득비용의 측면에서의 범위를 의미한다.

59.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연관된 규정

- (1) 출발점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BBC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본 조항에서는 ‘법’이라 칭함) 제303조에 의거하여 Ofcom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다른 방송사들에 적용되지만, 본 조항으로 인해 BBC의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에도 적용된다.
- (2) 그렇지만 우리는 상기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본 조항의 나머지는 그런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정사항은 법의 세부사항, 특히 제303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수정사항은, 본 조항에 의해, 상기 규정을 BBC의 공공텔레비전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만 적용된다.
- (3) 상기 규정은, 일반적으로, 채널4의 텔레비전서비스 제공((4)항 및 (7)항 참조)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BBC의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 각각의 제공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 (4) 상기 규정은 채널4⁵⁾의 익스클루디드 프로그램 대신에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합

의된 프로그램을 익스클루디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가진다. ‘익스클루디드 프로그램’은 법 제303조 (7)항에 의거한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묘사방법이다(익스클루디드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법 제303조 (4)~(9)항을 참조할 것).

- (5) 제외 프로그램에 합의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특별히 법 제308조 (8)항의 (a)~(f)항에 명시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 (6) 합의될 수 있는 익스클루전은
- (a) 다른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묘사방법을 포함할 수 있고
 - (b)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위 (5)항에 언급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영국 내 공공 텔레비전 서비스가 특별한 경우라면, 그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 (7) 상기 규정은 (8)항에 따라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하여 채널4에 적용할 수 있는 일자 대신에 관련 일자를 정하는 효력을 갖는다(‘관련 일자’의 개념은, 법 제303조에 언급된, 305조에 정의되어 있다).
- (8) 관련 일자는-
- (a) BBC One 과 BBC Two의 경우에 1997년 1월 1일이고
 - (b) 여타 경우에, (본 협정의 체결 전후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가 시작했거나 시작하는 날이다.
- (9) 양 당사자는 BBC의 어떤 서비스가 (8)(b)항의 취지에서 새로운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제공해온 서비스의 계속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 (10)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항에 합의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그들이 보기에 법 303조 (1)(a)(i)항, (ii)항, 또는 (iii)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1) BBC는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을 BBC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

5) Channel 4는 영국의 지상파 텔레비전으로 1982년부터 송출을 시작했다.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IBA)의 자회사로 출발했지만 1990년 IBA가 폐지된 다음부터 공영방송(Channel Four Corporation)이 되었다.

으로 공표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 (a) 청각장애자, 그리고
- (b) 시각장애자가 접근할 있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본 조항은 ‘합의’, ‘양 당사자’,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92조에 따라 해석되고, 효력을 가져야 한다.

(13) 본 조항에서,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연관된 규정 및 법 303조에 대한 언급은 제60조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60. 제59조의 목표대상을 수정할 권한

(1)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본 조항에서 ‘법’이라 칭함) 제306조는 문화부장관이 일정한 방식으로 법 303조를 수정하는 명령을 내리는 틀을 설정한다. 그런 명령은 제 59조의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갖지 않고, 제303조에 의거하여 Ofcom이 개정하는 규정도 그런 명령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뿐 제59조의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대신, 본 조항은 문화부장관이 특별히 59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령을 내리는 메커니즘을 정한다.

(3) 본 조항에 의거한 명령은 제59조에 따라 BBC가 준수해야 할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연관된) 규정이 제59조의 목적을 위해 효력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의거한 명령 속에 명시되는 수정사항은 법 306조에 의거한 명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법 제303조에 대한 수정사항과 부합한다.

(5) 본 조항에 의거한 명령은-

- (a) 상이한 서비스를 위해 상이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 (b) 59조의 취지상 이전부터 유효한 준수사항을 위한 제도를 포함할 수 있고
- (c) 문화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차적이고, 보완적이며, 과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6) 본 조항에 의거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문화부장관은 BBC와 Ofcom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문화부장관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내려진 명령을 BBC와 Ofcom에 통지해야 한다.

61. 프로그램 발주에 관한 규정

- (1) 트러스트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BBC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프로그램을 발주할 때 적용하는 실행규정을 작성하도록, 또 때때로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BBC는
 - (a) 언제나 본 조항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행규정에 따라야 하고
 - (b)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Ofcom이 낸 개정지침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3) 본 조항에 의거하여 실시중인 규정은 Ofcom이 낸 지침에 기술된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프로그램 발주와 관련한 독립제작사와의 협상 및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일정
 - (b) 독립제작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주한 경우 여러 범주의 방송권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권리에 관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
 - (c) 권리의 범주에 따라 달리 지불되는 금액의 투명성
 - (d) 상기 권리의 유효기간에 관해 만족스러운 제도
 - (e) 상기 제도가 규정과 일치하게 채택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
 - (f) 규정의 적용을 모니터링 하는 요건과 Ofcom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요건을 포함 하는 절차
 - (g)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Ofcom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독립적인 기관의 중재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
- (4) 트러스트는 본 조항에 따라 규정의 작성 및 개정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Ofcom이 낸 지침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a) 규정을 작성하는 시기 및 규정을 개정할 목적으로 점검하는 시기
 - (b) 규정을 작성하거나 개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자문

- (c) 모든 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의 공표
- (5) 규정 또는 규정의 개정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합의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 (6) 본 조항에서, ‘합의된’은 92조와 일치하게 합의된 것을 의미한다.
- (7) Ofcom은
 - (a)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침을 내야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으며
 - (b) 실시중인 목적을 위하여 항상 지침을 두도록 해야 하고
 - (c) 지침을 내거나 수정하기 전에, 허가받은 공공서비스채널의 제공자들, 독립제작사를 만든 사람들(또는 Ofcom이 판단하기에 독립제작사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BBC와 S4C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d)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침 또는 수정된 지침을 공표해야 한다.
- (8)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Ofcom이 내는 지침은 일반적인 지침이어야 하고 지침과 관련된 합의에 포함되는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 (9) 본 조항의 취지상-
‘독립 제작사’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 제1항에 언급된 의미를 가지고
‘허가받은 공공서비스채널’은 법 3부에 언급된 의미를 가진다. .

62. 기록물의 보존 및 제작

- (1) BBC는
 - (a)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에 포함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녹화물을 합의된 형태로, 합의된 기간 보관해야 하고
 - (b) 심사 또는 복사를 위해 상기 녹화물을 제출하라는 Ofcom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 (c)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대본 또는 원고를 제출하라는 Ofcom의 요구에 할 수 있는 한 응해야 한다.
- (2) (1)항의 목적을 위해 합의된 기간은
 - (a)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의 경우, 90일을 넘지 않고
 - (b) 라디오 서비스의 경우, 42일을 넘지 않는다.

(3) 본 조항에서, '합의된'은 제92조에 따라 합의된 것을 의미한다.

63. 국제적 준수사항

- (1) BBC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Ofcom이 때때로 통지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Ofcom에 의해 통지되는 요건은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의 국제적 의무가 준수되도록 하는데 Ofcom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건이다.
- (3) 상기 목적을 위하여, 영국의 국제적 의무는 만약 그것이 본 조항의 취지를 위하여 문화부장관에 의해 Ofcom에 통보된 것이면 타당하다.
- (4) Ofcom은, 본 조항에 의거하여 BBC에 어떤 요건을 통지하기 전에, BBC가 그 요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정당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월드서비스

64. 월드서비스의 제공

- (1) BBC는 월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 월드서비스는 주로 영국 밖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방송 또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배급, 여타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3) 월드서비스는
 - (a) 영국 밖의 이용자들에게 외무부장관이 승인한 언어들로 제공되어야 하고
 - (b) 외무부장관과 합의한 목적, 우선과제, 목표와 일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4) BBC는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협력해야 하며, BBC가 공익을 위하여 월드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 (a) 국제 문제
 - (b) 영국 밖의 국가들의 사정
 - (c) 국제관계에 관한 영국정부의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 (5) BBC는 월드서비스가 편집, 프로그램 내용, 품질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트러스트가 월드서비스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보는 만큼 영국 내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정한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 (6) BBC는
 - (a) 국제 및 국내 문제를 정확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서비스의 제공
 - (b) 상기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영국의 견해 표명
 - (c) 영국의 생활, 제도,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묘사 등을 포함하여 월드서비스의 일반적인 장기적 목표에 대해 외무부장관과 합의해야 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7) BBC는 월드서비스의 성과를 적정한 만큼 세세하게 연차보고서(칙허장 제45조 참조)와 다른 적당한 문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BBC는 월드서비스가 합의된 목적, 우선과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외무부장관과 합의한 방식으로).
- (8) BBC는 선별된 월드서비스의 생산물을 영국 내에서 재방송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와 경쟁영향

65. 공정거래 정책 성명

- (1) 트러스트는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성명을 채택하기 전에 공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책 성명의 채택 의무는 칙허장 제24(2)(k)항에 의해 부과된다).
- (2) 공정거래 정책은 상업적 서비스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BBC 또는 BBC의 자회사가 관여된 모든 거래행위에 적용된다.

- (3) 트러스트가 정책 성명을 채택할 때는 그것을 공표해야 한다.
- (4) 트러스트는 정책 성명을 계속 검토하고 공적 자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점검을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 (5) 정책 성명은 (트러스트의 시각에서) BBC의 법적 요건인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가능한 한) 구별해야 한다.

66. 경쟁영향

- (1) 트러스트는 BBC의 활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 성명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칙허장 제23(e)항은 트러스트가 그런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책 성명이 얼마나 상세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다(제67조 참조).
- (2) 규정을 정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 (a) 트러스트가 관련된다고 보는 만큼, BBC아닌 방송사에 적용할 목적으로 Ofcom이 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 (b) 트러스트의 규정이 담당할 문제에 대하여 Ofcom이 표명하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3) 트러스트의 규정은 Ofcom이 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 규정으로 커버되지 않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그리고, 물론, Ofcom 규정을 '고려할' 의무가 Ofcom 규정이 적절한 경우에도 트러스트가 반드시 선례를 따라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4) 트러스트는 규정 초안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트러스트는 규정을 계속 검토하고 공적 자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점검을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67. 공정거래 및 경쟁영향에 관한 지침

- (1) 집행위원회는

- (a) 집행위원회 및 관련 BBC 자회사의 직무와 관계있는 한 공정거래에 관한 트러스트의 정책 성명(제65조 참조)의 실제 영향, 그리고
- (b) 경쟁 영향에 관한 트러스트의 정책 성명과 트러스트의 경쟁 영향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트러스트가 승인한 초안만을 지침으로 채택할 수 있다.

BBC의 상업서비스

68. '핵심' BBC와 조직상 분리된 상업서비스

- (1) BBC는 법인으로서 상업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 (2) 상업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69. 상업서비스의 기준

- (1) (2)항에 따라, BBC의 모든 상업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 BBC의 공공서비스 활동((3)항에서 정의되는 대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 (b) 상업서비스는 상업상 효율적이어야 하고
 - (c) BBC에 대한 좋은 평판, 또는 BBC 브랜드의 가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되고
 - (d) 제67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중인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특별히 시장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 (2) 상업서비스는 BBC 또는 BBC의 상업부문에 속하는 자회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관과 공동사업 또는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휴에 참여하는 것인데('상업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제101조 이하 참조), BBC는
 - (a) 그 참여가 (1)항을 준수하도록
 - (b) 공동사업 또는 제휴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활동이 (1)(a)~(d)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상업서비스는 만일
 - (a) 공적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면(68조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틀이 필요하지만)

- (b) 그것이 재정적 조건이 아닌 다른 면에서 BBC가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계있다면 BBC의 공적 목표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 (4) 상업서비스는 그것이 단지 자체적으로 (3)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BBC의 공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그런 활동들은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활동들에 종속하거나 부수적인, 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이어야 한다.
- (5) 이들 기준의 적용 여부는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다. 트러스트는 BBC의 상업서비스가 이들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게 하는 책임을 BBC의 집행위원회가 지도록 해야 한다.

70. 여타 활동에 대한 제69조의 적용

- (1) 본 조항은 상업서비스가 아닌 활동들 또는 제101조 (2)항에서 상업서비스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활동들에 적용된다.
- (2) 상기 활동들은 제69조에 기술된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활동들에 그런 원칙들을 적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71. 상업서비스의 승인

- (1) 트러스트는 그 규칙 안에 BBC 상업서비스의 변화(BBC 상업부문의 조직 변화를 포함하여)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 (2) 그런 변화는 사전 승인을 위해 트러스트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상기 규정은 회부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지만 각별히 칙허장에 기술된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 간 관계의 일반적 성격과 어울려야 한다.
- (3) 상기 규정은 트러스트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승인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트러스트가 밟아야 하는 절차, 제69조에 기술된 내용을 비롯한 적용 기

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인 등이 포함된다.

- (4) 이들 규정의 적용 여부는 트러스트의 소관사항이다. 트러스트는 BBC의 상업서비스가 이들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게 하는 책임을 BBC의 집행위원회가 지도록 해야 한다.

72. BBC의 상업 전략

BBC의 상업 전략은 집행위원회가 채택하고 트러스트가 승인해야 한다.

73. 집행위원회의 역할

- (1) 집행위원회는 BBC 상업부문의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트러스트의 권한에 의거하여, 상업부문을 구성하는 자회사들과 관련한 BBC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특별히 트러스트의 승인을 받은 상업 전략과 트러스트의 여타 권한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는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 (3) 집행위원회는 BBC 상업부문의 사무가
 - (a) 칙허장, 본 협정 또는 여타 기본협정, 일반 법률, 또
 - (b) 높은 수준의 재정 관리 및 감독(위기관리를 포함하여) 등의 요건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4. 상업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 (1) 집행위원회는 매년 BBC의 상업서비스와 관련된 보고서가 출판되도록 해야 한다.
- (2) 보고서는
 - (a) 상세해야 하고
 - (b) BBC의 상업서비스 속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고
 - (c) 제69조에 기술된 기준의 준수여부를 다루어야 하고

- (d) 사업의 여러 형태에 관한 정보를 분류해서 답아야 하고
- (e) 보고서와 관련하여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회사들의 모범사례를 따라야 한다.

BBC의 재원

75. 수신료 재원과 정부 교부금

- (1) 문화부장관은 의회가 규정한 금액에서 수신료 순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문화부장관이,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그보다 적은 금액을 BBC에 지급한다.
- (2) BBC는 (1)항에 의거하여 지급된 금액을
 - (a) 월드서비스, 상업 서비스, (7)항에 언급된 서비스, 주로 영국 밖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 (b) 문화부장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광고, 가입료, 협찬, 프로그램 유료 시청제, 또는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통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온라인 서비스 외에 BBC가 수행하는 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2)(a)항의 취지상, 월드서비스를 영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은 월드서비스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 (4) (2)(b)항의 취지상-
 - (a) 어떤 활동이 상기 조항에 기술된 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일한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 동일한 서비스 면허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b) 1990년 방송법 제58조 (1)항에 의거한 BBC의 의무를 준수하는 활동은 동일 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 (5) (2)(b)항에서, ‘다른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 경우에서 나온 자금의 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상업 서비스의 운영
 - (b) 개방 대학
 - (c) 공동제작 협정: 즉, BBC 생산물이 한 사람 이상의 제3자와 협력하여 만들어지거나, 발주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BBC에 의해 취득되도록 하는, 그리고

- 그 재료에 대한 방송권, 출판권 또는 다른 권리와 의 교환으로 자금을 제공받도록 하는 협정
- (e) 경쟁 상금과 트러스트에 의해 승인된 일정 체제의 조건 하에 한 사람 이상의 제3자에 가 만들거나 기금을 조성한 상의 상금
 - (f) 다음의 경우-
 - (i) a. BBC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또는 b. BBC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된 활동, 편의, 또는 이벤트가 그것을 수행, 제공, 또는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담할 목적으로 한 사람 이상의 제3자의 지원에 의해, 또는 그(들)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로부터 나온 자금
 - (ii) 자금의 사용이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트러스트와 문화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정책 성명과 모순되지 않은 경우
- (6) 월드서비스의 목적을 위하여, 외무부장관은 의회가 규정한 금액에서 재무부가 인정하는 만큼의 금액을 매년 BBC에 지불해야 한다.
- (7) BBC가 영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81조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은 그 목적을 위하여 재무부가 인정하는 만큼의 금액을 BBC에 지불해야 한다.
- (8) 본 조항의 (1)항, (6)항, 또는 (7)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관계 장관이 정한 대로 분할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조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9) (1)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문화·매체·스포츠부의 고위 관리가 산정하면 명백한 실수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최종적이다.
- (10) BBC는 문화부장관 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장관에게 (6)항 또는 (7)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된 금액의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하고 관계 장관이 지정하는 때에 제출되어야 한다.
- (11) 본 조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된 금액은 재무부의 동의하에 지불한 장관이 또는 의회가 부여한 조건과 일치하게 BBC에 의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2) 본 조항에서, '수신료 순수입'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365조에 의거하여, 면

허 체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빼고, BBC가 통합펀드(Consolidated Fund)에 낸 금액이다.

- (13) 본 조항에서, ‘협찬’과 ‘가입’은 각각 제76조에 정의한 ‘협찬 자료’와 ‘가입 서비스’와 일치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76. 가입 서비스와 협찬 자료

- (1) BBC는, 관계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a) 그 서비스에 협찬 자료를 포함해서는 안 되고
 (b) 가입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 (2) 본 조항에서-
 ‘관계 장관’은-

- (a) 월드서비스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협찬 자료를 월드서비스에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에 외무부장관을 의미하고
 (b) 여타 경우에 문화부장관을 의미한다.

‘자료’는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콘텐츠의 아이템을 의미하고,

‘관련 비용’은, 자료와 관련하여, 그 자료를 만드는 비용 또는 그 자료가 포함된 서비스를 시청자, 청취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협찬 자료’는 BBC나 개방대학이 아닌 조직 또는 사람, 또는 자료에서 다른 행위자에 의해 제작비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된 자료이다. 그들은 어떤 서비스에 그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그 이름, 상호, 이미지, 활동, 상품을 알리거나 그 밖의 직·간접적인 영리를 얻으려고 한다.

‘가입 서비스’는 BBC(또는 BBC가 지분을 가진 회사, 그 지분을 직접 소유하거나 하나 이상의 타 법인과 공동 소유하거나에 상관없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혜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77. BBC의 재정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트러스트의 의무

칙허장 제23조 (d)항에 의거한 일반 의무의 하나로서 트러스트는 공적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러스트는 BBC의 재정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78. 무료 텔레비전 면허에 대한 보상

- (1) 본 조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365조 (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어느 해든 BBC가 텔레비전 무료 면허를 발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그런 해에, 직업·연금부 장관은 의회가 정한 금액에서 다음 항목의 금액을 재무부가 인정하는 만큼 BBC에 지불해야 한다.
 - (a) 직업·연금부장관이, BBC가 제출한 증빙을 참작하여, 무료 텔레비전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BBC에 지불했을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 (b) 문화부장관과 BBC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BBC의 무료 텔레비전 면허 발부비용
- (3) 본 조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직업·연금부의 고위관리가 산정하면 명백한 실수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최종적이다.
- (4) 본 조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불된 금액은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직업·연금부장관이 부여한 또는 의회가 부여한 조건에 따라 BBC가 사용하고 관리한다.

79. 지불가치 평가

- (1) 트러스트는 75조 (1)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급되는 자금을 BBC가 가치있게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2) 그 목적을 위하여, 트러스트는 정기적으로-
 - (a) 감사원장과 감사 프로그램의 가능한 범위와 그 프로그램의 개별 감사가 감사원 기준에 맞는지를 논의해야 하고
 - (b) (i) 감사원장과 그런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일치를 위한, 그리고 (ii) 감사원장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c) (a)항에 언급된 논의를 고려하여 개별 감사의 대상이 되는 BBC의 활동을 포함하는 감사 프로그램을 정해야 한다.
- (3) (2)(c)항에 의거한 감사 프로그램을 정함에 있어, 트러스트는-
 - (a) 트러스트가 정한 기간, 감사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 (i) 감사원((b)항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에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실적 내용

의 조건에 대해 BBC가 동의하되 감사원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안에 대해 충분한 재량권을 가져야 함), 그리고

- (ii) 다른 적절한 기관들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 (b) 감사의 완결을 위해 일정 기관이 해당 감사에 대해 트러스트에 하는 보고를 전달하게 (a)항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 (c) (b)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고려하고 트러스트의 관점에서 (1)항의 취지상 지불가치를 검토하는데 참작해야 할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 (d) 보고서로 이루어보아 트러스트가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집행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한, 집행위원회가
 - (i) 보고서의 내용, 또는
 - (ii)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트러스트의 평가에 대응하여 할 바를 명백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 (4) 트러스트는 (3)(b)항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제출된 보고서를(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이 작성한),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보고서에 대해 트러스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평가서와 함께 문화부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화부장관은 트러스트의 평가서와 함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본 조항의 취지상 ‘감사원장’은 1866년 감사원법 6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관리를 의미한다.

80. 차입, 담보, 기타

- (1) BBC의 연결채무 순차입금은 문화부장관이 내린 명령에 기입된 금액을 언제든지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BBC 상업부문의 연결채무 순차입금은 언제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a) 문화부장관이 내린 명령에 기입된 금액
 - (b) 상업부문 EBIDTA⁶⁾의 3배 금액
- (3) 부가적인 요건으로서, 상업부문의 차용금에 대한 순수 이자비용은 언제든지 상업부문 EBIDA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임.

- (4) (2)항 및 (3)항 요건의 준수여부를 74조의 취지상 적어도 연 1회 회계연도의 말미에 점검해야 한다.
- (5) (1)~(3)항 요건의 준수여부는 영국에서 통용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 (6) 문화부장관은 (1)항 또는 (2)항의 취지대로 처음 금액을 정한 뒤에, 때때로 명령을 내려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처음 금액보다 적게 정하지는 않는다(이것이 (7)(b)항에 의거한 수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 (7) 문화부장관은, 명령으로,
 - (a) 자본 및 경상지출과 관련하여 BBC 또는 BBC 상업부문에 개별적인 요건을 부과 할 수 있고
 - (b) (2)~(4)항에 명시된 BBC 상업부문에 관한 요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의 유일한 효과는 하나의 한도 대신에 자본 및 경상지출을 고려하여 차입금 개개의 한도를 부과하는 것이다. 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차입금 개개의 한도가 모두 합쳐 단독 한도와 같거나 초과하도록 내려져야 한다.
- (8) 본 조항에 의한 어떤 명령도 그것이 내려진 당시 미불된 차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BBC는 특별히 (9)(a)항에 의거하여 합의된 변제일정을 포함하여 차입 조건에 따라 계속 변제한다).
- (9) BBC는
 - (a)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문화부장관과 합의한 변제 일정에 따라 차입금을 갚기 위한, 또
 - (b) BBC 자산의 대체 또는 갹신을 위한 적절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10) BBC는 월드서비스만을 위하여 부동산, 권리에 따르는 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떤 사항도 월드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BBC나 BBC 자회사가 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권익, 또는 권리를 위한 자금의 차입, 마련 또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11) BBC는 BBC 상업부문의 채무를 보증해서는 안 된다.

- (12) 본 조항에 언급된 ‘BBC’는 상업부분의 부분이 아닌 BBC 자회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월드서비스의 부분을 이루는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 (13) 본 조항에 의거하여 명령을 내리는 문화부장관의 권한은 재무부의 동의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 (14) 본 조항에서-
‘현금수지 및 단기 투자금’은
- (a) 현금수지
 - (b) 펀드투자금
 - (c) 예금증서, A1/P1 등급의 만기가 1년 미만인 신종기업어음이나 정부발행유가증권을 합한 총계이고, ‘연결채무 순차입금’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내용을 합체하여, 총부채에서 현금수지와 단기 투자금을 뺀 금액이고, ‘EBITDA’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차입금에 대한 채무’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부채 및 대차계정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 (d) 차입금
 - (e) 신용대출금
 - (f) 어음, 차용증서, 회사채 등의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
 - (g) 영국에서 통용되는 회계원칙이 자금 대여로 인정할 수 있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 등의 금액
 - (h) 상기 (d)~(g)항에 언급된 항목의 담보 또는 배상을 위한 금액

BBC의 일반적 준수사항

81. 방위 및 비상사태 조치

- (1) 모든 정부부처의 장관은
- (a) BBC에 방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 (b) BBC에 일정 사항이 영상이미지(동화상 또는 정지화상)와 함께 방송 또는 온라인서비스로 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장관은 BBC가 방송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고지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 (1)항 또는 (2)항에 의거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BBC는
 - (a)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 (b) 그 소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며
 - (c) 요청에 맞춰 방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지한다.
- (4) 문화부장관은 서면 명령을 통해 BBC가 특정한 사안 또는 일정한 종류의 사안을 일정 시간 또는 언제라도 방송 또는 전달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 (5) BBC는, 원하는 경우,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또는 명령이 변경되었다거나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82. 전자기 간섭에 대한 조사

BBC는 자체 비용으로 영국 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에너지 간섭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83. 동등한 기회

- (1) 집행위원회는 (2)항에 언급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 (a) 남자와 여자, 또
 - (b) 다양한 민족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2) (1)항에 언급된 사람들은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제공 또는 그 가운데 한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들을 말한다.
- (3) 집행위원회는, 위 사람들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4) 문화부장관은, 명령을 통해, 문화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등한 기회의 다른 형태를 추가함으로써 (1)항을 수정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서-

‘장애인’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민족 구성원’은 1976년 민족관계법(또는, 북아일랜드에서 고용된 사람과 관련하여,
 1997년민족관계(북아일랜드)명령)에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84. 연수

- (1) 집행위원회는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거나 그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BC 직원의 훈련과 재훈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2) 훈련 및 재훈련은
 - (a) BBC가 공적목표를 달성하고 각별히 창의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진작시키는데
 - (b) 영상·음향산업 전반적으로 고도로 숙련된 미디어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데
 - (c) 상기 산업에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3) 집행위원회는 영상·음향산업 전반적으로 연수를 기획, 제공하는데 있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5. 84조와 84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제도에 관한 일반 규정

- (1) 집행위원회는
 - (a) 제83조와 제84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 (b) 그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 (c)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제도의 운영상황과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트러스트에 제출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받고난 후, 제도의 운영상황과 효과에 관한 트러스트의 의견을 공표해야 한다.

86. 기록물보관소

- (1) 집행위원회는 BBC가 방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포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

그램, 인쇄물, 영화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기 조치는

- (a) 모든 기록물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 (b) 공중이 유료 또는 무료로(집행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기록물 보관소를 방문할 수 있고, 보관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상기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그것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BBC는 방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배포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자료를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보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기구에 관련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 판매 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5) 관련 기구가 BBC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BBC는 해당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6) 본 조항에서 '관련 기구'는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75조에 의거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기구를 의미한다.

87. 연구

(1) 집행위원회는 BBC가 공적목표를 달성하고 방송 및 영상음향 부문에서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1)항에 의거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 포럼에서 '열린 기준'(즉, 테크놀로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개방하고 테크놀로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이들 활동은 BBC 내에서, 그리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4) 집행위원회는 BBC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별히)
- (a) BBC의 지적재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가능성, 그리고
 - (b) 새로운 발전을 널리 개방함으로써 수신료납부자와 영국에 전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88. 모니터링 활동

- (1) 정부부처의 장관은 BBC가 일정한 미디어 생산물을 감시하고 녹화하도록, 또 그와 관련하여 다른 서비스(예를 들어, 모니터링 보고서, 방송 또는 다른 자료의 개요를 준비하고 보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2) (1)항에서, 미디어 생산물은 음향, 데이터, 정지화상, 동화상, 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의 의미 안에서), 인쇄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를 가리키고, 뉴스 기관의 생산물을 포함한다. ‘일정한’은 상기 항에 의거한 명령에서 정한대로라는 의미이다.
- (3) 상기 명령의 준수에 있어, BBC는 왕실기관으로 간주되고 공익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불만사항 처리

89. 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틀과 절차의 설정

- (1) 트러스트는 BBC 및 그 상업부문이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하나 이상의 틀을 마련하고 불만처리에 적용할 절차를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특별히 제43~46조항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포함하여(적정한 기준,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Ofcom의 공정성 규범, 관련 프로그램 규범 기준 등을 지키도록 마련된 BBC 지침), BBC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 (3) 트러스트는 상기 사항을 정하기 전에 틀과 관련 절차에 관하여 공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모든 틀과 관련 절차는

- (a) 제90조에 명시된 원칙을 반영해야 하고
- (b) 불만처리 요청이 트러스트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트러스트가 불만처리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 (c) 상이한 불만사항들에 대해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90.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최우선의 원칙

- (1)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간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 (2) 트러스트는, 가능한 한, 공표된 틀과 절차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을 BBC, 트러스트, 집행위원회, 또는 상업부문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 (3) 불만사항이 트러스트의 행위나 부작위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러스트는 개별적인 불만사항을 1심에서 처리 또는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공표된 틀과 절차는 불만사항이 처리되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 (5) 공표된 틀과 절차는 불만자와 잠재적 불만자에게
 - (a) 불만처리 시스템의 운용방법, 그리고
 - (b) 제기된 또는 제기가 예상되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가능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6) 트러스트가 불만사항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요청에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7) 트러스트는, 공정거래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 (a) 트러스트에 제공되는 조언이 집행위원회나 상업부문에 대한 불만처리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사람과 다른 조언자에 의해 제공되도록 해야 하고
 - (b) 트러스트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또는 교정방법에 대해 공표된 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다.
- (8) 트러스트는 누구든 공정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트러스트에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 (a) 집행위원회의 위원, 또는
 - (b) 트러스트 유닛의 직원이 아닌 BBC 직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만처리의 틀을 규정하고, 트러스트 유닛의 직원 또는 트러스트가 그 정보를 알려 그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예를 들면, 트러스트 유닛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가 알게 하여 그가 다시 집행위원회에 그 정보를 전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BBC가 항시 제도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
- (9) (8)항의 의무는
- (a) 해당 정보가 법에 기밀로 정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 (b) 트러스트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다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c) BBC 또는 그 직원이 정보를 밝힐 법적의무에 따른다.
- (10) 본 조항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불만사항’은 65~67조(공정거래 및 경쟁영향)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때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의미한다.

BBC와 Ofcom

91. Ofcom과의 협력

BBC는 Ofcom과 협력해야 하고,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198조(BBC와 관련한 Ofcom의 직무)에 의거하여 Ofcom의 직무와 관련하여, Ofcom이 BBC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정보와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92. BBC와 Ofcom 사이의 협정

- (1) 본 조항은 본 협정의 다음 규정들(이하 ‘관련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 (a) 제47조
 - (b) 제49조
 - (c) 제50조
 - (d) 제51조

- (e) 제52조
- (f) 제59조
- (g) 제61조, 그리고
- (h) 제62조

(2) 상기 규정들에서-

‘합의된’은 BBC와 Ofcom간 합의된 것을 의미하고 ‘양 당사자’는 Ofcom과, (3)항에 의해 부과받은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BBC를 의미한다.

(3) BBC는 Ofcom과의 협정을 준수하고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관련 조항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항은 합의되어야 하고 상기 협정의 준수 또는 보전을 위해 BBC는

- (a) Ofcom에 제의하고
- (b) 상기 협정의 준수 또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Ofcom과 연락한다.

93. Ofcom의 시정조치 요구권

(1) 만일 Ofcom이

- (a) BBC가,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집행요건을 위반하고
- (b) 해당 서비스에 개선사항 또는 개선결과보고(또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것 등을 통해 잘못을 적절히 시정한 것에 대해 납득한 경우, Ofcom은 BBC로 하여금 개선사항 또는 개선결과보고(또는 둘 모두)를 해당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지시에는, Ofcom이 결정하는 대로, 개선사항 또는 개선결과보고의 형식과 그것을 포함할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 등이 담긴다.

(3) Ofcom은, 지시를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문제에 관해 BBC가 항의할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거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4) BBC가 본 조항에 의거한 지시에 따라 어떤 서비스에 개선사항 또는 개선결과보고를 포함하는 경우, BBC는 그 지시에 맞춰 발표해야 한다.

(5) 만일 Ofcom이 어떤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관련 집행요건을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경우, Ofcom은 BBC에 대해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에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Ofcom이

- (a) (1)항에 의거하여 BBC에 지시를 내리거나
- (b) (3)항의 효력에 의해 BBC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문화부장관에게 지시 또는 항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7) ‘관련 집행요건’은 제97조에 의해 정의된다.

94. Ofcom의 벌금부과권

(1) BBC가 관련 집행요건을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경우, Ofcom은 BBC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벌금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198조 (5)항에 명시된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3) Ofcom은 벌금을 통지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문제에 관해 BBC가 항의할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1)항에 의거한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

(4) Ofcom이

- (a) (1)항에 의거하여 벌금을 통지하거나
- (b) (3)항의 효력에 의하여 BBC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문화부장관에게 벌금통지 또는 항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5) (1)항에 의거한 Ofcom의 권한행사는 동일한 위반에 대해 95조에 의거한 Ofcom의 권한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6) ‘관련 집행요건’은 제95조에 의해 정의된다.

95. 관련 집행요건

(1) 제93조와 제94조의 취지상, 관련 집행요건은 다음 조항들에 의거하여 BBC에 부과

되는 모든 요건들이다.

- (a) 제45조(공정성 규범)
- (b) 제46조(프로그램 규범 기준)
- (c) 제47조(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 (d) 제49조(오리지널 제작물의 편성 쿼터)
- (e) 제50조(국가 및 지역을 위한 편성)
- (f) 제51조(국가 및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g) 제52조(외주제작 쿼터)
- (h) 제59조(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연관된 규정)
- (i) 제60조(59조의 목표대상을 수정할 권한)
- (j) 제61조(프로그램 발주에 관한 규정)
- (k) 제62조(기록물의 보존 및 제작)
- (l) 제63조(국제적 준수사항)
- (m) 제91조(Ofcom과의 협력)
- (n)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의 제1항(외주제작 쿼터)
- (o)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의 제2항(불만처리절차 등을 공표할 의무)

(2) 덧붙여, 오직 제94조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 집행요건은 제93조에 의거하여 BBC에 지시를 내리는 모든 요건을 포함한다(Ofcom의 시정조치 요구권).

일반 사항

96. 승인과 지시

- (1) 본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나 일의 경우에
 - (a) 승인은 서면으로 주어져야 하고
 - (b) 승인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a)항은 첫 번째 승인을 부여할 때 적용된다).
- (2) 본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부처 장관이 BBC에 지시를 내리는 경우에
 - (a) 지시는 서면으로 내려져야 하고
 - (b) 그 권한은 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권한을 포함한다(관련 권한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따라서).

97. 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BBC는, 문화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정에 의거한 BBC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달리 처리해서는 안 된다.

98.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 (1) 양 당사자는 본 협정의 어떤 조건도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1조에 의거한 제3자에게 적용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
- (2) 본 조항은 제3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본 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칙허장 제52조 참조).

해 석

99. 서설

본 협정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문제로 입안될 수 있도록, 아래 설명된 해석의 여러 가지 원칙 또는 규칙에 의지했다. 본 협정의 독해에 있어 이들 원칙과 규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식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문맥상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100. ‘영국 내 공공서비스’의 의미

본 협정에서, ‘영국 내 공공서비스’는, 아래 서비스를 제외하고,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BBC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 (a) 상업서비스(제101조에 의해 정의된)
- (b) 월드서비스의 부분을 이루는 서비스(제64조 참조)
- (c) 제75조 (7)항에 포함되는 서비스(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거나 정부부처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는 서비스).
- (d) 주로 영국 밖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101. ‘상업서비스’ 및 관련 표현들의 의미

- (1) 본 협정에서, ‘상업서비스’는 BBC가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실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수익을 공적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서비스나 활동을 의미한다.

(2) 그렇지만, ‘상업서비스’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자산 또는 BBC가 공공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원의 잉여분 매각
- (b) BBC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수적인 편의 및 서비스의 제공(다른 요인들(예를 들면, 편의제공에 대한 요금부과)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라도 요금부과는 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 (c) BBC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안출된 어떤 것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저작권 처분
- (d) BBC가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일괄 거래한 저작권의 일부로서 부수적으로 획득한, 공적목표의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저작권의 2차 라이선스 계약 또는 처분
- (e) BBC와 BBC 상업부문간 또는 BBC 조직의 부서간 거래나 다른 행위,
- (f) BBC 콘텐츠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선행 투자 확보

(3) (1)항에서, ‘서비스’와 ‘활동’은 BBC의 자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활동을 포함하며, ‘활동’은 BBC나 BBC 상업부문의 자회사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과의 공동사업 또는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휴를 포함한다.

(4) (2)항에서, ‘BBC의 공공서비스’는 상업서비스를 제외하고 BBC가 공적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본 협정에서-

‘BBC의 상업부문’은 BBC가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BBC의 모든 자회사를 의미한다.

‘BBC의 상업서비스’는 68조 (2)항에 기술된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상업서비스를 의미한다.

102. ‘수신료납부자’의 의미

본 협정에서, ‘수신료 납부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고,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64항에 의거하여 발부되는 TV 면허의 소지자뿐만 아니라 (문맥상 상식적인 선에서) 영국에서 BBC의 어떤 서비스라도 보거나 듣거나 이용하는, 또는 장래에 그리 하거나 그리 하기를 원하는 자도 포함한다.

103. 공적 협의를 진행시켜야 할 트러스트 책무의 의미

- (1) 본 조항은 본 협정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특별히 공적 협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제28조 (3)(b)항), 그 의미를 설명한다.
- (2) 협의할 문제와, 그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트러스트가 판단하는 이슈에 대해 트러스트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적 협의를 해야 한다.
- (3) 트러스트는 조사의 대상이 될 일정한 사람들, 계층, 집단 등 조사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 (4) 트러스트는 특별히 누가 협의할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조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 (5) 트러스트는 협의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 (a) 자체 조사를 실시할지
 - (b)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지(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고) 고려해야 한다.
- (6) 트러스트는 공적 협의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정보의 분석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7) 트러스트는 공적 협의의 요건에 따라 결정한 사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 (8) 덧붙여, 특정한 공적협의 의무 표현의 미묘한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면, 5조 (5)항).
- (9) 공적 협의 의무가 명백히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협의를 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공적 협의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트러스트가 판단한다(물론, 칙허장 제23조 (c)항에 의거한 트러스트의 일반 의무, 즉 수신료납부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그리고 적절하게 평가할 의무를 참작하여).

104. 알파벳 순서에 따른 용어들의 간략한 정의

본 협정에서-

‘BBC’는 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를 의미한다.

‘BBC One’은 BBC One으로 알려진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를 의미한다.

‘BBC Two’는 BBC Two로 알려진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를 의미한다.

‘BBC의 상업부문’은 제101조 (5)항에 의해 정의된다.

‘BBC의 상업서비스’는 제101조 (5)항에 의해 정의된다.

‘방송’은 무선 전신에 의한 방송을 의미한다.

‘칙허장’은 2016년에 만료되는 기간까지 BBC의 존속을 인가한 왕실칙허장을 의미한다.

‘상업서비스’는 제101조 (1)~(3)항에 의해 정의된다.

‘배급한다’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배급’과 같은 관련 표현은 본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제34조 (1)항에 의해 정의된다.

‘집행위원회’는 칙허장 제7조에 의해 설립된 BBC의 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외무부장관’은 영국연방의 외무부장관을 의미한다.

‘직무’는 권한과 임무를 포함한다.

‘외주제작’은,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하여,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일정12의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공동운영단’은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운영단을 의미한다.

‘수신료 납부자’는 제102조에 의해 정의된다.

‘시장영향평가’는 제30조에 기술된 공공가치 테스트의 구성 요소이고, 문맥에 따라, 평가의 실행과정 또는 평가결과가 기술된 문서를 가리킬 수 있다.

‘Ofcom’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의미한다.

‘규약’은 칙허장 제21조에 의거하여 트러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정을 의미한다.

‘공적 목표’은 칙허장 제4조에 상술된 목표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방송사’는 Channel 3, Channel 5, 공공텔레텍스트서비스(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3부에 정의된)를 제공하는 면허 보유 방송사와 Channel 4 텔레비전공사, 그리고 S4C 등을 의미한다.

‘공공가치 테스트’는 제28조에 기술된 공공가치 테스트의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공공가치 테스트(the Public Value Test)’는 제24조에 의해 정의되고, ‘한 공공가치 테스트(a Public Value Test)’는 공공가치 테스트를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목표과제’는 칙허장 제24조 (2)(a)항에 언급된 목표과제를 의미한다.

‘S4C’는, 1990년 방송법 제55조 (1)항에 규정된, Sianel Pedwar Cymru로 알려진 웨일스 방송을 의미한다.

‘문화부장관’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서비스 면허(제18조에 규정된 기준 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포함되어야 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서비스 면허’는 칙허장 제24조 (2)(c)항에 언급된 서비스 면허를 의미한다.

‘자회사’는 1988년 소득 및 법인세법 제840조에서 정의한 대로 BBC가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트러스트’는 칙허장 제7조에 의해 설립된 BBC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영국’은, 본 협정의 취지에서만,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북아일랜드(Nothern Ireland),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맨 섬(Isle of Man)으로 이루어진 영국연합왕국을 의미한다.

‘영국 내 공공방송서비스’는 텔레비전프로그램 서비스와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로 이루어진 영국 내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영국 내 공공서비스들’은 제100조에 의해 정의되고, ‘영국 내 공공서비스’는 그 서비스들 가운데 어느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는 텔레비전프로그램 서비스들로 이루어진 영국 내 공공서비스들을 의미하고, ‘영국 내 공공텔레비전서비스’는 그 서비스들 가운데 어느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무선 전신’은 1949년 무선전신법에서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WOCC’는 창의적 경쟁의 창을 의미한다(제54조 참조).

105. 성(gender)과 수(number)

(1)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성을 포함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단수로 쓰인 단어들은 복수를 포함한다.

106. 권한 및 의무의 연속성

본 협정이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필요한 때마다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107. 상이한 사례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만들 권한

본 협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원칙적으로 상이한 사례에 대해 상이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다.

108. 관련 시기에 대한 언급

- (1) 어떤 직책의 보유자에 대한 언급은 본 협정이 체결된 날보다는 관련된 시기에 그 직책을 가진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 (2) 마찬가지로,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관련된 시기에 그에 관한 언급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109. 법률에 대한 언급

- (1) 특정한 법률 제정에 대한 언급은 때때로 수정되거나 다시 제정되는 법률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독되어야 한다.
- (2) 맨 섬 또는 채널 제도와 관련된 법에 대한 언급은 맨 섬 또는 채널 제도까지 적용되는 법에 대한 언급이다.

110. 표제

표제는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표제와 관련된 명문화된 본문의 정확한 해석의 신뢰할 만한 지침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용하기 위해, 표제는 종종 지나치게 간략화 되거나 실제 내용의 일부 측면만 선택적으로 나타낸다.

(중략)

영국 내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제책임

5. 아래 표의 첫째 단에 언급되어 있는 BBC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 또는 사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둘째 단에 언급되어 있는 본 협정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트러스트 또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 또는 사항인 것처럼 효력을 갖고, 본 협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약간의 변경사항(경영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트러스트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에 따른다.

1996년 협정에 의거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이루어진 사항	본 협정에서의 효력
BBC One 및 BBC Two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관해 5D항에 의거, 경영위원들이 정한 사항	제47조에 의거, 트러스트가 집행위원회에 부과하는 요건
5E항에 의거, 경영위원들이 정당정치 방송과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	제48조에 의거, 트러스트가 결정한 사항
공공텔레비전서비스의 오리지널 제작물 편성쿼터에 관한 5F항에 따라 Ofcom과 합의한 사항	제49조에 의거하여 합의된 사항
BBC One과 BBC Two의 지역 프로그램에 관한 5G항에 따라 경영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제50조에 의거한 사항
5H항에 따라 Ofcom과 합의된 지역 프로그램제작과 관련된 사항	제51조에 의거한 사항
청각장애자 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a) '익스클루디드 프로그램'에 관한, 51.3항에 따른 Ofcom과의 합의사항	제59조 (4)항에 따른 Ofcom과의 합의사항
(b) BBC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된 서비스의 연속인지 여부에 관한, 51.8항에 따른 Ofcom과의 합의사항	제59조 (9)항에 따른 Ofcom과의 합의사항
5L항에 의거하여 BBC에 의해 입안되고 Ofcom과 합의하는 프로그램 발주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에 의해 입안되고 Ofcom과 합의하는 규정
5L.7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발주와 관련된 BBC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Ofcom이 내리는 지침	제61조 (7)항에 의거하여 Ofcom이 내리는 지침
7A항에 의거하여 Ofcom이 BBC에 통지하는 영국의 국제적 의무	제63조에 의거하여 그렇게 통지되는 영국의 국제적 의무

6. 트러스트는 2007년 7월 1일 전에 트러스트의 규칙 안에 BBC 상업서비스의 계획된 변화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제71조 참조). 그러나 트러스트가 그렇게 할 때까지 다음 사항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변경은 사전 승인을 위해 트러스트에 회부되어야 한다.
 - (a) BBC 또는 그 상업부문의 차입한도를 늘리는 경우(제80조 참조)
 - (b) 관련 자회사의 누적 투자액, 공동사업에 대한 BBC의 투자액(현금으로 계산한), 재산 물가의 가치, 지분 취득 비용 등이 1,0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 (c) 매우 새롭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 (d) BBC월드서비스 회사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2001년 2월 23일자 승인에 명시된 '산하 승인'의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7. 1996년 협정의 4.4항은 2006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기간의 연차보고서(칙허장에 의해 BBC가 준비해야 하는)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일정2: 본 협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협정

1. BBC와 BBC 서비스 관련 규정을 담은, 내셔널 헤리티지 장관⁷⁾과 BBC간의 1996년 1월 25일자 협정
2. 1996년 1월 25일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과 BBC간 체결한 협정에 대한 2000년 7월 3일자 개정협정
3. 1996년 1월 25일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과 BBC간 체결한(이후 개정한) 협정에 대한 2003년 12월 4일자 개정협정

7) 내셔널 헤리티지 장관에 대한 언급은 1997년 문화·매체·스포츠부 명령(SI 1997/1744)의 효력에 의하여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증서에 날인된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의 인장이 문화·매체·스포츠부장관의
인장임을 증명함.

테사 조웰(인)

문화·매체·스포츠부 관리

앤드류 램세이

본 증서에 BBC의 법인 인장을 날인함. (인)

마이클 그레이드

회장

마크 톰슨

사장

III. 독일 방송재정 관련 법률

1. 제10차 <방송재정국가협약>(전문)

방송재정국가협약 (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⁸⁾

1996년8월16일부터 9월11일 사이⁹⁾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06년7월31일부터 10월10일 사이
제9차 방송국가협약에 따라 개정

제1장 방송수신료 산정 절차

제1조 수요신고

- (1) 주 법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 작업공동체(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제2공영방송(ZDF), 공적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는 2년 주기로 방송재정수요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KEF)에 재정수요를 신고한다.
- (2) 방송사들은 KEF가 사전 요구한 형식에 맞추어 중기간¹⁰⁾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신료책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산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라디오부문과 TV부문으로 세분화하며, 특히 경제성과 비용절감방법에 대해 현황과 더불어 향후 발전추이와 설명문을 제출하고, 공영방송에 주어진 의무사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시킨다.¹¹⁾ ARD와 ZDF는 수요신청 때 유럽문화채

8)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의 제6부.

9) 독일방송정책의 고유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16개주정부는 연방방송법규를 16개 주간에 체결하는 국가협약을 통해 마련한다. 국가협약은 16개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협약의 제정은 통상 ‘모년모월모일부터 모년모월모일 사이 제(개)정된’으로 표기된다.

10) 향후 수신료 회기기간(통상 4년)에 필요한 예산.

11) 이 조항은 공영방송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독일에서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교양, 여론 반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기본공급(Grundversorgung)’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더불어 기본법 제5조1항2

널인 ARTE 재원의 독일측 분담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수입과 지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KEF는 추가로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특히 프로그램과 온라인 서비스, 마케팅 등 특별한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의 근거와 비용의 세목, 지출규모에 대해 비교 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가 동 조항 제1문에서 제5문까지에서 밝히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KEF는 제출서류를 반려시킬 수 있다.¹²⁾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요구한 근거서류와 이에 추가된 정보와 설명, 수치 등은 KEF가 요구한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3) 방송시설의 보완과 확장, 신규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불을 위해 재정수입이 충분해야 하며, 특히 방송수신료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¹³⁾.

제2조 KEF의 설치

방송재정수요의 조사와 평가를 위해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 KEF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

제3조 KEF의 임무와 권한

- (1) KEF의 임무는 방송사의 편성에 대한 독립권을 존중하면서 방송사가 신고한 재정수요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와 조사를 담당한다. 이 임무는 프로그램 편성이 법률에 명시된 방송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는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가 적절한 규모인지, 그리고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전체 국민 경제 발전과

호의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기본공급(unerläßliche Grundversorgung)’의 책임을 맡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영방송에는 공영방송의 의무조항인 프로그램 다양성을 요구할 수 없지만, “공영방송은 ‘가능한 한 최대한(solange und soweit)’ 국민의 기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연방헌재는 ‘기본공급’에는 “누구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empfangbar),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이러한 방송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운영규정”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BVerfGE 74, 297(326)) 그러나 연방헌재는 ‘기본공급’은 결코 ‘최저공급(Mindestversorgung)’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공급’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충족시키는 소극적인 방송행위이지만, ‘기본공급’은 오히려 ‘가능한 최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방송행위에 해당한다.

12) KEF가 방송사의 제출서류를 되돌려주는 것은 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완을 위해 되돌려 줄을 의미한다.

13)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공공예산의 발전추이를 고려하였는지를 살펴 조사하게 된다. 평가는 재정수요가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며, 협력가능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 살펴본다.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재정이 지출되어야할 자체책무라고 설명할 경우, 이 부분도 조사에 포함된다. 방송국가협약 제13조2항2문에 근거하여 기술혁신 및 프로그램 혁신과 관련된 수신신고에 대해서 KEF는 해당 방송사 관할 의결기관의 결의가 있고, 이 결의가 해당 주 법률에 합치할 때만 인정한다.

- (2) KEF는 임무수행을 위해 방송사로부터 기업경영, 투자관계,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조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KEF는 조사에 필요한 수치를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¹⁴⁾
- (3) 방송사들을 재정수요 평가와 조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4) KEF는 임무를 지원받기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전문적인 의견서 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서를 위탁받은 제3자에게 방송사들은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5) KEF는 2년에 한 번씩 주정부들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EF는 각 방송사에도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를 출판한다. 주정부들은 이 보고서를 주의회에 설명 자료로 전달한다. KEF는 보고서에서 동 협약 제3조1항과 방송국가협약 제13조에 명시된 방송사들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방송수신료의 인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점에서 인상이 필요한지 수신료 금액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거나 또는 인상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다양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추가로 방송시간 재정조정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ADR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간의 수신료 배당에 대해 백분율과 액수를 밝힌다.
- (6) 제1항과 제5항은 주정부가 일부 특정 사안 대해 KEF에 요청한 특별보고서 작성에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참여 권리는 인정된다.
- (7) KEF위원의 소수의견도 본인이 희망하면 보고서에 게재한다.

14) 방송사들이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KEF가 임의적인 추정치로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수신료 책정과 배당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4조 KEF의 구성

- (1) KEF는 16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한다.
- (2) KEF는 제3조에 근거한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위원 가운데 최소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 (3) 유럽연합과 연방정부, 주정부의 헌법적 기관의 구성원이나 직원, ARD와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유럽문화채널인 ARTE, 주매체청, 민영방송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과 방송국가협약 제28조에 직·간접적으로 해당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KEF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앞에서 거론한 기관에서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도 해당한다.
- (4) 각 주는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분야에서 위촉되어야 한다.
 - 3명의 위원은 공인회계사와 기업컨설팅 분야에서
 - 2명의 위원은 경영학 분야에서 위촉하되, 인사문제 또는 투자와 경영효율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 2명의 위원은 방송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거나 판사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 3명의 위원은 미디어경제학과 미디어학 분야에서
 - 1명의 위원은 방송 기술 분야에서
 - 5명의 위원은 주회계원(감사원)에서¹⁵⁾
- (5) KEF위원은 주지사회의에서 5년 임기로 위촉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명은 주정부측에 의해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시 후임위원은 전임자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활동한다.
- (6) KEF위원과 특별임무를 위탁받은 전문가는 퇴임 이후에도 근무 중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무가 있다. 단 해당사항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비밀보호대상이 될 만한 가

15) 독일의 각 연방주는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주회계원을 두고 있다. 회계원의 업무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사이이다. 독일은 정부조직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정원이나 정부조직이 총예산의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주의회(연방도 동일함)에서 의결하는 정부예산의 집행내용과 집행과정은 중요한 감사대상이 된다. 주회계원은 이러한 예산운영과정에 대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집행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 투명성등이 검증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원의 공무원들은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방송재정수요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5조 KEF의 결정과정

- (1) 방송사들은 KEF가 재정수요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다. 방송사 대표들은 KEF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제공한다.
- (2) KEF는 최종보고서 채택에 앞서 방송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KEF는 ARD와 ZDF, 도이첼란트라디오에 보고서 초안을 송부한다. 이는 주정부 방송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송사들의 의견은 KEF의 최종보고서 작성 때 반영한다.

제5a조 주의회에 정보제공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 도이첼란트라디오는 KEF보고서가 제출됨과 동시에 제3조5항에 따라 관할 주의회에 자체적인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의 보고서에는 ARD국가협약 제1조와 방송국가협약 제19조에 의거한 공동제작프로그램과 공동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역공영방송사가 주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위 규정과는 별도로 변함없이 적용된다.

1항과 2항진반부의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서에는 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해당기업이 공개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중요한 핵심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ARD와 ZDF, 도이첼란트라디오의 구조변화와 발전전망도 포함해야 한다. 각 방송사가 주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4년을 주기로 작성된다.

제6조 KEF의 재정과 조직

- (1) KEF의 운영자금과 사무국 경비는 방송수신료에서 우선 충당한다. 도이첼란트라디오에서 수신료 수입비용에 준하는 분담금을 각출하며, 나머지 비용은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2) KEF는 예산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KEF사무국과 기관이 위치한 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주가 예산계획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정부와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허가는 규정에 맞아야하며, 절약적인 예산계획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얻을 수 있다.
- (3) KEF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은 KEF에 할당된 예산을 분기별로 회기년도 분기별 중간 시점에서 수령한다. 첫 번째 수령일은 1997년2월15일이다.
- (4) KEF의 조직과 재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지사회의에서 채택한 규약을 통해 정한다. 이 규약은 사무국의 전문성과 예산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주들의 의결 절차

- (1) 주들의 방송위원회¹⁶⁾(이하 주방송위원회)는 방송사들이 KEF에 제출한 수요보고를 동시에 받으며, 또한 방송사들로부터는 추가설명과 보완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 받는다.
- (2) KEF의 수신료제안은 주정부와 주의회의 의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수신료제안에 대해 주방송위원회가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KEF를 참여시킨 가운데 방송사들과 협의해야 한다. 수정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¹⁷⁾

16) 주지사회의의 비상임 위원회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협의기구이다. 통상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지사 비서실이 ‘주들의 방송위원회’ 사무국역할을 담당하며, 비서실 정무장관이 위원회 사무국장 직을 수행한다. 라인란트-팔츠주 주지사 비서실에는 방송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한다.

17) 그동안 주방송위원회는 KEF의 수신료 인상제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된 수신료 인상에 앞서 2003년10월4일 KEF가 수신료를 16,15유로에서 17,22유로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했지만 주정부 대표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2005년4월1일부터 KEF의 제안보다 0.19유로 적은 17.03유로로 수신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ARD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9월11일 판결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수신료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는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제2차 방송수신료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주방송위원회는 2009년도에 시작되는 새로운 수신료 회기기간에 대폭적인 수신료인상을 승인했다.

제2장 방송수신료의 액수

제8조 방송수신료의 액수

방송수신료의 액수는 매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기초수신료 : 5.52유로
2. TV수신료 : 11.51유로

제9조 수신료의 배당

- (1) 기초수신료 수입의 93.1373/100은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가 배당받으며, 공적 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는 6.8627/100을 배당받는다.
- (2) TV수신료는 ARD가 61.0994/100을, ZDF가 38.9006/100을 배당받는다.¹⁸⁾
- (3)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가 유럽문화채널인 ARTE 독일사무소에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ARTE는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필요 경비를 ARTE에 배당된 지분만큼 TV수신료에서 직접 배당받는다. ARTE가 지원받는 배당금은 1994년12월1일 체결된 (ARD) ARTE 독일사무소 협회협약 제6조2항에 의거, 독일이 ARTE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프로그램 공급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는 매년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1억4596만 유로에 해당한다. 배당금은 12개월로 나누어, 분기별로 회기년도의 분기별 중간시점에 인출하거나 또는 배당금의 일부분을 다음 인출시기에 함께 받는다.

제3장 주매체청의 예산배당

제10조 배당 금액

- (1) 주매체청에 배당되는 금액은 전체 기초수신료 수입의 1.9275/100과 TV수신료의 1.8818/100이다. 매년 전체 주매체청에 배당되는 전체금액 가운데 우선적으로 각 주매체청에 기본운영비로 51만1290유로씩 지급된다. 나머지 배당금은 각 주별로 수신료

18) ZDF는 라디오방송이 없다.

수입에 따라 차등 배당된다.

- (2) 만일 2개 또는 다수의 주가 공동으로 주매체청을 설립할 경우, 설립된 이후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동안 2개 이상의 주매체청에서 받아오던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는다. 2012년2월29일까지 통합하는 주매체청은 앞의 문항이 적용되며, 통합 4년후에는 2번째 또는 3번째 이상의 주매체청이 받아오던 배당금의 100%를 받는다. 5년후에는 2번째 또는 3번째 이상의 주매체청이 받아오던 배당금의 75%를, 6년후에는 2번째 또는 3번째 이상의 주매체청이 받아오던 배당금의 50%를, 7년후에는 2번째 또는 3번째 이상의 주매체청이 받아오던 배당금의 25%를 받게 되며, 통합 8년째 되는 해에는 추가배당금이 없어진다.¹⁹⁾

제11조 배당금의 할당

주매체청은 관할 지역공영방송사로부터 분기별로 회기년도의 분기별 중간시점에 적절한 규모의 분할금을 받는다. 잔여 분할금은 늦어도 회기년도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4장 재정조정

제12조 재정조정의 권리와 의무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은 적절한 수준의 재정조정을 실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재정조정은 다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는

1. 공영방송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업과 이와 관련되어 개별 방송사에 부여된 과업, 업무의 특성상 전체 방송의 공동과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경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2. 개별 방송사가 넉넉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19) 이 조항은 1992년 설립된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매체청인 MABB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07년3월1일자로 통합된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함부르크시의 통합매체청인 MA HSH에는 2015년까지 적용된다. MA HSH는 2011년2월28일까지 200%의 예산을 배당받게 되며, 2015년2월28일까지 연차적으로 100%+75%, 100%+50%...의 예산을 배당받다가, 2015년3월1일부터는 다른 주매체청과 마찬가지로 100%의 예산만 받게 된다.

제13조 재정조정액의 징수

재정조정액은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의 재력에 따라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공영방송사간의 협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 재정조정액

재정조정액은 ARD의 순수 방송수신료 총액의 1/100로 정한다. 재정조정액은 53.75% 대 46.24% 비율로 자알란트 방송과 라디오 브레멘 방송이 나누어 갖는다.

제15조 방송사간의 합의

상위법인 기본법에 따라 제13조에 적시된 방송사들은 재정조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제14조1문에 의거하여 재정조정에서 재정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사들은 공영방송사 공동과업의 재정 분담에만 참여한다. 이때 참여규모는 분담금을 합의할 때 정한다.

제16조 주정부의 결정

- (1) 회기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정조정의 규모, 조건, 권리에 대해서 주정부 대표들이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에서 해당 주가 갖고 있는 의결권만큼 투표권을 행사한다(기본법 제51조2항).²⁰⁾
- (2) 의결이 성립될 때까지 이전 회기년도에 의결 또는 합의된 재정조정의 규모와 재정조정의 의무, 재정조정의 권리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20) 연방 상위에 해당하는 연방참의원은 주정부에서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며, 의결권은 주별 인구비례로 정해진다. 현재(2008년)는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니더작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가 각 6표, 헛센주가 5표, 라인란트-팔츠주,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엔주가 각 4표, 브레멘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자알란트주, 함부르크시는 각 3표를 행사한다.

제5장 경과규정 및 결칙

제17조 협약기간, 해지

이 국가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약은 협약에 서명한 주들이 언제든지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 최초의 해지는 2008년12월31일 가능하다. 제4장에 규정된 협약관계의 해지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2008년12월31일부로 특별 해지할 수 있다. 국가협약 또는 제4장에 따른 협약관계가 이 시기에 해지되지 않으면, 동일한 경과기간을 두고 2년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해지는 주지사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한 주가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주의 협약관계는 유지되지만, 나머지 주도 협약해지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으며, 이때 3개월의 협약해지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2. 제11차 <방송재정국가협약>(개정안)

방송재정국가협약 (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

1991년8월31일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08년6월12일 주지사회의에서 서명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주의회 의결을 거치면
2009년1월1일자로 발효될 예정인
제11차 방송국가협약에 따른 수정안²¹⁾

...(생략)...

제8조 방송수신료의 액수

방송수신료의 액수는 매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1. 기초수신료 : 5.76유로
2. TV수신료 : 12.22유로

제9조 수신료의 배당

- (1) 기초수신료 수입의 93.0219/100은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가 배당받으며, 공적 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는 6.9781/100을 배당받는다.
- (2) TV수신료는 ARD가 60.5086/100을, ZDF가 39.4914/100을 배당받는다.
- (3)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와 ZDF가 유럽문화채널인 ARTE 독일사무소에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ARTE는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필요 경비를 ARTE에 배당된

21) 제11차 방송국가협약에 따라 수신료가 인상되면서 수정되는 조항은 제8조와 제9조, 제17조이다. 동 개정안은 KEF와 공영방송사와의 협의를 위해 제시한 법률개정안이며, 2008년12월31일까지 각 주의회에서 개정안을 인준하면 2009년1월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법률 및 추가된 법률은 짙은 글씨체와 밑줄로 표시했다.

지분만큼 TV수신료에서 직접 배당받는다. ARTE가 지원받는 배당금은 1994년12월1일 체결된 (ARD) ARTE 독일사무소 협회협약 제6조2항에 의거, 독일이 ARTE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프로그램 공급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는 매년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1억6371만 유로에 해당한다. 배당금은 12개월로 나누어, 분기별로 회기년도의 분기별 중간시점에 인출하거나 또는 배당금의 일부분을 다음 인출시기에 함께 받는다.

...(중략)...

제17조 협약기간, 해지

이 국가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약은 협약에 서명한 주들이 언제든지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 최초의 해지는 2012년12월31일 가능하다. 제4장에 규정된 협약관계의 해지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2012년12월31일부로 특별 해지할 수 있다. 국가협약 또는 제4장에 따른 협약관계가 이 시기에 해지되지 않으면, 동일한 경과기간을 두고 2년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해지는 주지사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한 주가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주의 협약관계는 유지되지만, 나머지 주도 협약해지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으며, 이때 3개월의 협약해지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생략)...

3. 제12차 <방송재정국가협약>(개정안)

방송재정국가협약 (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

1996년8월16일부터 9월11일 사이 체결되어,
2008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개최된
방송위원회와 주지사 자문을 위한 주지사 비서실 정무장관회의에서 공개된
제12차 방송국가협약 개정안²²⁾

제1장 방송수신료 산정 절차

제1조 수요신고

- (1) 주 법률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 작업공동체(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제2공영방송(ZDF), 공적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는 2년 주기로 방송재정수요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KEF)에 공적 과업(Oeffentlicher Auftrag) 수행을 위해 재정수요를 신고한다.
- (2) 방송사들은 KEF가 사전 요구한 형식에 맞추어 중기간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신료책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산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라디오부문과 TV부문으로 세분화하며, 특히 경제성과 비용절감방법에 대해 현황과 더불어 향후 발전추이와 설명문을 제출하고, 공영방송에 주어진 의무사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시킨다. ARD와 ZDF는 수요신청 때 유럽문화채널인 ARTE 재원의 독일측 분담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수입과 지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KEF는 추가로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특히

22) 동 개정안은 주정부대표들이 KEF 및 공영방송사와 협의하기 위해 제시한 개정안이며, 2009년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변경될 수 있지만, 방송재정국가협약의 개정안은 큰 변화 없이 개정안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 및 추가된 법률은 짙은 글씨체와 밑줄로 표시했다. 변경된 조항은 제1조1항에 “공적 과업(Oeffentlicher Auftrag) 수행을 위해”가 추가되었으며, 제1조제4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제3조2항이 4항이 되고, 3-7항은 6-10항이 된다. 1항 뒤에 새롭게 2항과 3항이 신설되고, 4항 뒤에 새롭게 5항이 신설되었다. 제4조이하는 변동이 없다.

프로그램과 온라인 서비스, 마케팅 등 특별한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의 근거와 비용의 세목, 지출규모에 대해 비교 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가 동 조항 제1문에서 제5문까지에서 밝히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KEF는 제출서류를 반려시킬 수 있다.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요구한 근거서류와 이에 추가된 정보와 설명, 수치 등은 KEF가 요구한 시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방송시설의 보완과 확장, 신규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불을 위해 재정수입이 충분해야 하며, 특히 방송수신료가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제2공영방송(ZDF), 공적기관인 도이첼란트 라디오의 전체 수입이 공영방송의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지출보다 상회할 경우, 초과 수입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치하고, 연간 수신료 수입보다 10%이상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이는 적립한다.

제2조 KEF의 설치

방송재정수요의 조사와 평가를 위해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 KEF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

제3조 KEF의 임무와 권한

(1) KEF의 임무는 방송사의 편성에 대한 독립권을 존중하면서 방송사가 신고한 재정수요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와 조사를 담당한다. 이 임무는 프로그램 편성이 법률에 명시된 방송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는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가 적절한 규모인지, 그리고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전체 국민 경제 발전과 공공예산의 발전추이를 고려하였는지를 살펴 조사하게 된다.(3문이하 생략)

(2) KEF는 재정수요의 조사와 평가에서 방송사들의 전체 수입을 고려한다. 방송사들의 수신료와 기타 직·간접적인 수입은 공적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출과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새로운 수신료 회기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손실의 수신료 회기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평가는 재정수요가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며, 협력가능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분참여

가 시장상황에 맞게 투자 적립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방송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재원을 미리 예상하여 선정한 목적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는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수입창출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재정이 지출되어야 할 자체책무라고 설명할 경우, 이 부분도 조사에 포함된다. 방송국가협약 제14조2항2문에 근거하여 기술혁신 및 프로그램 혁신과 관련된 수요신고에 대해서 KEF는 해당 방송사 관할 의결기관의 결의가 있고, 이 결의가 해당 주법률에 합치할 때만 인정한다.

(4) KEF는 임무수행을 위해 방송사로부터 기업경영, 투자관계,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조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KEF는 조사에 필요한 수치를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KEF의 재정수요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원칙적으로 예산잔액을 기초로 수행한다.²³⁾ 재정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수치와 예상금액이 산출되면, 추가로 여기서 예산잔액만큼 제외함으로써 과잉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방송사들을 재정수요 평가와 조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7) KEF는 임무를 지원받기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전문적인 의견서 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서를 위탁받은 제3자에게 방송사들은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 KEF는 2년에 한 번씩 주정부들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EF는 각 방송사에도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를 출판한다. 주정부들은 이 보고서를 주의회에 설명 자료로 전달한다. KEF는 보고서에서 동 협약 제3조1항과 방송국가협약 제13조에 명시된 방송사들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방송수신료의 인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점에서 인상이 필요한지 수신료 금액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거나 또는 인상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다양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추가로 방송사간 재정조정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23) 새로운 개정 법률에는 예산잔액을 '1st-Zahlen(잔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KEF가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수신료 회기가 새롭게 시작되면, 공영방송사들은 실질적인 예산 편성 시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잉여금으로 임의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영방송사들은 잔액만큼 새로운 예산 편성에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사들이 잔액을 통해 발생하는 이월금을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강제화하는 조치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ADR와 ZDF, 도이첼란트라디오간의 수신료 배당에 대해 백분율과 액수를 밝힌다.

- (9) 제1항과 제5항은 주정부가 일부 특정 사안 대해 KEF에 요청한 특별보고서 작성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참여 권리는 인정된다.
- (10) KEF위원의 소수의견도 본인이 희망하면 보고서에 게재한다.

4. 11차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중 방송재정 관련 규정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1991년8월31일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07년12월19일 개정되고, 2008년9월1일 발효된
제10차 방송국가협약에 따른 법안

...(생략)...

제13조 재정

- (1) 공영방송은 방송수신료와 방송광고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 한다; 우선적인 재원은 방송수신료이다. 특별한 대금을 받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첨부물은 예외로 한다.²⁴⁾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2)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면 방송수신료 의무가 있다.

제14조 공영방송의 재정수요

- (1) 공영방송의 재정수요는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 작업공동체(ARD)'에 가입한 지역 공영방송사들과²⁵⁾ 제2공영방송(ZDF), 공적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수요 보고한 것을 기초로 방송재정수요조사 및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KEF)가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와 연관된 경영합리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조사한다.

24)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자나 DVD, 비디오제작을 통한 부가사업을 의미한다.

25) 지역공영방송은 BR(바이에른주), HR(헷센주), MDR(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NDR(니더작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함부르크시), RB(브레멘시), RBB(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주), SR(자알란트주), SWR(바덴-뷔르템베르크주, 라인란트-팔츠주), WDR(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등 9개가 있다.

(2) 재정수요에 대한 평가와 조사는 특히 아래 사항에 기초한다.

1. 현존하는 방송프로그램들과 국가협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방송 송출이 허용된 TV프로그램들의 경쟁력 유지 (현존 수요 고려),
2.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된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송형태의 실현과 새로운 방송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전파 가능성 (발전 수요 고려),
3. 미디어분야 일반비용과 특별비용의 변화,
4. 수신료수입과 광고수입, 기타 수입의 변화.

(3) 재정수요의 평가와 조사는 최고의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신료 책정은 국가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략)...

5. 제12차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중 방송재정 관련 규정

방송 텔레미디어 국가협약 (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1991년8월31일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08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개최된
방송위원회와 주지사 자문을 위한 주지사 비서실 정무장관회의에서 공개된
제12차 방송국가협약 개정안²⁶⁾

...(생략)...

제13조 재정

- (1) 공영방송은 방송수신료와 방송광고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 한다; 우선적인 재원은 방송수신료이다. 특별한 대금을 받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첨부물은 예외로 한다.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2)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면 방송수신료 의무가 있다.

제14조 공영방송의 재정수요

- (1) 공영방송의 재정수요는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 작업공동체(ARD)'에 가입한 지역 공영방송사들과 제2공영방송(ZDF), 공적기관인 도이칠란트라디오가 수요 보고한 것을 기초로 방송재정수요조사 및 평가를 위한 독립위원회(KEF)가 경제성과 절약성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와 연관된 경영합리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조사한다.

26) 동 개정안은 주정부대표들이 KEF 및 공영방송사와 협의하기 위해 제시한 개정안이며, 2009년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변경될 수 있다. 방송재정과 관련해서는 제14조2항에 5문이 추가되었고, 4항이 5항이 되고, 그 앞에 새로운 4항이 추가되었다. 개정법률 및 추가된 법률은 짙은 글씨체와 밑줄로 표시했다.

(2) 재정수요에 대한 평가와 조사는 특히 아래 사항에 기초한다.

1. 현존하는 방송프로그램들과 국가협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방송 송출이 허용된 TV프로그램들의 경쟁력 유지 (현존 수요 고려),
2. 주 법률에 따라 허용된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의 새로운 방송형태의 실현과 새로운 방송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전파 가능성 (발전 수요 고려),
3. 미디어분야 일반비용과 특별비용의 변화,
4. 수신료수입과 광고수입, 기타 수입의 변화,
5.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 도이칠란트라디오의 연간 전체수입 가운데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지출을 초과하는 잉여금은 목적과 결합된 곳에 사용하거나 적립 또는 이자수익을 위해 예치.

(3) 재정수요의 평가와 조사는 최고의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4) KEF는 주회계원으로부터 ARD에 가입한 지역공영방송사들과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이들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받는다.

(5) 수신료 책정은 국가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략)...

IV.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s) 의 공적 의무 조항

1. 프랑스 공영방송 그룹 채널 전체에게 적용되는 의무조항²⁷⁾

(Les obligations applicables aux chaînes du groupe France Télévisions)

세 가지 형태의 텍스트가 공영방송채널에 적용되는 임무와 의무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1986년 9월 30일 법(la loi du 30 septembre 1986)》은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이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채널들 각각의 전반적인 임무와 방향성을 정의하고 있다.
- 《임무와 의무 요강서(les cahiers des missions et des charges)》.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 정해졌는데, 서문에서 공영방송채널의 편성을 유인해야 하는 큰 원칙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다른 조항에서는 정확하게 의무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에 규정된 의무조항들을 협상하는 민영방송채널들과는 달리, 위원회(CSA)는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승인을 담고 있는 시행령 계획안이나 그것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만 심의를 맡게 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CSA)는 각 방송사들의 임무와 의무조항이 잘 적용되도록 하는 보증인이고, 법은 방송위원회에게 그것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목적과 수단 계약서(COM; les contrats d'objectifs et de moyens)》²⁸⁾는 대주주인 정부와 공영방송채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 계약서의 원칙은

27) 역자 주: 본 문서는 프랑스 방송위원회(CSA)가 작성한 프랑스 공영방송의 임무와 프로그램 공급 현황 그리고 개혁안 등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서 부록을 번역한 것이다. 이 부록은 프랑스 공영방송 그룹 France Télévisions의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과 규제가 있어서 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에 비해 어떠한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8) 제53조: “목적과 수단 계약서는 제43-11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공공서비스 임무를 준수하면서 각 방송사 혹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채널 발전의 우선적 축들, 즉 창작에 있어서 다양성과 혁신에 대한 약속 그리고 권리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2005년 2월 11일의 법 n°2005-102의 발표 후 5년 내에 장애인의 참여와 시민성, 난청인 혹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전체의 각색을 보장한다는 약속, 광고 메시지는 예외이며 몇몇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특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5년 2월 11일의 법 n° 2005-102에 의해 완성된 항;
- 각 해당 년도에 예상되는 활동 비용과 집행과 실적의 질적·양적 지표
- 프로그램 예산의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공 재원을 파악하면서 채널에 할당되어야 하는 공공재원의 총액
- 특히 매출 상표 광고와 협찬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서 기대되는 생산 총액
- 비용 지급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전망”

1986년 9월 30일 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다. 첫 COM은 2001-2005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새로운 COM은 2007-2010년 기간을 위해 협의되고 서명되었는데 각각의 분리된 채널들보다는 France Télévisions 그룹 전체의 의무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COM의 준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France Télévisions의 회장은 매년 국회의 문화 업무와 재정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 출두하여 COM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1. 법에 의해 정의된 임무: 전반적인 임무와 각각의 회사(채널)에게 해당하는 특수한 임무

1.1. 전반적인 임무

1986년 9월 30일 법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공적 섹터(*secteur public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를 규정하고 제44조와 제45조에 나열된 이 공적 섹터의 회사들에게 공익을 위해 공공 서비스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는 France Télévisions의 모든 지상파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 임무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공중(제43-11조, 제1항)
-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의 다양성(제43-11조, 제1과 2항). 다양성은 정보, 문화, 지식, 오락 그리고 스포츠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제43-11조, 제2항).
-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에서 다원주의(제43-11조, 제1항). 민주주의적 토론, 인구의 다양한 계층사이의 교환, 사회적 통합과 시민성(제43-11조, 제2항). 정보의 정직함, 독립성 그리고 다원주의, 뿐만 아니라 (영상 및 언어)처리의 평등 원칙과 CSA의 권고문을 존중하여 생각과 의견의 다양한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제43-11조, 제4항).
- 질과 혁신의 요구(제43-11조, 제1항).
- 헌법에서 정의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제43-11조, 제1항).
- 프랑스 언어의 진흥(제43-11조, 제2항).
- 지방과 지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언어적 유산을 가치 있게 할 것(제43-11조, 제2항).
-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작의 발전과 전파(제43-11조, 제2항).
-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발전과 전파(제43-11조, 제2항).
- 시청각(방송) 교육과 미디어 교육(제43-11조, 제2항).
- 청각장애인이거나 난청인에게 적합한 조치를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제43-11조, 제3항).

- 프랑수아르권의 명성과 세계 속에서 프랑스 언어와 문화의 전파를 위해 외부(해외) 방송활동에 기여할 것(제43-11조, 제5항).
- 공공서비스 채널의 프로그램 공급을 풍성하게 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제작과 전송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제43-11조, 마지막 직전 항).

1.2. 특수한 임무들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임무 외에, 법(제44조와 제45조)은 공공서비스의 각 회사(채널)에게 각각 편집 노선을 정의하기 위해 특수한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임무들은 다수가 법 제43-11조에 의해 명시된 원칙들을 세분화해서 발전시킨 하위 항목들이다. 이 임무들은 각 회사의 위상과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나타난 조치들을 통해서 완성된다.

✓ France 2

- 전 국토에서 방송한다.
- 표본이 되고, 가장 넓은 공중의 의도에 맞게 다양한 종합 편성을 제안한다.
- 독창적인 프로그램 제작물의 창작을 활성화하라.
- 국내와 국제적 정보를 보장하라.

✓ France 3

-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성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편성하라.
- 본토 전체 혹은 일부에서 방송하라.
- 다양하고 종합적인 편성을 제공하라.
- 근접성을 지닌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과 지역 이벤트를 알려라.

✓ France 5

- 교육적 성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편성하며, 지식, 교육, 직업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라.
- 본토 전체에 방송하라.
- 이미지와 미디어 교육에 기여하라.

✓ France 4

France 4는 France Télévisions에게 법의 제 43-11조에 답하기 위한 무료 디지털 채널을 구성하도록 자회사를 창설할 것을 허가하는 제44조 I의 마지막 항의 적용에 따라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법은 이 채널에 어떠한 특수한 임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RFO

해외 프랑스 네트워크(Réseaux France outre-mer, 이하 RFO)라고 이름 지어진 이 ‘국립 프로그램 회사’는 프랑스 해외 공동체에 방송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편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텔레비전에 있어서, RFO는 프랑스 해외 공동체에서 지방과 지역의 이벤트를 알리는 종합편성 텔레비전(Télé Pays) 서비스와 문화적·교육적 성격의 종합편성 텔레비전(Tempo) 서비스를 편집한다.

✓ France Ô

본토에서, RFO는 France Ô라고 호칭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편집(재편성)한다.

이 서비스의 임무는 :

- 본토에서 해외 영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 그 환경 그리고 기타 세계 곳곳의 현재적, 역사적 관계를 알게 하도록 도와주고;
- 프랑스적 다양성의 한편에서 본토에 해외영토의 존재와 통합을 증명하며;
- 특히 국립 프로그램 채널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유성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전송하며;
- 국제 영상 서비스를 보장한다(A.I.T.V.).

2.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명시된 임무들

공영 방송사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법의 43-11조에 정의된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요강서에는 공적 섹터에 있는 각 방송사의 편성 특수성에 따라 임무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France 2와 France 3의 현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1994년 9월 16일의 시행령 n° 94-813(le décret n° 94-813)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요강서는 1994년 이래로 아홉 번

수정되었다²⁹⁾. France 5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1995년 1월 20일의 시행령 n° 95-71(le décret n° 95-71)이 규정하고 있는데 다섯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France 4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2006년 6월 1일 시행령 n° 2006-645(le décret n° 2006-645)에 의해서 정해졌다.

이 국립 프로그램 회사(공영채널)인 RFO의 경우, 1993년 3월 27일 시행령 n° 93-535(le décret n° 93-535)에 의거해 임무와 의무 요강서를 승인하였다. 이 요강서는 이후 네 번 수정되었다. 2006년 6월 1일의 시행령에 의해, RFO사의 요강서가 수정된 후에 이 방송사의 모든 방송서비스의 편성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사회적 통합, 환경, 장기적 발전 등의 분야에 관한 새로운 조치들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2.1. 서문

France 2와 France 3 그리고 France 5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 서문(*Le préambule*)의 첫 두 부분은,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세 채널의 요강서에서 모두 동일하다. 공공서비스의 임무에 대하여 각 서문들의 첫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 국립 텔레비전 프로그램 회사들은 특수한 프로그램의 공급을 통해 개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모든 시민을 위한 텔레비전을 만들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있어서 가장 폭넓은 공중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쏟는 관심은 상업적 성공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공중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 각 방송사들은 민주주의 토론, 인구의 다양한 계층 사이의 소통,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시민성을 장려한다.
- 각 방송사들은 지적, 예술적 창작과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전파와 발전에 도움을 준다. 동시에 방송사들은 방송과 미디어 교육에 기여한다.
- 각 방송사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 유대 그리고 시민주의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고민하면서, 정보, 문화, 지식, 오락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다원주의를 보장한다. 이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은 문화적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해야 한다.
- 방송사들은 혁신을 위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문체에 관심을 가지

29) 1996년 3월 25일의 n°96-239, 1998년 5월 6일의 n°98-348, 1999년 12월 31일의 n°99-1229, 2001년 2월 14일의 n°2001-142, 2002년 5월 2일의 n°2002-750, 2004년 7월 21일의 n°2004-743, 2005년 5월 27일의 n°2005-614, 2006년 6월 1일의 n°2006-645, 2007년 5월 10일의 n°2007-792 시행령에 의해 9가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며, 특히 프랑스 언어와 문화유산을 가치 있도록 노력하는, 독창적인 작품의 제작을 활성화하면서 텔레비전 창작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 국립 프로그램 회사들은 윤리와 질, 그리고 상상력(창조성)의 분야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회사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저속성(vulgarit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문들의 두 번째 부분은 France Télévisions에게 France 2, France 3, France 4 그리고 France 5의 조정과 시너지를 통한 (상호)증진의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의 발전적 임무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France 2, France 3, France 4 그리고 France 5의 프로그램 공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제작과 전송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풍성히 하고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방향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France 4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서문은 France Télévisions 그룹의 나머지 세 채널의 서문과는 매우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France 4의 서문은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France 4 채널이 무엇보다도 보완성을 보장해야 해야 하고(보완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고), 방송계 전체를 볼 때, 차별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서문에서는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넓은 공중의 기대에 응답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청·장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장년층에게 가장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멀티-전송과 다른 공영채널의 프로그램의 재방송 또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RFO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는 서문이 없다.

2.2. 각 채널에 해당하는 특수한 의무조항들

다음과 같은 의무조항들을 구분할 수 있다.

- 전반적이고 직업윤리적인 의무조항들(정직성, 독립성, 정보의 다원주의, 인간의 존엄성, 어린이 보호, 프랑스 언어, 시간과 편성의 준수, 서비스의 연속성, 자막.....).

이 의무조항들은 그다지 세밀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직업윤

리 조항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연속적인 수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민영방송채널의 협약서에 제시되고 있는 의무조항들을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규격(편집)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모든 의무조항들 가운데 한 조항만이 수치화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자막에 관한 것이다³⁰⁾.

- 정치, 노동조합, 의회에 관한 질문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의무조항들은, 비록 부록2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그 수와 양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조항이 각 채널들의 편성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불편거리(고민 혹은 강제력)를 담고 있다.

- 공식캠페인 프로그램의 방송
- 정치그룹(대부분, 정당을 의미)의 직접적 표현 프로그램의 방송
- 노동조합에 관한 직접적 표현 프로그램의 방송
- 해외영토의 지방과 행정구역 의회를 위해서 France 3과 RFO가 보장하고 있는 토론의 중계 방송

- 종교적 혹은 지역적 표현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비록 이 조항들은 편성표에서 강요된 자리(의무 방송)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간 시간량(편성시간)은 매우 적다. 다음의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 일요일 아침 중요한 의식에 바쳐지는 종교 프로그램의 방송
- France 3과 RFO에 의한 지방 언어로 된 프로그램의 방송

- 전문적인 정보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큰 국가적인 공익행사에서는 12번의 메시지(douze messages: 캠페인을 홍보하는 메시지의 양)를 매년 무료로 방송해야 한다는 조항이 실제적으로 수량화되어 있다. 나머지들(도로교통 안전 메시지, 소비자의 정보 프로그램)은 연간 시간량을 규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영채널들은 메시지 전달에 유리하고 적합한 시청 시간에 그것들을 방송하도록 권고된다.

30) France 2와 France 3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각각 연간 1000시간과 500시간의 자막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과 수단 계약서(COM)은, 2005년 법에 의해 삽입된, 지금부터 2010까지 100%의 프로그램에 자막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 교육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조항은 매우 일반적이고 질적인 의무조항들이다. 단 France 3은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영화(동화, 통합)를 돕기 위해 주마다 적어도 30분 분량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매우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편성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열거될 수 있는 14가지의 다른 의무조항들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일반적이고 질적인 방식으로만 작성되었다. 그것들은 시간량(편성시간)에 있어서 어떤 의무도 담고 있지 않다.

- 지방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조항들은 예외적으로 France 3과 RFO에 관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수나 지방 방송국의 자체 방송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의도(방향)들은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량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 문화적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11가지의 다른 의무조항들이 이 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이 조항들(음악, 춤, 연극 공연의 방송, 음악 프로그램의 정기 방송, 콘서트 방송) 중 세 가지는 최소한의 시간량 준수에 관한 것이지만 시간대에 대한 제약은 없다. 방송된 공연의 계산에 관한 수정안이 France 3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제26조를 수정한 2007년 5월 10일의 시행령 n°2007-792의 제4조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수정안은 해당 프로그램이 오후나 초 저녁에 방송될 때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그 작품이 방송 편성의 좋은 시간대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서로 다른 3개의 의무조항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공영방송채널들 간의 보완성의 원칙이 분명하게 규정된다. 그러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시간량은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TF1은 연간 1000시간의 방송의 의무를 지며, M6은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50%가 프랑스산 혹은 유럽산이어

야 한다. 그러나 France Télévisions의 목표와 수단 계약서 2007-2010은 그 그룹의 모든 채널을 통틀어 2100시간의 청소년 프로그램 방송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 과학 프로그램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과학과 기술의 진보, 경제학, 인문학에 할애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관한 것인데 수량화되어 있지는 않다.

- 스포츠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의무조항들은 수량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스포츠 분야의 가장 폭넓은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무조항이다.

- 게임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France 2와 France 3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 속에는 발견(탐험)과 지식 게임에 우선권을 두라는 한 가지 조항이 존재한다.

- 영화 클럽(ciné-club)의 영화에 속하는 특별한 의무조항들

이 조항들은 평화 편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노출 방송시간대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적합한 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만이 언급되어 있다. 방송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서에서 영화 클럽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분히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 공영방송채널과 민영방송채널에 적용되는 규제의 비교

(Comparaison des réglementations applicables aux chaînes publiques et privées)

공영방송채널에 적용되는 규제는 《1986년 9월 30일의 법》과 그 적용과 각 채널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시행령에서 기초한다. 범주화된 영역에 따라 그 규제는 민영방송채널에 관한 것보다 다소 엄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공영 방송 영역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이 글은 규제가 공영방송채널에 덜 제한적인 경우를 강조하면서, 그 차이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비교는 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의 권한에 속하는 무료 전국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영채널들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그리고 민영채널들 TF1, M6, Direct 8, W9, TMC, NT1, NRJ 12, Virgin 17, Gulli, i>télé, BFM TV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비교는 공공서비스의 특별한 의무조항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의무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채널의 편성의 특수성에 관한 탐색과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변화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³¹⁾.

1. 공영방송채널과 민영방송채널의 규제가 같은 경우

이는 다음에 관한 것이다:

- 시청각(방송) 작품과 영화 작품의 편성 쿼터
- 영화작품의 제작 쿼터
- 어린이 보호 규제
- 다원주의 특히 발언시간 통제에 관한 규제
- 프로그램 편성표 제출 조건
- 편성 변경의 조건

31) 008년 2월 5일의 AP. 상기하자면, 공공서비스 의무조항 중 공통 의무조항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선거 캠페인, 국회와 노동·직업 조직의 표현, 전문 정보이며 몇몇 채널의 의무조항은 종교·교육·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 언어로 된 프로그램이다.

2. 공영방송채널에게 규제가 더욱 제한적인 경우

시청각(방송) 제작과 광고 분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방송 제작

2001년 7월 9일의 n°2001-609(les décrets n° 2001-609)와 2001년 12월 28일의 n° 2001-1333(les décrets n° 2001-1333)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된, 시청각(방송) 제작에 기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Le régime général)는 각 채널들이 적어도 전 해 매출액의 16% 이상을 유럽이나 프랑스 방송작품의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France Télévisions 그룹의 채널들은 대다수 18%(전년도 매출액) 이상으로 제작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France 5는 현재 총 16% 투자에 적용받는 유일한 공영채널이다. France 4는 매출액의 18% 이상, France 2는 18.5%, France 3은 19%를 투자해야 한다.

광고

텔레비전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한 1992년 3월 27일의 시행령의 제15조는 공영방송채널인지 민영방송채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체계와, 영화나 방송 작품의 끊어짐(중간광고 삽입)에 관한 1986년 법의 제73조와 연결된다. 나아가 공영방송채널들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특수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광고 메시지의 편성

2005년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인용된 텍스트는 국립 프로그램 회사(공영방송채널)가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되는” 광고메시지를 제한하고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 France 2와 France 3의 경우:

스포츠 중계 조건 하에서 중간광고;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허가 후에 그리고 독립된 부분들로 구성된 방송작품이 아닌 프로그램이 20시 이전에 편성될 경우.

- France 4의 경우:

조건 하에 휴식을 포함하고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그리고 20시 전에 편

성된 방송 작품이 아닌 프로그램.

- France 5의 경우: 20시 이전에 편성된 시청각 작품이 아닌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작품과 영화작품의 끊어짐

공영방송채널이 방송하는 작품을 광고 메시지로 중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금지사항은 1986년 법 제73조에 따른 영화작품과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적용에 따라 시청각(방송) 작품에 해당한다.

허가된 최대 광고시간

허가된 최대 광고시간은 공영방송채널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은 2000년 8월 1일에 보완되었는데(제53조 VI) 광고에 대한 France 2와 France 3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허가된 (광고)시간 분량은, 평균 방송시간당 6분이고 한 시간에 12분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민영 텔레비전 서비스의 체계를 모방한 것이다. 2001년에 “60분 당” 광고 메시지 방송의 최대 시간은 10분으로 축소되었고 이듬해에는 다시 8분으로 줄었다. 반대로 6분(평균 방송시간당)은 변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서 광고 화면의 최대시간을 4분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광고 터널(tunnels publicitaires)”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3. 규제가 공영방송채널에게 덜 제한적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와 프로그램의 윤리, 그리고 France Télévisions의 채널에서 공영채널그룹 내의 다른 채널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에 관한 규제에 대한 것이다.

정보와 프로그램의 직업윤리

직업윤리 분야에 있어서 공영방송채널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민영방송채널의 협약서에 의해 규정된 의무조항들보다 더 엄격한 의무조항들을 강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칙과 다원주의에 있어서,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편집은 문장 표현과 목차 구분에서 협약서의 편집과는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한편으로는 생

각과 의견 표현의 다양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문화와 출신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정보의 정직성에 있어서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 민영방송채널들의 의무조항들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대로 방송에서 언급될 수 있는 법 소송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혹은 오락 프로그램에 관한 직업윤리 규정은 공영방송채널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덜 엄격한 직업윤리의 범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채널에서 민영방송채널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France Télévisions의 다른 채널 프로그램의 홍보

국립 프로그램 회사(공영방송채널)들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는 France Télévisions의 각 채널에서 그 그룹의 다른 채널 프로그램의 홍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France 2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의 제5조는 “이 채널이 France 3, France 4, France 5와 France Ô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Arte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 토막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방송채널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방송위원회에 의해 1992년 3월 27일의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금지된 숨은 광고와 동일시되어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은 M6에 의해 정기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 채널은 모 그룹의 다른 채널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를 희망했고, 따라서 같은 그룹의 텔레비전 서비스(채널)의 교차 홍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용한 법적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2월 유럽 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는, 2007년 가을에 본 위원회에 문의한 미디어 개발국(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에게 공영방송채널의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나타난 교차 홍보에 관한 조치는 유럽연합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유럽위원회는 교차 홍보는 시청자의 정보 제공에 한정될 때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방송위원회의 “광고와 협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미디어 개발국(국무총리 산하)과 이 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기타

지방과 지역 광고 분야에서 France 3에 허용된 특권

1992년 3월 27일 시행령 제13조는 “광고 메시지는 모든 서비스 권역에 동시에 방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접성을 지닌 미디어(지역 미디어)의 광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의무조항에서 지역적 성격의 프로그램 편성을 포함하는 서비스 편성 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권이 France 3에게 부여되었다.

이처럼 공영방송채널이 편성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지방과 지역 프로그램에 할애할 경우, 정부는 이 편성에 해당하는 광고 매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홈쇼핑 프로그램의 편성

1992년 3월 27일 시행령 제25조는 방송위원회가 민영방송사와 맺은 협약서에서 홈쇼핑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방송에서 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권한은 공영방송의 경우 정부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무와 의무 요강서는 홈쇼핑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고 있다.

때때로 덜 수량화된 방송 의무사항들

TF1과 M6이 몇몇 큰 프로그램 장르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양적 의무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France Télévisions의 채널들은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항상 동일한 제약 사항들을 지니고 있는지는 않다. 이와 같이, TF1은 매년 청소년 프로그램을 적어도 1000시간 이상, 정보를 800시간 이상 방송해야 한다. M6의 경우를 보면, 이 채널은 음악 프로그램에 연간 편성 시간의 26%를 할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채널의 경우, 임무와 의무 요강서에 큰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양적 의무방송 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ance Télévisions의 목표와 수단 계약서의 몇몇 요구사항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나아가 공영방송채널은 민영방송채

널보다 더 다양하고 균형적인 분배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장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France Televisions 의 목표와 수단 계약서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de France Télévisions)

France Télévisions의 '목적과 수단 계약서(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는 이 공영회사와 유일한 주주인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결과를 명백히 하고, 이 그룹의 발전 축을 정의하며,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 회사와 단독 주주(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수단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과 수단 계약서는 1986년 9월 30일 법(프랑스 방송법) 53조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계약서는 2000년 8월 1일 n° 2000-719 법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France Télévisions에 의해 서명된 첫 번째 계약서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계약서는 이 공영방송 그룹의 활동을 여섯 가지 임무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은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음의 표들은 연차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프로그램 공급과 실적에 관한 임무와 목적을 요약하고 있다.

<표>임무 1 :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것

임무 1 : 감독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1.1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					
1.1.1: 20시30분과 22시30분 사이에 시작하는 적어도 12장르의 프로그램(111)	12 장르	12 장르	12 장르	11 장르	12 장르
1.1.1.a: France 2	nd ³²⁾	11 장르	10 장르	11 장르	10 장르
1.1.1.b: France 3	nd	12 장르	11 장르	11장르	11 장르
1.1.2: 16시와 24시 사이에 다양화된 편성(112)	19 장르	19 장르	19 장르	20 장르	20 장르
1.1.2.a: France 2	16 장르	16 장르	16 장르	16 장르	16 장르
1.1.2.b: France 3	18 장르	18 장르	18 장르	19 장르	19 장르
1.2 발견과 해독 프로그램을 우선시 할 것(12)					
1.2.1: France Télévisions 지표	54%	58%	59%	58,1%	56,0%
1.2.2.a: France 2 지표	43%	46,5%	47%	49,7%	47,4%

1.2.2.b: France 3 지표	49%	52%	52%	52,5%	51,6%
1.2.2.c: France 5 지표	78%	83,5%	86%	78,9%	75,1%
1.3 정보 시간량을 증가시킬 것	7569h	8051h	7917h	8445h	9157h
1.3.a: France 2	1483h	1495h	1496h	1575h	1526h
1.3.b: France 3	6086h	6556h	6421h	6870h	7631h
1.4 공연물을 지원할 것(적어도 35)	nd	37	45	40	55
1.4.a: France 2	nd	21	26	19	31
1.4.b: France 3	nd	16	19	21	24
1.5 지방 영역과 France 3의 접근성 공급을 강화할 것(15)	10 763h	11 415h	10 841h	11 920h	13 597h
1.6 다양한 스포츠 공급을 제안할 것(16)	94 disc. ³³⁾ 1028h	97 disc. 918h	100 disc. 1028h	93 disc. 893h	127 disc. 1160h
1.7 청소년 프로그램의 폭넓은 종류를 공급할 것					
1.7.a: France 2에서 (17a)	6h	34h	42h28'	54h10'	38h30'
1.7.b: France 3에서 (17b)	13,8M€	14,3M€	14,83M€	14,81M€	15M€
1.7.c: France 5에서 (17c)	2,4M€	2,2M€	2,62M€	2,59M€	3,35M€
1.8 방송과 영화의 창작 산업을 지원할 것					
1.8.1: 영화를 진흥할 것(공동제작의 재정적 참여) (181)	49 films	50films (41,95M€)	52films (nc)	59films (50M€)	54films (51,14M€)
첫 공동제작 작품들	nc ³⁴⁾	12,6M€	29%	19films	12films
1.8.1a: France 2 Cinéma가 함께 작업한 다른 제작사의 수	nc	nc	nc	30	31
1.8.1a: France 3 Cinéma가 함께 작업한 다른 제작사의 수	nc	nc	nc	25	24
1.8.2: 방송창작을 진흥할 것(182)					
1.8.2.a: France 2	17,27% /17%	17,63% /17,5%	18,29% /18%	18,75% /18,5%	18,99% /18,5%
1.8.2.b: France 3	18,04% /17,5%	18,21%/ 18%	18,5% /18,5%	19,12% /19%	19,58% /19%
1.8.2.c: France 5	15,67% /15%	18,26% /15%	25,65% /16%	23,46% /16%	25% /16%
1.8.2.d: France Télévisions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프랑스산 작품	1265h	1241h	1258h	1312h	1436h
1.8.2.d1: France 2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프랑스산 작품	331h	363h	380h	506h	516h
1.8.2.d2: France 3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프랑스산 작품	348h	342h	363h	331h	416h
1.8.2.d3: France 5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프랑스산 작품	586h	528h	515h	475h	504h

품					
18.2.e: 프랑스산 작품의 전 방송(비율)	55%	61%	52%	55,1%	60%
18.2.e1: France 2에 의한	68%	69,2%	63%	59,4%	72%
18.2.e2: France 3에 의한	46%	58,4%	42%	47,8%	57,8%
18.2.e3: France 5에 의한	57%	55,4%	55,6%	60,4%	58%
1.8.2.f1: France 2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픽션	179h	200h	295h	301h	318h
1.8.2.f2: France 3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픽션	63h	72h20'	78h	89h07'	124h
1.8.2.g1: France 2에 의해 공동 투자된 다큐멘터리	113h	107h	122h	138h17'	158h
1.8.2.g1: France 3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픽션	13,4M€	13,5M€	13,83M€	13,78M€	17,26M€
1.8.2.g1: France 5에 의해 공동 투자된 픽션	23,6M€	27M€	26,85M€	26,9M€	27,28M€
1.9 활발한 혁신 정책을 펼 것	감독 지표 없는 목표				

(111) 목록이 작성된 12 장르는 영화, TV영화, 시리즈-드라마, 게임, 유머, 버라이어티, 서커스, 정보, 다큐멘터리, 문화와 지식 매거진, 스포츠 중계, 스포츠 매거진이다.

(112) 목록이 작성된 장르는 영화, TV영화, 시리즈-드라마, 연극, 오페라-발레-클래식 콘서트, 게임, 유머, 토크쇼, 버라이어티, 서커스, 현대 콘서트, 국가 정보 뉴스, 지역 정보 뉴스, 정보 매거진과 정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문화와 지식 매거진, 스포츠 중계, 스포츠 매거진, 지역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12) 지표는 광고와 자사 홍보를 제외하고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 단막극, 정보, 클래식 음악, 문화지식,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율을 측정한다.

(13) 연간 국가, 지방 혹은 지역 정보 방송의 시간량(뉴스, 정보 매거진, 정치 프로그램).

(15) 정보, 근접성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local) 프로그램의 지방(régional³⁵) 방송의 연간 시간량.

(16) France 2와 France 3에서 방송된 스포츠 경기 종류의 수와 방송 시간량(참고사항: 2000년과 2004년은 하계 올림픽 경기가 방송되었던 해이다).

(17a) France 2에 의해 공동 투자된 청소년 픽션의 시간량.

(17b) France 3에 의해 공동 투자된 애니메이션의 재정 규모.

(17c) France 5에 의해 공동 투자된 애니메이션의 재정 규모.

(181) 1년간 공동 제작된 영화의 수. 몇몇 영화는 France 2와 France 3에 의해 공동

32) nd: non déclaré(미공개)

33) disc: discipline(스포츠 경기 종류)

34) nc: non conforme(부적합)

35) 지역(local)과 지방(régional)을 구분하였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강원 지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방을 좀 더 큰 단위로 보았다.

제작되었다.

(182) 유럽산 작품과 프랑스산 작품의 주문과 구매에 대한 규제 목적에 따라 시청각 (방송) 작품의 창작에서 연간 투자 비율(채널들의 연 결산에서 방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비율).

<표>임무 II: 공공 서비스의 약속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의 중심에 시청자들 둘 것

임무 II: 감독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1 공중과 대화와 관계를 발전시킬 것					
2.1.1 중재 정책의 추진할 것	2002년 6월 6일에 설치된 중재 사무소				
2.1.2 채널의 헌장(Charter)	2002년 5월에 채택된 헌장(2002년 6월에 발효)				
2.1.3 공중의 만족도를 평가할 것	참조. 아래에 연간 조사 결과				
2.2 차별과 불평등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					
2.2.a: 친밀도 지표	참조. 아래의 공중의 친밀도 지표에 대한 표들				
2.2.b: 일일 누적 시청률(22b)	56,2%	55,8%	55,6%	55,1%	54,6%
주당 누적 시청률	87,1%	86,8%	86,9%	85,8%	86,3%
2.2.c: 연간 시청 점유율(22c)	40,7%	40,1%	39,6%	39,5%	38,6%
2.2.c1: France 2의 시청점유율	22,1%	21,1%	20,8%	20,5%	20,5%
2.2.c2: France 3의 시청점유율	16,8%	17,1%	16,4%	16,1%	15,2%
2.2.c3: France 5의 시청점유율(22c3)	4,1%	4,1%	5,1%	6,4%	6,7%

(22b): 하루 혹은 한 주간 연속적이지 않게 최소 15분을 France Télévisions 그룹의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프로그램)를 시청한 4세 이상의 시청자 비율.

(22c): France Télévisions의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의 연간 누적 시청 점유율.

(22c3): France 5의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대에서 이 채널의 시청 점유율³⁶⁾.

<표>2.1.3 France Télévisions의 시청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간 질적 측정표
(긍정적 응답의 비율, %)

그것은 텔레비전 채널...		최초 base	2001년 base	2002년 1월	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당신이 공영방송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부합하는...	france 2	74	75	75	75	75	76
	france 3	84	85	86	85	87	86
	france 5	65	71	72	73	75	73

36) 역자 주: France 5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에서 Arte와 주파수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만 방송하였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함께 24시간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당신에게 가까운...	france 2	54	55	57	56	59	57
	france 3	76	76	76	79	78	78
	france 5	50	55	56	56	57	57
사람과 삶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france 2	78	78	77	76	78	79
	france 3	92	92	89	90	90	91
	france 5	76	84	82	81	82	81
당신이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는...	france 2	69	69	71	70	71	72
	france 3	84	85	85	83	84	86
	france 5	77	84	85	81	82	82
우리 시대의 큰 문제점을 고민하는...	france 2	79	79	81	80	80	85
	france 3	80	81	77	79	79	82
	france 5	73	81	78	77	79	81
당신에게 교양을 주는...	france 2	62	62	65	59	64	62
	france 3	76	77	76	77	79	78
	france 5	76	83	86	80	81	81
시청자를 존중하는...	france 2	81	82	82	84	87	87
	france 3	92	93	92	92	94	95
	france 5	81	89	88	88	91	90
당신이 신뢰하는...	france 2	74	74	74	78	77	81
	france 3	85	86	88	88	88	89
	france 5	71	77	74	80	82	79
당신이 정말 시청하는 기쁨을 가지는...	france 2	70	70	88	71	74	72
	france 3	79	80	79	81	82	81
	france 5	63	69	71	67	68	68

비율은 “완전 동의”와 “다소 동의”답변들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 답변들은 대답한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다(2001년 신 base).; 초기 base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총계에서 대답을 계산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모른다”, 혹은 채널을 보지 않거나 수신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다.

조사는 IFOP이 전화로 15세 이상 1000명의 전국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표>2.2 France Télévisions의 시청자 친밀도 지표

	남성 15세 이상	여성 15세 이상	4-14 세	15-34 세	35-39 세	60세 이상	+1000 00의 도시	-1000 00의 도시	직장인	CSP+	CSP-
2000	102	105	68	75	95	130	99	101	86	112	94
2001	100	106	66	73	97	131	99	101	85	111	94
2002	99	107	67	72	95	133	98	101	85	111	94
2003	100	107	67	72	94	133	99	101	84	109	95
2004	102	104	68	71	95	132	99	101	84	110	95

N.B. 친밀도 지표는 대상(시청자) 시청율의 한 프로그램, 한 서비스 혹은 한 서비스 그룹의 총 시청률에 연결시킨다. 100 이하의 평가는 대상자가 총 텔레비전 채널의 시청률 구조에 비해 France Télévisions 시청률에서 낮은 대표성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SP+: INSEE(프랑스 통계기관)의 분류에서 상위 사회-직업 카테고리들의 그룹(수공업자, 상인, 기업가, 고위직, 고등지식 직업, 중간 직업)

CSP-: INSEE의 분류에서 하위 사회-직업 카테고리들의 그룹

<표> 2.2 France 2의 시청자 친밀도 지표

	남성 15세 이상	여성 15세 이상	4-14 세	15-34 세	35-39 세	60세 이상	+1000 00의 도시	-1000 00의 도시	직장인	CSP+	CSP-
2000	100	109	54	78	98	129	101	99	87	112	94
2001	99	109	54	78	100	127	100	100	87	116	92
2002	99	111	47	72	98	135	100	100	86	115	92
2003	100	110	44	73	98	135	99	101	85	113	93
2004	102	108	45	73	99	132	100	100	86	114	93

<표> 2.2 France 3의 시청자 친밀도 지표

	남성 15세 이상	여성 15세 이상	4-14 세	15-34 세	35-39 세	60세 이상	+1000 00의 도시	-1000 00의 도시	직장인	CSP+	CSP-
2000	103.5	99	88	68	91	133	94	104	83	108	96
2001	101	103	82	65	92	136	95	104	82	105	97
2002	99	103	88	69	92	133	94	104	84	106	97
2003	100	104	81	66	92	135	95	103	83	106	97
2004	103	101	78	65	92	137	93	105	82	107	97

<표> 2.2 France 5의 시청자 친밀도 지표

	남성 15세 이상	여성 15세 이상	4-14 세	15-34 세	35-39 세	60세 이상	+1000 00의 도시	-1000 00의 도시	직장인	CSP+	CSP-
2000	110	99	62	85	97	123	120	84	86	114	93
2001	110	100	58	89	96	124	115	89	89	110	95
2002	99	100	105	92	93	112	112	92	88	105	98
2003	92	98	145	92	84	113	115	89	86	103	98
2004	91	96	164	87	83	111	113	91	87	100	100

<표>임무III: 지상파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공적 공급을 재구성할 것

임무III: 감독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3.1 전문 정보채널을 창설할 것	2002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새로운 세 채널의 출범이 동결되었다. 2003년 정부는 하나의 새로운 채널의 선 구매를 위해 그 계획을 취하하였다. 2004년 1월 29일 정부는 그 채널로 무료 채널인 "France 4"로 변형된 축제(Festival) 채널을 선정하였다. France 5는 2005년 3월 31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출범부터 24시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었다.				
3.2 지방 채널을 창설할 것					
3.3 25-40세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탐방 채널을 ARTE와 함께 창설할 것					
3.4 지식 채널로써 편성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지상파 디지털 네트워크에 France 5를 24시간 방송할 것					

<표> 임무Ⅳ: 제휴와 발전 전략을 펼 것

임무Ⅳ: 감독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4.1 유료 전문채널의 재확대 정책을 펼 것	감독 지표 없는 목표				
4.2 수익률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France Télévisions Distribution의 발전 능력을 강화할 것(2005년 FTD의 매출액을 6000만 유로로 가져갈 목표)	32,4M€	36,8M€	39,6M€	48,5M€	44,3M€
4.3 인수와 권리 협상 회사를 창설할 것	이 계획은 2002년 FTD의 경영진에 의해 제안된 전략적 발전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				
4.4 양방향 콘텐츠와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그룹의 인터넷 사이트 월별 평균 방문수)	110만	170만	190만	300만	480만
4.5 그룹 프로그램의 국제적 노출을 향상시켜 프랑스 문화와 언어의 국제적 번영에 참여할 것	감독 지표 없는 목표				

임무Ⅴ("역동적이고 질 높은 인적 자원 정책을 추진할 것")는 프로그램 공급과 연관되지 아니한다.

<표> 임무Ⅵ: 프로그램과 회사의 전략적 재조직을 위한 효율적 경영을 실시할 것

임무Ⅵ:	2001	2002	2003	2004
6.1 그룹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것				
6.1.1: 연간 프로그램 투자(611)				
6.1.1.a: 프리미엄 채널의 프로그램	+35,5M€ /28,4M€	+69,6M€ /45M€	+51,7M€ /33,4M€	103,2M€ /1,9M€
6.1.1.b: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 채널의 프로그램	+0/0M€	+0/33,8M€ €	nc	nc
6.1.2: 투자 누적(612)	101,9M€	88,4M€	102,1M€	113,0M€ (109,1M€)
6.2 균형있는 투자 재정을 보장할 것(62)	CAF de 74,1 M€	CAF de 106,0M€	CAF de 117,9M€	CAF de 136,2M€

6.3 수신료와 광고재원의 연간 증가율을 예상할 것				
6.3.1: 수신료(수입/목표)	1431,8M€ /1426,3M€	1470,5M€ /1469M€	1499,5M€ /1515,5M€	1632M€ /1562,5M€
6.3.2: 광고와 협찬(세후/목표)	566,9M€ /558,2M€	611,9M€ /594,4M€	648,9M€ /622,4M€	689,9M€ /656,8M€
6.3.3:프리미엄 채널의 편성 비용 (확인된 비용/목표)	+7%	+3,6% /3,4%	+3,5% /3,4%	+3,1% /3,4%
6.3.3.a: France 2	+5,47%	+4,3%	nc	nc
6.3.3.b: France 3	+7,17%	+2,0%	nc	nc
6.3.3.c: France 5	+3,17%	+21,6%	nc	nc
6.4 그룹 경영 지표를 향상할 것(실현/목표)				
6.4.1: 경제와 시너지 감독(실현/목표, Synergia계획에 의해 수정됨)(641)	28,9M€ /16M€	24M€ /19,4에서 19,5M€로	48,2M€ /지상파 디지털TV 를 제외하고 28,6M€에 서 35,7M€로	51,5M€ /지상파 디지털TV 를 제외하고 44,2M€에 서50,1M€ 로
6.4.2: 운영비용에서 프로그램의 부분 (결과/목표)	70,5% /69%	70,4% /70%	70,9% /71%	70,7% /70,6%
6.4.3: 편성비용에서 인건비 부분(결과 /목표)	29,1% /28%	28,4% /28%	28,4% /28%	28,0% /28%
6.4.4: 운영비용에서 인건비 부분(결과 /목표)	24,1% /27%	24,6% /27%	24,4% /27%	24,3% /27%
6.4.5: 그룹 운영의 일반적 비용(결과/ 목표)	6,7% /6,6%	6,5% /6,6%	6,5% /6,6%	6,3% /6,6%
6.4.6: 그룹의 예상 실적				
6.4.6.a: 세후 실적(그룹 부분)	36,1M€ (-2,8M€)	53,2M€* (+17,1M€)	14,2M€ (-39M€)	25,4M€ (32,7M€) (+11,2M€)

6.4.6.b: 판매 실적(그룹의 실적 계산)	21,3M€ (-18,4M€)	35,1M€ (+13,8M€)	40,3M€ (+5,2M€)	45,8M€ (+5,5M€)
6.4.6.b: 자본금	277,2M€	331M€	345,8M€	371,2M€
6.5 그룹의 경영 도구를 혁신할 것	감독 지표 없는 목표			
6.6 정부와 France Télévisions 사이의 관계를 현대화할 것	감독 지표 없는 목표			

(611): 외부 프로그램 구매와 내부 프로그램 제작의 연간 변화(정해진 목표 대비 실현).

(612): 그룹의 물질적 투자. 2001-2005년 목표: 6408M€(프리미엄 채널 투자를 위해 2596M€,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을 위해 2555M€, 사업다각화를 위해 762M€, 주로 프로그램 stock의 추이에 의해 구성된 고정자산의 잉여의 필요를 위해 495M€).

(62): 2001-2005년에서 그룹의 예상 재원조달 계획(누적): NTH외에 자산양도를 포함하여 4985M€의 자체재원조달 능력(capacité d'autofinancement, 이하 CAF), 신용임대를 제외한 8M€의 순수 중·장기 부채, 1525M€의 공공기관 대상 자본증여 수입, 2002년에 자체재원조달 능력(CAF)은 그룹의 순수 투자의 95%를 충당했다.

(641): Synergia 계획은 2002년 4월 11일 France Télévisions의 경영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계획은 2002-2005년에 누적 170M€의 저축 계획으로 목적을 수정하였다.

* 그중 125M€는 TPS에서 France Télévisions의 지분 양도에서 기인함.

방송통신위원회 자유 2008-05

디지털 미디어 전환기, 해외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발 행 일 2008년 12월(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or.kr

인 쇄 처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
